

월간

# 재정포럼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

## ● 현안분석

기업분할에 관한 주요국의 과세제도

국민의료와 조세정책

비크리교수의 세제개혁안 : 세제의 단순화, 누진화 그리고 그 공정한 설계

---

## ● 정책토론포트

전자상거래와 조세제도

---

## ● 정책연구

우리나라 가산세 관련 제도의 합리화

---

## ● 정책흐름

1997 세법 개정(안) 외

---

## ● 재정통계

상속세 관련 통계

---

일천구백구십칠년 구월호

## C O N T E N T S

**권두 칼럼**

- 2 근거과세 정착을 위한 정책제언 /박정수

**연안분석**

- 6 기업분할에 관한 주요국의 과세제도 /김진수  
 26 국민의료와 조세정책 /손원익  
 49 비크리교수의 세제개혁안 :  
 세제의 단순화, 누진화 그리고 그 공정한 설계 /노영훈

**정책토론회 리포트**

- 69 전자상거래와 조세제도

**정책연구**

- 83 우리나라 가산세 관련 제도의 합리화  
 - 가산세와 조세형벌의 경제적 분석 - /손광락

**정책호름**

- 89 1997 세법 개정(안)  
 103 1997 관세법 개정(안)

**재정통계**

- 112 상속세 관련 통계

# 근거과세 정착을 위한 정책제언

박 정 수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전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올해 7월로 부가가치세가 도입된 지 꼭 20년이 되었다. 부가가치세는 기존의 영업세를 대신하여 도입되었으며 전단계에 납부한 세액을 공제해 주는 방식으로 부과되는 일반소비세로 최근 30년간 가장 빠른 속도로 각국에 전파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간접세 체계의 간소화, 근거과세의 구현, 수출투자의 촉진, 간접세의 중립성 유지 그리고 탈세 방지 등의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비교적 일찍 도입한 편에 속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제에는 광범위한 면세범위와 영세율 적용의 일관성 결여, 영세사업자에 대한 예외조치인 과세특례 제도의 존속 및 확대,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제도, 세무조사 및 가산세 제도의 미비 등의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영수증을 주고받는 것이 생활화되거나 기장이 당연시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의 납세환경은 아직 성숙되지 못한 반면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은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으므로 동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행정에 있어서 근거과세 정착에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장부 및 영수증에 의한 근거과세의 확립을 위해서는 추계과세를 받는 것이 결코 기장에 의한 신고납부보다 유리하지 않도록 표준율을 대폭 인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표준율을 인상하는 정책은 많은 저항을 수반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기장자가 기장자로 전환하는 데 따른 인센티브를 발견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개혁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경미한 세법상 의무위반 사항까지 부과되거나 징수절차가 매우 복잡한 조세형벌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처벌이 너무 가혹한 반면 가산세 규정은 너무 미약하여 실효성이 떨어진다. 즉 중간단계의 처벌이 존재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 미발행 혹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등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도 일본이나 프랑스같이 증가산세도를 도입하여 10%의 가산세와 별도로 증가산세를 병과할 필요가 있다. 장부미비

세정당국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를 유도하려면 납세자가 두려워하는 수준의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해야 하며 이의 활용에 있어 기준이 되는 잣대가 사안에 따라 또는 사업자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는 믿음을 주어야 한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결국 세정의 투명성 제고와 과학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에 대해 우리나라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장부 및 기타자료의 무단 폐기 및 불성실 기장에 대해서는 벌금보다 정액가산세로 제재하되 수준은 징세행정비용 정도로 하고, 장부미비와 무신고로 겸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별도로 동정액가산세를 병과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결국 일본의 「청색신고제도」는 근거과세의 정착에 크게 기여하였음에 반해 우리는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실패한 경험을 교훈삼아 유인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신(新)녹색신고제도」를 전향적으로 발전시키고 성실한 납세자에 대한 배려 및 유인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구체적인 유인으로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생략 및 예정고지료의 대체, 특별상각 및 할증상각의 혜택, 각종 충당금·준비금의 폭 넓은 인정, 녹색신고에 소요되는 필요경비의 산입, 녹색신고 소득공제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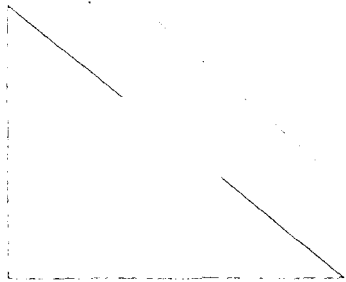
이와 아울러 영수증의 표준화(간이세금계산서의 폐지) 및 세액의 별도 병기를 의무화할 것을 제안한다. 신용카드 이용의 확대는 지난 20여년간 도전했다가 실패한 「영수증 주고받기」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전자화의 급속한 발달로 전자상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등 징세환경은 매우 빠르게 바뀌어 가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직불카드의 사용에 의해 기장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이것이 바로 금융결제망을 통해 국제통합 전산체제에 연계되는 전자기장시대가 그리 머지않아 도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신용카드 사용의 확대가 근거과세 정착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므로 신용카드 보급 확대와 위장가맹점

의 색출에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행정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신용카드 사용의 확대를 위해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회기 보급의 유인을 제공하고, 소비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 경감 차원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한 소비금액의 1%에 상당하는 소득세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적이다.

장기적인 청사진하에 부가가치세제는 과세특례자 및 간이과세자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세금계산서 수수질서의 정상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각종 거래에서 성행하고 있는 무자료거래를 단절 시키기 위해 유통과정을 추적조사하는 상설조사반을 지방청 단위에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통구조의 개선이 무자료거래 환경을 쇠퇴시킬 수 있으므로 중소기업의 대규모화, 물류관리의 효율화 및 전산화 촉진을 위한 EDI 구축 등에도 유인제도를 도입하는 유연성을 기대해 본다.

우리나라의 세제와 세정을 망라하여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세부담의 불공평이며, 이는 바로 부가가치세제의 합리화, 나아가서 근거과세의 정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사업소득자와 근로소득자간의 불공평으로 대변된다. 세정 개혁에 있어서 왕도는 없다. 세정당국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를 유도하려면 납세자가 두려워하는 수준의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해야 하며 이의 활용에 있어 기준이 되는 잣대가 사안에 따라 또는 사업자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는 믿음을 주어야 한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결국 세정의 투명성 제고와 과학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현안분석



## 1. 기업분할에 관한 주요국의 과세제도

김진수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2. 국민의료와 조세정책

손원익 /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3. 비크리교수의 세제개혁안 :

세제의 단순화, 누진화 그리고 그 공정한 설계

노영훈 /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기업분할에 관한 주요국의 과세제도



김진수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1. 서론

기업은 국내 및 세계 경제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여 능동적으로 변화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 기업의 변화는 영업적 측면뿐만 아니라 기업조직 측면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기업의 조직을 개편하는 방안으로는 기업 내부조직의 변경, 기업인수·합병(M&A), 기업분할 등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기업은 내부조직의 변경을 통해서도 성장을 도모할 수 있으나, 급변하는 기업경영 여건의 변화에 적응하면서도 발전을 이루려면 M&A 또는 기업분할 전략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M&A는 내적 성장을 통해 상당한 발전을 이룬 기업이 새로운 사업을 시도할 때 독자적인 힘만으로는 자본적·기술적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 이를 단기간에 극복하여 외적 성장을 달성하려는 전략이다. 이와 같은 M&A는 자유경쟁에 의한 시장경제원리가 일찍부터 확고히 자리잡은 미국의 경우 이미 1800년대 말부터 수차례에 걸쳐 봄을 이루었다. 이는 기업의 불필요한 경쟁을 지양하고 기존의 기업조직과 활동을 이어받아 규모의 경제를 통해 원가절감, 생산과 관리의 효율화, 이윤 극대화 등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 수단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

\* 본고는 Eli Fink, *Mergers and Acquisitions in United States of America*, IBFD, 1995; Yves Long, *Mergers and Acquisitions in France*, IBFD, 1995; Felix Wurm and Heinz-Klaus Kroppen, *Mergers and Acquisitions in Germany*, IBFD, 1996을 필자가 요약·정리·보완한 것이다.

소비자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생활여건이 질적으로 향상되면서 고성능·고품질 제품을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어떤 사업의 경우 더 이상 규모의 경제를 추구해서는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우므로 특정 사업부문을 분리·독립함으로써 효율적 경영 및 능률개선을 도모하게 되었다.

한편 소비자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생활여건이 질적으로 향상되면서 고성능·고품질 제품을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어떤 사업의 경우 더 이상 규모의 경제를 추구해서는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우므로 특정 사업부문을 분리·독립함으로써 효율적 경영 및 능률개선을 도모하게 되었다. 최근 주요 외국은 새로운 추세로 나타나고 있는 기업분할이 활성화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M&A조차 활성화되지 않고 있으며 관련제도나 세법도 잘 정비된 편은 아니다. 더구나 기업분할의 필요성도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세법 및 상법에 아무런 관련 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국제경쟁 환경하에서 우리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M&A뿐만 아니라 기업분할도 활성화되어야 하므로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제도와 세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기업분할에 관한 주요국의 세법을 검토하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해 보기로 한다.

## II. 기업분할의 의의

### 1. 기업분할의 필요성

M&A는 기업 규모의 확대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기업의 조직을 통일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경영의 효율화를 이루어 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M&A를 통한 기업의 대형화는 사회적인 측면과 기업 자체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에 직면하게 되었다.

사회적인 측면에서 가장 빈번하게 지적되는 것은 M&A가 경우에 따라 경제력 집중을 초래하며 독과점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독과점은 자원배분의 비효율뿐 아니라 분배의 왜곡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 원인이 되는 M&A를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기업 자체적인 측면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경영여건의 변화에 따라 규모의 비경제를 경험하는 기업도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소비자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생활여건이 질적으로 향상됨에 따라 고성능·고품질의 제품을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사업 내용에 따라 규모의 경제를 추구해서는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즉, 다각화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상호무관한 새로운 사업부문을 신설하여 시너지효과를 얻고자 하는 경우 오히려 힘의 분산으로 인해 경쟁에 뒤지게 되지만, 각 사업부문별로 분리하는 경우 경영의 독자성이 발휘되어 이전보다 더 많은 가치창출이 가능한 기업도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직면하는 기업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 사업부문을 분리·독립함으로써 전문화·효율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기업분할은 분할당사회사(분할회사와 신설회사) 및 분할당사회사의 주주에게 각각 다음과 같은 효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분할회사(또는 모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비주력 사업부문의 분할을 통한 주력 사업부문의 강화가 용이해지며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사업부문을 분리시킴으로써 경영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게 된다. 한편 신설회사(또는 자회사)의 경우에는 경영의 자율성 확보를 통한 경쟁력 향상이 가능해지며 기업의 역량을 특정 사업부문에 집중시킴으로써 전문화 및 효율화를 추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업분할은 분할당사회사의 자금조달이 용이해지도록 하는 효과도 갖고 있다. 이처럼 분할당사회사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업분할은 이들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도 이점을 가져다 줄 수 있다. 만일 기업분할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면 이에 따라 분할당사회사의 주가가 상승할 것이므로 주주는 주식의 매매를 통해 이익획득이 가능하다.

## 2. 기업분할의 형태

기업분할은 분할회사가 분할 후 소멸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완전분할과 불완전분할로 나누어진다. 완전분할은 분할회사가 분할 후에 소멸하는 경우를 말하며, 불완전분할은 분할 후에도 존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완전분할은 다시 분할회사의 자산을 인수한 기업이 새로 설립된 회사인지 아니면 기존의 회사인지에 따라 신설분할과 분할합병의 두 가지 형태로 분류된다<sup>1)</sup>.

### 가. 완전분할

#### 1) 신설분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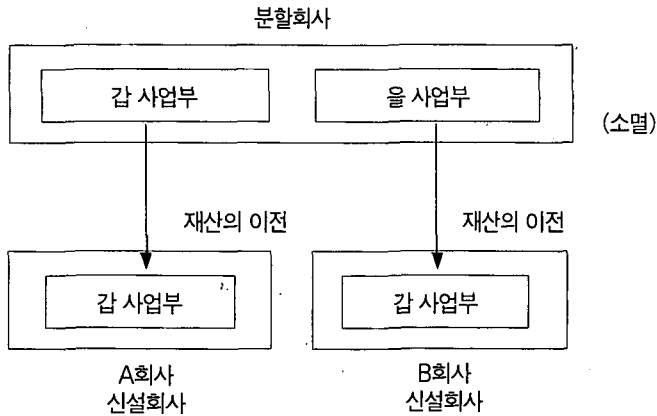
신설분할은 분할회사가 두 개 이상의 회사를 신설하여 그 재산을 이전하고 청산절차 없이 소

1) 이와 같은 분류는 프랑스 상사회사법의 규정을 따른 것이다.

완전분할은 분할회사가 분할 후에 소멸하는 경우를 말하며, 분할회사의 자산을 인수한 기업이 새로 설립된 회사인지 아니면 기존의 회사인지에 따라 신설분할과 분할합병의 두 가지 형태로 분류된다.

멸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분할은 완전한 형태의 기업분할이며 거대기업이 영업부문별로 해체되어 독자적으로 존속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나 실제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지는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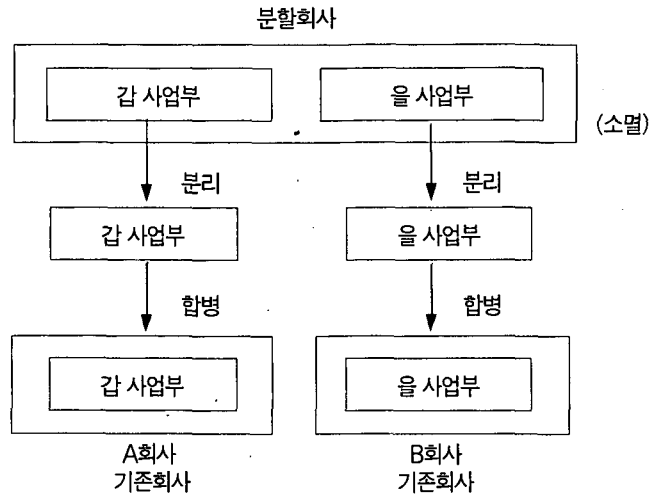
〈그림 1〉 신설분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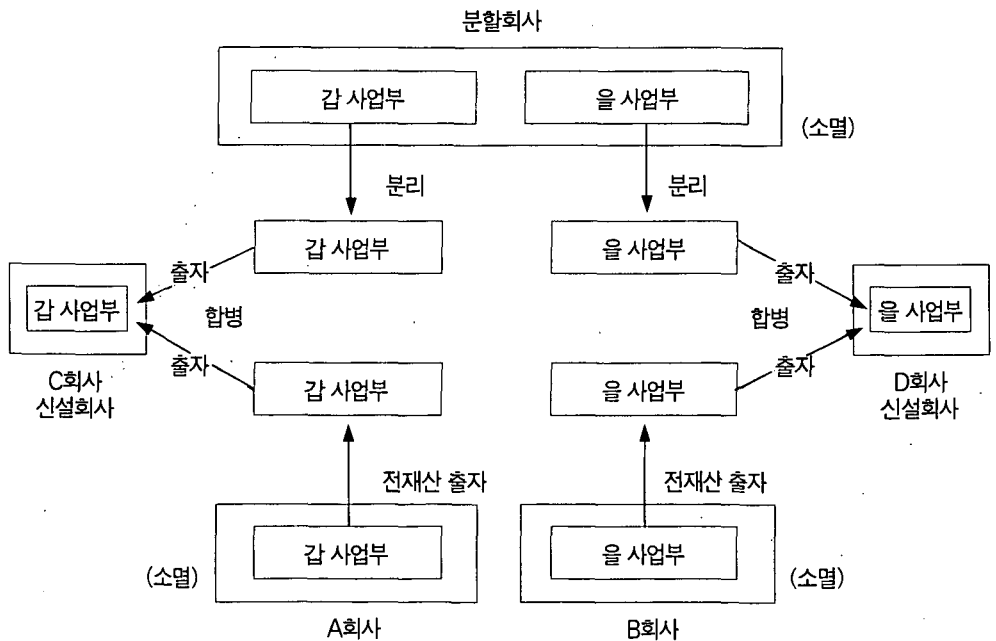
## 2) 분할합병

분할합병은 분할기업이 기존의 두 개 이상의 회사에 그 재산을 이전하고 청산절차 없이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 분할합병은 다시 세부적인 내용에 따라 흡수분할합병과 신설분할합병으로 나누어진다. 분할회사가 두 개 이상의 사업부문으로 분할된 다음에 분할된 사업부문을 각각 기존의 두 개 이상의 회사에 흡수시키는 경우를 흡수분할합병이라고 하며, 기업분할을 통해 분할회사에서 분리된 두 개 이상의 사업부문과 두 개 이상의 기존회사가 출자한 사업부문을 각각 합하여 두 개 이상의 회사를 신설하는 것을 신설분할합병이라고 한다.

〈그림 2〉 흡수분할합병



〈그림 3〉 신설분할합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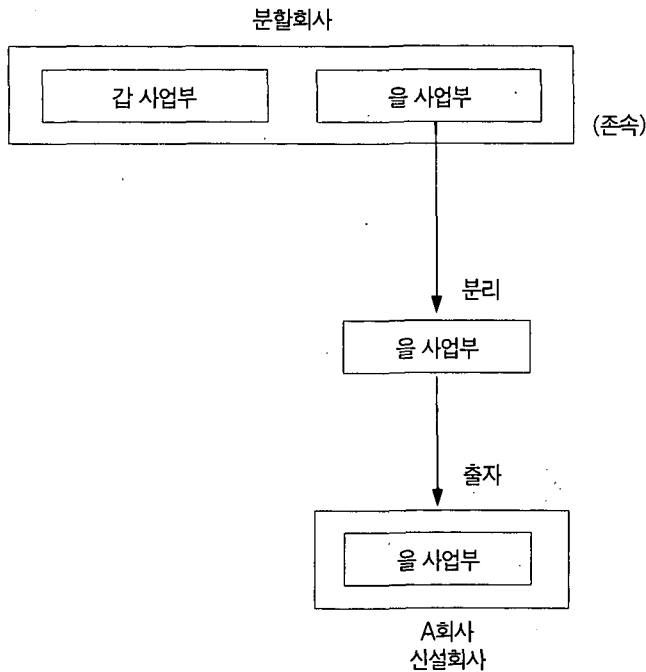


불완전분할은 분할회사가 특정 사업부문만을 분할하여 신설 또는 기존회사에 출자한 후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분할은 분할회사가 소멸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완전한 기업분할로는 볼 수 없다.

나. 불완전분할

불완전분할은 분할회사가 특정 사업부문만을 분할하여 신설 또는 기존회사에 출자한 후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분할은 분할회사가 소멸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완전한 기업분할로는 볼 수 없다. 그러나 기업분할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 프랑스 상사회사법은 이와 같은 형태의 분할도 기업분할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sup>2)</sup>

〈그림 4〉 불완전분할



2) 다만 출자의 대상을 완전분할의 경우 재산이라고 표현한 것과 달리 불완전분할의 경우에는 적극재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소극재산인 부채는 제외된다고 보아야 한다.

### III. 주요국의 기업분할 관련 과세제도

#### 1. 미국

미국의 회사법은 기업분할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내국세입법(Internal Revenue Code, 이하에서는 세법이라 함)에서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분할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세법 제302조에서는 회사가 주주에게 그 자산을 무상으로 또는 주식과 교환하여 분여하면 이를 배당소득 또는 자본이득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세법 제355조에서는 회사가 주주에게 타회사 주식을 교부하거나 채권 소지인에게 채권과 교환하여 타회사 주식을 교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spin-off<sup>3)</sup>는 세법 제355조를 이용하여 과세대상이 되지 않으면서 기업을 분할하는 기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spin-off는 조세회피 수단으로 남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요건하에서만 허용하고 있다.

- ① 이 주식거래는 회사의 영업거래가 아니어야 한다.
- ② 분할회사와 자회사(기존 회사의 경우)가 적어도 5년 동안 거래나 사업에 실질적으로 참여해 온 경우여야 한다.
- ③ 분할회사와 자회사(기존 회사의 경우) 발행주식의 80% 이상이 과거 5년 이내의 과세거래에 의해 취득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
- ④ 분할회사나 자회사의 발행주식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자의 경우에 그 주식은 과거 5년 이내의 구매에 의해 취득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
- ⑤ 자회사 주식의 80% 이상은 모회사 주주에게 배분되어야 하며, 모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은 전부 배분되어야 한다.
- ⑥ 주식의 분배는 주주들의 기존 지주비율에 비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 ⑦ 주식의 분배는 소득과 이윤을 분배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

#### 가. 직접세

##### 1) 법인에 대한 과세

spin-off 거래가 위의 요건을 충족하면 분할회사에는 어떠한 소득의 변동도 생기지 않는 것으

3) spin-off는 모회사가 현물출자 등의 방법을 통해 자회사를 신설하고 취득한 주식을 모회사의 기존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의 내국세법에서는 회사가 주주에게 타회사 주식을 교부하거나 채권 소지인에게 채권과 교환하여 타회사 주식을 교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spin-off는 이러한 규정을 이용하여 과세대상이 되지 않으면서 기업을 분할하는 기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로 간주하며(세법 제355조, 제361조), 신설회사에 양도된 자산의 가치는 분할회사가 소유할 때의 가치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세법제362조). 그러나 양도된 부채의 추정액이 양도자산의 과세가액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분은 분할회사의 이득이 된다(세법 제357조).

## 2) 비과세적립금의 처리

미국세법에는 비과세적립금이라는 개념이 없다.

## 3) 결손금에 대한 처리

자회사의 spin-off 거래에 의해 자회사가 신설되는 경우 분할회사의 모든 순경영손실과 다른 과세의무는 분할회사에 그대로 남아 있게 된다. 그러나 기존 자회사의 지분이 분배되는 경우 각 회사의 과세의무는 그 회사에 그대로 남아 있게 된다.

## 4) 특별과세 신고의무

비과세 기업분할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과세당국(IRS)의 허가를 받기 위해 늦어도 기업분할을 하는 날까지 양도자산의 가액과 성격에 관한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 5) 조세회피 방지규정

비과세 기업분할의 조건은 비과세합병의 조건보다 엄격하다. 세법 제355조의 엄격한 조건은 조세회피 방지규정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 6) 주주에 대한 과세

주주에게 배분되는 자회사의 주식은 과세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주식 이외에 다른 자산이 주주에게 배분되는 경우 이때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과 배분받은 자산의 시장가치 중에서 적은 쪽만큼의 이익이 실현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주주의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이 분배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실질가치 또는 시장가치를 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한다.

나. 간접세

1) 부가가치세

미국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2) 판매세

개인의 재산이 공정한 가격으로 매각될 때는 연방판매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상당수의 주정부는 개인재산의 소매가격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3~8% 사이의 세율로 판매세를 부과한다.

3) 부동산양도세

분할회사가 자회사에 양도하는 자산에 부동산이 포함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뉴욕시와 뉴욕주의 경우와 같이 몇몇 행정구역에서는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에 양도차익이나 시장가액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양도세를 부과한다. 뉴욕시와 뉴욕주에서는 뉴욕의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뉴욕의 부동산을 소유한 회사의 주식을 50% 이상 양도하는 경우에 대해 과세한다.

4) 등록세, 양도세, 인지세

연방정부는 기업분할과 관련하여 이러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2. 독일

독일은 1995년 1월 1일 시행된 신사업재편법에 기업분할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마련하고 이와 동시에 사업재편세법(UmwStG: Umwandlungssteuergesetz)에 대한 개정을 단행하여 과거 세무당국에 의해 공포된 법령하에서만 가능했던 비과세 기업분할을 활성화시켰다.

가. 직접세

1) 분할회사에 대한 과세

분할회사는 자회사로 양도되는 자산을 장부가치, 시장가치, 중간가치 중에서 무엇으로 기록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사업재편세법 제15(1)조, 제11(1)조). 그러나 장부가치의 이용은 다음의 경우에만 가능하다.

- ① 은닉 적립금이 자회사 수준에서 차후에 과세될 것이 확실한 경우
- ② 자산의 양도에 대해 대가가 지불되지 않았거나 대가총액이 자회사의 주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

독일은 1995년 1월 1일 시행된 신사업재편법에 기업분할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마련하고 이와 동시에 사업재편세법에 대한 개정을 단행하여 과거 세무당국에 의해 공포된 법령하에서만 가능했던 비과세 기업분할을 활성화시켰다.

물론 이러한 선택권은 기업분할로 인해 양도된 자산에 대해서만 주어진다. spin-off 거래의 경우 분할회사에 의해 보유된 자산은 계속해서 장부가치로 기입된다. 장부가치를 계속 이용하려면 양도된 자산이 일부 사업을 구성해야 하며 spin-off 거래의 경우 분할기업에 의해 보유된 자산 역시 일부 사업으로 간주되어야 한다(사업재편세법 제15(1)조). 일부 사업은 그 밖의 사업에 대해 얼마간 독립성을 갖고 있고 그 자체로도 생존 가능한 별도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전체 사업의 한 부분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필요조건 때문에 단일 자산 또는 몇몇 자산의 양도는 비과세 적용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대다수의 자산은 양도된 자산이 일부 사업을 구성하는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데 참고가 된다.

원칙적으로 합명회사 주식 또는 법인주식의 100%를 보유한 경우 또한 일부 사업으로 간주된다(사업재편세법 제15(1)조). 그러나 일부 사업이 이를 구성하고 있지 않던 자산의 취득을 통해 기업분할에 앞서 3년 이내에 확대된 것일 경우에는 비과세 양도가 이루어질 수 없다(사업재편세법 제15(3)조).

이러한 남용방지 규정이 일부 사업을 구성하는 다른 자산이 양도되는 상황에 적용되지 않는지의 여부가 문제이다. 은닉 적립금을 취득하려면 그와 같은 자산이 양도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방식으로 3년이라는 기간을 회피하여 사업을 분할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업분할 후 제3자에 대한 매출이 실현되거나 계획된 경우 조작된 이득의 차환은 불가능하다. 이는 기업분할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5년 안에 매출이 발생한다고 가정한 것이다(사업재편세법 제15(3)(4항)조).

## 2) 자회사에 대한 과세

자회사에 의해 인수된 자산 및 부채의 가치는 분할회사의 양도 대차대조표상에 나타난 가치와 동일하다. 자회사는 감가상각, 상각 및 양도자산의 다른 과세특성에 대하여 분할기업의 과세지위를 인계받는다.

분할기업의 보통주는 자산의 시장가치에 비례하여 과세목적으로 split-up 거래의 경우 자회사

에 배분되며, spin-off 거래의 경우에는 분할기업 및 자회사에 배분된다. 또한 이월된 결손금은 법인세 및 거래세 과세목적으로 자산의 시장가치에 비례하여 자회사들간에 또는 분할회사와 자회사간에 배분된다(사업재편세법 제15(4)조).

### 3) 주주에 대한 과세

일반적으로 기업분할시 주주들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분할회사의 주식은 장부가치 또는 취득비용으로 매각된 것으로 보고 자회사의 주식은 그와 동일한 가치로 취득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사업재편세법 제13조와 관련하여 사업재편세법 제15(1)조). split-up 거래에서 분할기업 주식의 취득비용은 양도된 자산의 가치에 비례하여 둘 이상의 자회사로부터 인수한 주식에 할당되어야 한다.

25%를 초과하는 분할회사의 주식소유권이 split-up 거래의 결과로서 자회사 주식에 대한 25% 미만의 소유권으로 전환된다면 지분은 여전히 25%를 초과하는 것으로 간주된다(사업재편세법 제13(2)조와 관련하여 사업재편세법 제15(1)조). 주식의 25% 또는 그 미만에 대한 소유권이 25%를 초과하는 소유권으로 전환된 경우 등 주식은 기업분할을 통해 시장가치로 취득된 것으로 간주한다(사업재편세법 제13(2)조(2항)와 관련하여 사업재편세법 제15(1)조).

## 나. 간접세

### 1) 부가가치세

기업분할은 사업 또는 일부 사업이 이전되었을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 2) 자본세

1992년 1월 1일을 기하여 폐지되었다.

### 3) 부동산양도세

기업분할을 통해 부동산이 신설회사에 양도된 경우 대가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동산양도세로 납부해야 한다. 대가는 주주에게 발행된 주식과 이전된 부채의 가치로 구성된다.

## 3. 프랑스

프랑스는 세법(CGI: Code General des Impots)에서뿐만 아니라 회사법에서도 기업분할에 관한 내용을 비교적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분할회사가 두 개 이상의 사업부문을 가지고 있고 신설회사 또는 기존회사에 전재산을 출자하며 출자의 대가로 인수한 주식을 2년 이내에 주주들에게 교부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 경제재정부 장관의 허가를 받는 경우 법인세가 비과세된다.

#### 가. 직접세

##### 1) 법인에 대한 직접세

기업합병에 적용되는 것과 매우 유사한 세법이 기업분할에도 적용되며,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경제재정부(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장관의 허가를 받는 경우 법인세가 비과세된다.

- ① 분할회사는 적어도 두 개의 사업부문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② 분할회사는 신설회사 또는 기존의 회사에 전재산을 출자해야 한다.
- ③ 출자의 대가로 분할회사가 인수한 주식은 2년 이내에 주주들에게 교부되어야 한다.

경제재정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못한 기업분할은 청산으로 간주하여 청산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 2) 비과세적립금의 처리

특별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비과세적립금은 이월되지 않는다.

##### 3) 결손금에 대한 처리

분할기업의 과세손실은 원칙적으로 신설회사에 승계될 수 없다. 예외적으로 경제재정부 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이월이 가능하다.

##### 4) 특별과세 신고의무

세법 제221조에 의해 사업의 중단을 선언해야 하고 기업분할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관한 소득세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wages)과 봉급(salaries)을 밝혀야 한다.

##### 5) 조세회피 방지규정

경제재정부 당국이 조세회피 방지규정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잘 적용되지 않는다.

##### 6) 주주에 대한 과세

기업분할을 인가받지 못한 경우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분배하는 자회사 주식은 과세대상이다.

분배받은 주식의 가액 중 주주가 당초 출자한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배당으로 의제하여 과세한다. 그러나 기업분할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배당으로 의제하지 않고 주주가 동 주식을 처분하여 양도차익을 발생시키는 때에만 과세한다.

#### 나. 간접세

##### 1) 부가가치세

분할회사가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그 자산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분할을 인가받지 못한 경우에는 자회사에 이전하는 자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분할을 인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2) 등록세, 양도세, 인지세

기업분할을 인가받은 경우 단일세율(1,220프랑)의 등록세를 지불하여야 한다.

### IV. 시사점

우리나라에는 상법뿐 아니라 세법에도 기업분할에 관한 규정이 없다. 물론 기업분할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영업양도와 자회사의 설립 등이 규정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영업양도와 자회사의 설립은 다음과 같이 세부담이 매우 크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영업양도는 일부 사업부문을 이미 설립되어 있는 타회사에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양도법인측에서는 양도자산의 양도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만큼 법인소득이 실현되므로 세부담이 생기며, 양도자산이 특별부가세가 적용되는 부동산, 토지 등의 자산일 경우 특별부가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양수법인측에서는 양도자산이 부동산이거나 기타 등기 등록해야 할 자산인 경우에는 등록세를 부담하여야 하며, 취득세의 과세대상일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에는 영업양도시의 세부담에 추가하여 자회사를 설립하는 데 따르는 세부담이 생긴다. 자회사의 설립등기시에 등록세를 부담하여야 하며, 분할회사가 자회사에 이전하는 자산에 부동산 등 등기·등록을 요하는 자산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그 자산에 대해 등록세와 취득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자회사의 설립 후 자회사의 소득이 배당을 통해 분할회사에 유입되면 분할회사는 법인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기업분할에 관한 제도적 뒷받침이 결여되어 있는 까닭에 우리 기업은 국내의 경제여건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선진국에서는 기업분할이 원활히 이루어질

우리나라도 기업분할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우리 기업이 과도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고 국내의 경제여건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상법에 기업분할의 개념을 도입하고, 기업분할에 대해 세제상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관련규정을 정비해야 한다.

수 있도록 이에 관련된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프랑스와 독일은 회사법뿐 아니라 세법에도 기업분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기업분할에 대해 세제상 혜택을 주고 있다. 미국은 회사법상 기업분할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지만, 세법에서는 기업분할을 인정하여 세제상 혜택을 주고 있다<sup>4)</sup>. 따라서 우리나라도 기업분할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우리 기업이 과도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고 국내의 경제여건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상법에 기업분할의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언급한 신설분할, 흡수분할합병, 신설분할합병, 불완전합병 등 기업분할의 형태를 정확히 정의함으로써 법적 기본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세법에서도 기업분할의 개념을 수용하여 기업분할에 대해 세제상의 혜택을 주어야 할 것이다.

## <부록> 주요국의 기업분할 관련 회사법 규정

미국은 회사법에 기업분할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반면 독일과 프랑스 등은 회사법에 기업분할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 1. 독일

#### 가. 기업분할의 형태

1995년 1월 1일 발효된 독일의 사업재편법은 기업의 분할에 관하여 특정한 회사법 규칙을 정해 놓고 있다(사업재편법 제123~173조). 이에 따라 현재 기업분할은 사업재편의 한 방편으로서 시행될 수 있게 되었다.

4) 일본의 경우에는 회사법뿐 아니라 세법에도 기업분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법인세법 제51조와 동법 시행령 제93조는 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현물출자에 의해 주식을 취득하거나 출자를 하는 경우 압축가장이라는 방법을 통해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즉, 현물출자에 의해 취득하는 자회사의 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익금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기장하고, 취득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함으로써 익금상당액을 상쇄하여 과세판계가 발생하지 않는다.

동법은 세 가지 형태의 기업분할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1) split-up(aufspaltung)

분할기업은 기존 또는 신설회사에 자신의 자산을 분리하여 양도한다. 분할기업의 주주들은 그들의 주식을 포기하고 기존 또는 신설회사의 신주를 취득한다(사업재편법 제123(1)조).

2) spin-off(abspaltung)

분할기업은 하나 이상의 기존 또는 신설회사에 자신의 자산 중 일부를 양도한다. 분할기업의 주주들은 인수기업의 주식을 취득한다(사업재편법 제123(2)조).

3) split-off(ausgliederung)

분할기업은 하나 이상의 기존 또는 신설회사에 자신의 자산 중 일부를 양도한다. 그 대가로 분할기업은 인수기업의 주식을 취득한다(사업재편법 제123(3)조).

동법은 위에서 설명한 세 가지 형태가 복합된 기업분할도 인정하고 있다.

나. 적용할 수 있는 규정

일반적으로 사업재편법 제125조는 합병에 관한 규정(사업재편법 제2~120조)이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기업분할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1) 불균형분할

동법에 의하면 모든 주주들이 주식의 불균형 양도에 동의할 경우 인수기업의 주식을 분할기업의 주주들에게 그들의 본래 지분에 비례하여 배분하지 않고서도 기업분할을 실시할 수 있다(사업재편법 제128조). 이 규정은 주주 집단과 일가친척의 분리를 용이하게 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동법은 그러한 점에서 불완전하다. 일례로 인수기업 주식의 불균형 양도에 대해 보상하기 위하여 분할기업의 기존 주식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세히 기술하고 있지 않다.

2) 분할계획서/계약서

기업분할은 인수기업에 회사 자산의 일부만을 양도하려는 목적에서 실시되므로 어떤 자산이 어느 기업에 양도될 것인지 정확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취지에서 분할기업의 대표자들(이사회)은 양도되는 자산이 개별적으로 확인된 분할계획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사업재편법 제126(1)조 제9항). 대부분의 경우 단순히 회사의 대차대조표를 참고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split-up에 관한 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자산은 특별한 규칙에 따라 인수기업에 배분된다(사업재편법 제131(3)조). 그러나 spin-off 또는 split-off의 경우 그러한 자산은 분할기업에 의해 보유된다. 그 밖에 계획서/계약서는 합병 계약에서 요구되는 동일한 종류의 정보<sup>5)</sup>

5) 계획서/계약서에는 관여된 회사명 및 소재지, 분할기업의 모든 자산 및 부채를 전체로 하여 인수기업 주식과의 교환으로 양도하는 것에 관한 합의서, 주식의 교환비율 및 추가교부금이 있는 경우 그 금액, 인수기업 주식의 양수에 관련된 세목, 교환된 주식의 배당에 대한 권리의 취득일, 기업분할의 효력발생일, 인수기업이 주주들에게 부여한 특별한 권리, 경영자·이사·감사 등에 대한 특혜, 기업분할이 종업원 또는 노동조합에 미치는 영향 및 그들과 관련된 계획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독일의 사업재편법에 의하면 모든 주주들이 주식의 불균형 양도에 동의할 경우 인수기업의 주식을 분할기업의 주주들에게 그들의 본래 지분에 비례하여 배분하지 않고서도 기업분할을 실시할 수 있다.

를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한다(사업재편법 제13(3)조와 관련하여 제125조).

### 3) 주주총회

기업분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업분할에 참여한 각 회사(분할기업 또는 인수기업)의 주주들이 주주총회에서 최소한 의결권의 4분의 3의 동의를 얻어 결의안을 승인해야만 한다(사업재편법 제13조와 관련하여 제125조). 이 결의안은 반드시 공증되어야 한다.

### 4) 소수주주

기업분할시 소수주주에 대한 보호는 합병의 경우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sup>6)</sup>. 특히 주주로서의 권리를 포기한 주주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은 split-off의 경우를 제외하면 특정한 소송절차를 거쳐 검토될 수 있다(사업재편법 제125조, 제15조 및 제305조). 또한 소수주주들은 합병에 대해 적용되는 공시 조건에 의해서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5) 채권자의 보호

기업분할에 있어 채권자 보호에 관한 가장 중요한 규정은 기업분할에 참여한 모든 회사들로 하여금 분할기업의 부채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다(사업재편법 제133(1)조). 그러나 만약 부채가 기업분할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회사에 양도되지 않았다면, 5년 후에는 그 부채에 대한 인수기업의 책임이 소멸된다. 부채를 양도받은(또는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합병에 대해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규칙을 적용받으므로 채권자들에게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사업재편법 제22조와 관련하여 제125조).

### 6) 종업원

기업분할시 사업의 일부를 취득한 회사는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고용계약하에서 발생된 의무 전부를 떠맡게 된다(민법전 제613a조). 사업재편법 제323(1)조는 고용 계약기간과 관련된 종업원의 신분이 2년 동안은 기업분할에 의해서 불리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업분할의 결과로 종업원의 참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촉발하는 요인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

6) 주주들은 분할기업의 주식을 포기하고 인수기업으로부터 교부받은 신주가 기존 권리의 가치를 공정하게 반영하지 않았다 고 판단될 경우 인수기업에 대해 현금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되었다면(기업분할의 결과로서 생긴 회사의 규모 때문에) 기업분할 이전에 제정된 종업원 참여에 관한 규칙이 기업분할 이후 5년 동안 계속해서 적용된다(사업재편법 제325(1)조). 그러나 기업분할 이전에 적용할 수 있었던 규칙은 기업분할 이후 회사의 종업원수가 그러한 규칙을 적용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소인원의 25% 이하로 줄어든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 7) 재무제표

원칙적으로 합병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관련된 대부분의 규정이 기업분할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이러한 규정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가) 분할기업

분할기업은 상사법원 서기국에 기업분할에 대한 등록을 신청하기 전 8개월 이내에 반드시 대차대조표(완성형 대차대조표)를 작성해야 한다. 연간 재무제표의 작성 및 감사에 관련된 모든 규정은 완성형 대차대조표에도 적용된다. 세법과는 달리 합병에서는 양도된 자산이 전체 또는 일부 사업을 구성해야 할 필요가 없다. 비록 양도가 단 하나의 자산과 관련되어 있다 할지라도 분할에 참여한 회사는 어떤 자산과 부채가 인수기업에 양도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완전한 선택의 자유를 갖는다.

spin-off의 경우 양도된 자산의 가치는 분할기업에 의해서 수취된 대가를 초과할 수도 있다. 만일 그렇다면 양도로 인해 발생한 순손실은 분할기업의 자본을 감소시킨다.

보통 이러한 순손실은 적립금에서 공제된다. 현존하는 적립금이 순손실을 보상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면 분할기업은 정상 자본을 감소시켜야만 한다. 반면 양도된 자산의 가치가 수취한 대가보다 낮다면 분할기업은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을 증가시켜야 한다. 이러한 증가분은 자본적립금으로 기장된다.

##### 나) 인수기업

인수기업이 기존회사이고 기업분할시 자산을 취득하였다면 특별 대차대조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그 대신 인수는 양도가 이루어진 해에 정상 사업거래로 기장된다. 회사분할이 실시됨에 따라 새로 설립된 경우에 한하여 인수기업은 반드시 공개 대차대조표를 작성해야만 한다. 인수기업은 양도된 자산을 장부가치나 취득원가 중에서 선택하여 기록할 수 있다(사업재편법 제24조). 만약 인수기업이 차환 장부가치를 선택한다면 자산의 장부가치와 주식자본 증가분의 액면가격 사이의 양(+)의 차액은 자본적립금으로 기장되어야 한다(상법전 제272(2)조 제1항). 반면 음(-)의 차액은 분할손실로 기장된다. 인수기업이 획득한 자산을 취득원가로 기록하기로 한 경우 취득원가는 발행된 주식의 액면가격 또는 공정한 시장가치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주식의 액면가

프랑스에서는 거래에 관련된 회사의 대표자들에 의해서 정식으로 서명된 분할계획서의 사본을 반드시 공시하고 아울러 상사법원 서기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분할계획서에는 분할기업의 부채가 자산 및 부채를 양도받은 회사들간에 어떻게 배분될 것인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격과 획득한 자산에 대해 선택한 가치 사이의 차액은 자본적립금으로 기장되어야 한다.

#### 다) 연대책임

앞서 채권자의 보호에 관한 내용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업분할에 참여한 회사들은 기업분할 이전에 발생된 모든 부채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기업분할시 부채가 다른 회사에 할당된 경우에도 연대책임을 지는 각 회사들이 대차대조표상에 모든 부채의 총액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그러한 요구조건은 과도한 부채를 지고 있는 몇몇 회사들에 대해 부담을 주며 그렇지 않으면 실행가능한 기업분할을 위축시키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채를 전부 각 회사의 대차대조표상에 기록할 필요는 없다. 그 대신 각 회사는 기업분할시 각자에게 할당된 부채를 제시해야만 한다. 상법전 제251조에 따라 회사들이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금액은 주식으로, 즉 과세대상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임시 항목으로 표시해야 한다.

## 2.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합병에 관한 법률 및 법령 규정이 일반적으로 기업분할에 대해서도 적용되므로 다음에서는 기업분할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 가. 분할계획

분할계획서는 반드시 기업분할에 관련된 회사의 이사회 또는 경영자에 의해서 작성되어야 한다. 분할계획서의 내용은 합병계획서의 내용과 동일하다. 거래에 관련된 회사의 대표자들에 의해서 정식으로 서명된 분할계획서의 사본은 반드시 공시해야 하며 아울러 상사법원 서기국에 제출해야 한다.

분할계획서에는 분할기업의 부채가 자산 및 부채를 양도받은 회사들간에 어떻게 배분될 것인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나. 특별 재무제표 및 보고서**

법 제377조 및 제382조에 따르면 분할기업이 유한책임회사(SARL)이거나 주식회사(joint-stock company)인 경우 양도된 자산의 가치와 기존 또는 신설회사에 의해 발행된 신주의 가치가 일치하는지 그리고 주식의 교환비율이 공정한지에 대하여 검증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상사법원장이 한 명 이상의 분할감사인을 지명한다. 그러나 기업분할이 단지 분할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인계받는 새로운 회사의 설립에 의해 실시되고 각각의 신설된 회사의 주식이 분할기업의 주주 또는 사원들에게 구회사의 주식자본에 대한 그들의 권리에 비례하여 배분된다면 주식의 교환비율이 공정한지의 여부를 검증한 두번째 보고서는 작성할 필요가 없다. 분할기업이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합병에 대해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규정에 의거하여 반드시 이사회가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 승인**

법 제372(2)조 및 제382조에 따르면 기업분할에 대한 주주의 승인은 회사의 정관을 수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조건하에서 인정된다. 이는 합병의 경우와 동일하다<sup>7)</sup>.

법 제383조에 따르면 한 회사가 새로이 설립된 회사들로 분할되고 신설기업에 대해 별다른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신설기업의 정관안은 분할기업의 주주들에 의해 승인되어야 하며, 따라서 이 경우 신설기업 주주들의 승인은 그 요건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소수주주의 보호**

기업분할에 관한 법규에 따르면 소수주주의 보호에 관한 특별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상장기업의 경우 프랑스 상법과 판례법의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다수에 의해 권리가 남용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소수주주에 대한 보호가 보장되고 있다.

프랑스 증권거래소 규정 제5-5-5조에 의거하여 상장회사를 지배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반드시 계획된 양도에 대해 증권거래소에 고지해야 하며 아울러 소수주주들에게 주식매입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증권거래소와 공동으로 조사해야 한다.

**마. 채권자의 보호**

법 제386조에 따르면 채권자의 보호에 관한 법적인 처분은 합병과 기업분할 양자에 대해 똑같이 적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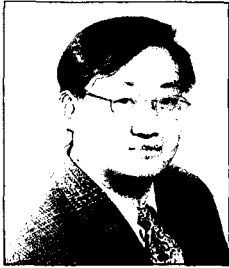
7) 예를 들면 무한책임조합(SNC)의 경우 사원들의 만장일치에 의해, 합자회사(SCS)의 경우 무한책임사원의 만장일치와 유한책임사원의 총인원 및 자본의 과반수에 의해, 유한책임회사의 경우(SARL) 주주의 4분의 3에 의해, 주식회사의 경우(SA) 특정한 정족수 조건하에서 주주에 의해 행사된 의결권의 3분의 2에 의해 분할계획서가 승인되어야 한다.

프랑스에서는 분할기업이 유한책임회사이거나 주식회사인 경우 양도된 자산의 가치와 기존 또는 신설회사에 의해 발행된 신주의 가치가 일치하는지 그리고 주식의 교환비율이 공정한지에 대하여 검증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상사법원장이 한 명 이상의 분할감사인을 지명한다.

바. 상장기업에 대한 추가 요구조건

기업분할에 관련된 회사가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한다(관보예의 공시). ~~10~~

# 국민의료와 조세정책



손 원 익 /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1. 문제의 제기

의료기관을 병상수에 따라 분류하면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으로 구분된다. 종합병원은 입원 환자 10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내과·일반외과·소아과·산부인과·방사선과·마취과·병리과·치과를 설치하고 각과에 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병원은 입원환자 3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하지만 치과의 경우 입원시설에 제한이 없다. 의원은 진료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말한다.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95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총의료기관은 2만 9,773개이며 총병상수는 19만 6,232개이다.

최근 들어 병상 이용률의 하락 및 낮은 수익성, 인건비 상승 등으로 경영이 어려워져 폐업하는 병원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표 2>는 병원의 폐업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1996년의 경우 한해 동안 726개 병원 중 56개 병원이 폐업하여 폐업률이 7.7%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범인기업의 부도율인 3.2%보다 크게 높은 것이다. 또한 진료비가 의료보험수가의 형태로 가계통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들은 수입의 확보를 위하여 과다진료 및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항목의 개발에 주력하게 되어 불필요한 진료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대한 객관적 통계를 찾을 수는 없지만 산부인과에서 분만의 경우에 제왕절개수술 비율이 최근 급격히 증가하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병상 이용률의 하락 및 낮은 수익성, 인건비 상승 등으로 최근 경영이 어려워져 폐업하는 병원들이 증가하고 있다. 1996년의 경우 폐업률이 7.7%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법인기업의 부도율인 3.2%보다 크게 높은 것이다.

〈표 1〉 전체 의료기관 현황(1995년)

(단위 : 개, %)

	계	일반		치과		한방		기타 <sup>1)</sup>
		종합병원·병원	의원	병원	의원	병원	의원	
의료기관	29,773 (100.0)	664 (2.2)	14,343 (48.2)	12 (0.0)	8,292 (27.9)	69 (0.2)	5,928 (19.9)	465 (1.6)
병상	196,232 (100.0)	130,290 (66.4)	44,610 (22.7)	81 (0.0)	29 (0.0)	3,498 (1.8)	168 (0.1)	17,556 (8.9)

주 : 1) 기타에는 결핵·나·정신병원 등 특수병원과 회사의 종업원을 위한 부속의원, 조산소가 포함됨.  
 자료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1996.

〈표 2〉 의료기관의 폐업률 추이

(단위 : 개, %)

	1994	1995	1996
등록병원수 <sup>1)</sup>	650	693	726
폐업병원수	37	22	56
종합병원	3	6	10
병원	34	16	46
폐업률	5.7	3.2	7.7
전체법인수 <sup>2)</sup> (A)	125,413	142,084	160,071
부도법인수 <sup>3)</sup> (B)	4,513	6,031	5,157
대기업	5	5	7
중소기업	4,498	6,026	5,150
부도율(B/A)	3.6	4.2	3.2

주 : 1) 대한병원협회 등록병원으로 일반적으로 의원급은 제외됨.  
 2) 국세청 법인세과의 당해연도 말 가동법인수임.  
 3) 한국은행(자금부 금융시장실) 발표 부도법인수임.

였음은 이러한 경향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고 있다.

병원의 총의료수익 중에서 보험환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1992년 64.4%, 1993년 68.5%였고, 1994년에는 약간 감소한 66.4%였으며 1995년에는 67.2%를 차지하여 보험환자의 비중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 수입의 거의 70% 수준은 보험환자로부터 발생하게 되며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의 빈도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보험수가의 통제로 인해 진료과별 의사인력 공급의 왜곡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대한 객관적인 통계는 빈약하지만 전공의의 전문과목별 선호도를 보면 <표 3>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표 3> 전공의의 전문과목별 선호도

		1994	1995	1996
비인기	소아과	101	98	90
	일반외과	79	75	66
	흉부외과	58	55	35
	마취과	63	66	59
	치료방사선과	65	36	30
인기	내과	130	128	133
	정신과	129	141	158
	피부과	114	127	138
	안과	106	117	141
	재활의학과	85	122	127

주 : 선호도는 전과목 평균 응시율(응시자수/정원수)을 100으로 한 응시자수임.  
 자료 : 대한병원협회.

## II. 병원경영 및 의료서비스 현황

### 1. 병원경영 실적

타산업과 의료서비스 산업의 수익성 지표를 비교해 보면 병원과 종합병원의 지표가 타산업에

의료기관 수입의 거의 70% 수준은 보험환자로부터 발생하며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의 빈도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보험수가의 통제로 인해 진료과별 의사인력 공급의 왜곡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비하여 현저히 악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의료이익에 의료외이익을 가산하고 의료외비용을 차감한 경상이익의 총자산에 대한 비율, 즉 총자산 경상이익률을 비교해 보면 11개 비교대상 산업 중 1993년에 병원은 3위, 종합병원은 8위였으나 1994년에는 각각 4, 10위, 1995년에는 각각 9, 10위를 기록하였다.

〈표 4〉 총자산 경상이익률의 산업간 비교

(단위 : %)

	1993	1994	1995
	(3/11)	(4/11)	(9/11)
전기가스업	6.16	6.33	5.73
오락 및 문화예술서비스	3.84	3.55	4.93
운수창고	3.37	4.72	4.25
제조업	1.59	2.64	3.59
숙박	2.26	2.33	2.73
부동산사업서비스	1.72	2.13	2.15
도소매	1.58	1.92	1.74
건설업	3.31	2.57	1.17
병원	3.80	2.90	-0.20
종합병원	1.40	-0.10	-1.90
광업	-5.24	-6.11	-7.52

주 : 총자산 경상이익률 = 경상이익 × 100 / 총자산  
 자료 : 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 『'95 병원경영분석』, 1996.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각 연도.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병원의 경영실적<sup>1)</sup>은 계속 악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병원의 당기순이익을 보면 1992년 7,800만원의 흑자를 보인 이후 계속 하락하여 1995년의 경우에는 병

1) 공식적인 병원경영통계로서는 유일하게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하고 재단법인 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에서 분석하는 『병원 경영분석』이 있다.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1년간의 경영실적을 조사하여 작성하는데 1993년 이후 매년 발간되어 왔으며, 1995년의 경우 744개 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564개를 분석하였다. 이 자료는 의료보험수가인상률을 결정할 때 참고자료로도 활용되고 있다.

원 평균 연간 3,500만원의 적자를 보이고 있다. 일반기업의 영업활동에 대응하는 의료활동에서는 흑자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영업외활동인 의료외수지면에서의 적자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는 금융비용의 부담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5〉 민간병원<sup>1)</sup> 급의 경영성과

(단위 : 백만원)

	1992	1993	1994	1995
의료사업 수익합계	2,910	3,208	3,455	3,826
의료사업 비용합계	2,636	2,880	3,248	3,633
의료손익	274	328	207	193
의료외수익 <sup>2)</sup>	71	64	146	90
의료외비용 <sup>3)</sup>	257	311	324	307
경상손익	88	81	29	-24
특별이익 <sup>4)</sup>	4	2	5	10
특별손실 <sup>4)</sup>	4	11	21	10
법인세 등	10	18	17	11
당기순이익	78	54	-4	-35

주 : 1) 민간병원이란 전체 병원 중 국·공립병원을 제외하였으며 백병상 기준임.

2) 의료외수익에는 수입이자와 할인료, 보조금수입, 기타수익이 포함됨.

3) 의료외비용에는 지급이자, 기부금, 이연자산상각비, 의료사고보상비, 전출금 등이 포함됨.

4) 특별손익에는 고정자산처분손익, 투자자산처분손익, 상각채권추심이익, 재해손실, 기타특별손익이 포함됨.

자료 : 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 『병원경영분석』, 각 연도.

## 2. 인건비 비중

〈표 6〉은 의료비용 중 인건비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는데 1992년 38.6%에서 1995년 41.8%까지 꾸준히 증가하여 의료업의 인건비 비중이 매우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건비 중의 사급여의 비중도 1995년에 11.2%로 점차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인건비의 증가는 비용을 증대시키므로 수익성 하락과 함께 병원경영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의료업의 인건비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인건비 중 의사급여의 비중도 점차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인건비의 증가는 비용을 증대시키므로 수익성 하락과 함께 병원경영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표 6〉 민간병원급의 백병상당 의사인건비 비중

(단위 : 백만원, %)

	1992	1993	1994	1995
의료사업 비용합계(A)	2,636	2,880	3,248	3,633
인건비(B)	1,018	1,175	1,350	1,519
(B/A)	(38.6)	(40.8)	(41.6)	(41.8)
의사급여(C)	282	299	370	408
(C/A)	(10.7)	(10.4)	(11.4)	(11.2)

자료 : 한국보건 의료관리연구원, 『병원경영분석』, 각 연도.

### 3. 의료환경의 변화

소득수준의 향상과 전국민의료보험의 실시에 따른 의료수요의 증가로 인한 환자의 증가현상을 고려할 때 의료서비스 환경이 개선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악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표 7〉에서와 같이 병상수는 1975년 대비 1995년에 7.54배 증가하였으며 전체 등록 의사수는 같은 기간 동안 3.51배 정도 증가하였다. 한편 이 기간 동안에 환자수는 8.39배 증가하여 병상수 및 의사수에 비해 훨씬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의사 1인당 환자수는 1975년에 2.01명에서 1995년에 4.47명으로 오히려 2.23배 증가하였다.

『보건복지통계연보』에 의하면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특수병원 및 한방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을 포함하여 1992년 8월 26일의 전체 환자수는 외래 114만 6,139명, 입원 13만 9,647명으로 총 128만 5,786명이었다. 따라서 이를 1992년의 전체 의사수인 6만 6,315명으로 나누면 의사 1인당 1일 환자수는 19.4명이 된다.

〈표 7〉 의료서비스 여건 변화

(단위 : 명, 개)

	1975(G)	1980	1985	1990	1995(H)	(H/G)
시설						
병원병상수(A)	19,989	38,096	74,365	99,843	150,632	7.54
의사						
면허등록의사수(B)	16,260	22,074	29,151	42,458	57,096	3.51
전문자격등록수	5,854	8,415	14,797	23,222	32,003	5.47
면허등록치과의사(C)	2,512	3,549	5,375	9,606	13,668	5.44
면허등록한의사(D)	2,551	2,818	3,628	5,701	8,625	3.38
전체의사수(B+C+D)	21,323	28,441	38,154	57,765	79,389	3.72
환자						
일평균재원환자수(E)	12,900	23,139	44,817	80,512	98,768	7.66
일평균외래환자수	24,834	59,864	120,081	169,243	217,771	8.77
병원환자수(F)	37,734	83,003	164,898	249,755	316,539	8.39
F/(B+C) (의사1인당환자)	2.01	3.24	4.78	4.80	4.47	2.23
E/A (병상이용률)	0.65	0.61	0.60	0.81	0.66	1.02

주 : 병상수 및 환자수 등 통계는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결핵병원, 나병원, 정신병원에 대한 통계이며 의원급은 제외됨.

자료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1996.  
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 『'95 병원경영분석』, 1996.

한편 병원경영과 직접 관련 있는 병상이용률은 1975년에 64.5%에서 약간씩 하락하다가 다시 1990년 80.6%까지 증가하였으나 1995년에는 65.5%로 급격히 하락하였다. 이는 그동안 민간 수준에서 병상 신·증설작업을 해왔으나 1987~88년 기간중에 병상이용 환자수가 급증하여 1990년에 병상이용률이 크게 증가하였고, 이후 1991년부터 재투자금 지원에 의하여 병상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1995년 다시 하락한 것으로 판단된다.

### III. 병원경영의 장기 개선방향

#### 1. 의료보험수가의 현실화

현재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인구의 노령화를 감안한 수가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일반

의료수가 구조의 정비와 수준의 적정화만으로는 진료비의 효과적인 통제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진료비 지불보상제도는 국민의료비 지출의 지나친 상승을 억제하고 의료기관에 대해 자발적으로 의료비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유인할 수 있는 형태로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표 8〉 주요국의 의료보험료 부담수준

	한 국 <sup>1)</sup>	일 본 <sup>2)</sup>	대 만	미 국
부담보험료 (소득비례)	소득의 2~8% 현행 3.05%	3.0~9.5% 현행 8.3%	1인당 4.25% (5인 한도)	메디케어 병원보험의 경우 급여의 2.9%
진료비중 본인부담률	입원 20% 외래 30~55%	입원 20% 외래 70%	입원 5~30% 외래 50~420NT달러	

주 : 1) 한국은 직장의료보험 기준 평균이며 1997년 3월 말 현재 총 145개 조합 중 127개 조합은 표준보수월액의 3.0%, 3.2%가 2개 조합, 3.4%가 5개 조합, 3.6%가 4개 조합, 3.8%가 1개 조합, 4.0%가 5개 조합, 4.8%가 1개 조합임.  
2) 일본은 조합관장건강보험 기준임.

적으로 고연령층은 저연령층에 비하여 의료비 지출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수가조정을 해야 한다.

진료수가의 상승은 필연적으로 보험료 수준의 상승을 야기할 것이다. 현행 제도하에서의 의료보험료 수준은 〈표 8〉에서 볼 수 있듯이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다소의 보험료 수준의 상승에 대한 저항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수가 구조의 정비와 수준의 적정화만으로는 진료비의 효과적인 통제가 불가능하다. 저수가체제하에서 구조화된 중복·과잉진료를 수가가 정상화된 후 의료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시정할 것으로 기대하기 힘들며, 또한 의료행위에 따라서 사후적으로 진료비가 지불되는 진료비 지불제도하에서는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투입비용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것으로 기대하기도 힘들 것이다. 따라서 진료비 지불보상제도는 국민의료비 지출의 지나친 상승을 억제하고 의료기관에 대해 자발적으로 의료비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유인할 수 있는 형태로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 2. 경영효율성 제고

현행 의료법 제30조 2항에서는 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③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료법인) ④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학교 및사회복지법인 등) ⑤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또는 한국보훈복지공단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비의료인의 병원설립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1996년도 상속세법 개정 이전까지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시 특수 관계인에서 의료인을 예외로 인정함으로써 법인형태의 의료기관의 설립이 비의료인에게 제한되어 왔다고 평가된다<sup>2)</sup>.

병원운영도 하나의 경영활동이므로 의료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의료인이 아닌 전문 경영인이 의료기관을 경영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규정이 개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3. 원활한 의료인력 공급

의료인력의 공급과 국민의료서비스의 수준과는 어느 정도까지는 서로 정비례의 관계가 있다. 병원경영을 압박하고 있는 또 하나의 요인은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산업들에 비해서 현저히 높다는 것이다. 병원경영과 관련하여 주요 외국에서도 의사 인건비의 비중이 경영압박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진료환자에 비하여 진료의사의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진료여건이 상당히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병원경영의 개선과 의료서비스 여건의 향상을 위해서 원활한 의료인력의 공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4. 재특자금지원 관련제도 개선

병원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신규 개업병원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로 정부의 재정투자자자금과 농특자금을 통한 병원설립 지원을 들 수 있다. 1997년도에 병상확충을 위해 재정투자자 특별회계와 농특자금을 통해 각각 650억원과 140억원의 자금이 배정되었다.

이러한 병상확충을 위한 정부의 보조는 병원신설을 촉진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병원신설이 많은 것은 기본적으로 병원설립자들의 병원경영 여건에 대한 사전조사의 부족과

2) 1996년도 세법개정 이전까지는 상속세법상 공익법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출연자가 의료인이 아닌 경우 출연자 및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했다. 그러나 출연자가 의료인인 경우 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 보지 않았다. 또한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는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없지만 출연자가 의료인인 경우 그 출연자만이 그 법인의 이사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노년층의 의료서비스 수요가 저연령층에 비하여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전반적인 인구의 감소와 노년층 인구비중의 증가를 감안하여 적정 병상수를 추정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병원설립에 대한 지원수준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병원설립에 대한 저리용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병상수의 증가는 1990년도 초반의 병상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병상 이용률의 감소를 가져와 병원경영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1989년부터 전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됨으로써 의료수요가 증가하였으나 이는 단기간에 소멸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병상수의 증가를 의료서비스 증가가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재투자금을 통한 지나친 병원설립의 지원은 지양하고, 장기적인 의료서비스 수요의 전망에 입각한 병원설립의 적정수준을 감안하여 병원설립에 대한 지원이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의료서비스 수요의 장기전망은 인구증가율과 인구구조 변동에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의료서비스 수요와 관련된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동의 특징은 인구의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노년층의 의료서비스 수요가 저연령층에 비하여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전반적인 인구의 감소와 노년층 인구비중의 증가를 감안하여 적정 병상수를 추정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병원설립에 대한 지원수준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원대상의 선정에 있어서도 인구 노령화에 따른 의료서비스 수요 종류의 변화를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즉 현재보다 노년층에 발병률이 높은 질병을 치료하는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여야 한다.

#### IV. 의료기관의 형태 및 관련세제

##### 1. 한국

###### 가. 의료기관 형태

우리나라의 의료기관을 설립주체별로 분류하면 의료법 제30조(개설) 및 제31조(의료기관의 개설탁례)에 의하여 <표 9>와 같이 6가지로 나타낼 수 있다.

〈표 9〉 설립주체에 따른 의료기관의 분류

설립주체	유형	성격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개인병원	민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국립병원(국립의료원) 국공립병원(각군 보건의료원) 시립병원(시립서대문병원)	공공 공공 공공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료법인)	의료법인(제일병원)	민간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sup>1)</sup>	사단/재단법인(동원보건원/서울중앙병원) 국립대병원(충북, 충남, 경상대) 학교법인(연대병원) 사회복지법인(삼성서울병원)	민간 공공 민간 민간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또는 한국보훈복지공단	특수법인병원(서울대, 부산대, 원자력, 적십자) 지방공사병원(지방공사강남병원) 한국보훈복지공단(보훈병원)	공공 공공
기타 의료법 제31조(개설특례)	회사법인(한진)	민간

주 : 1) 사립학교법 제6조(사업),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수익사업)를 참조

〈표 10〉 의료기관의 의료법 관련세목

	국세				지방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특별부가세 또는 양도소득세	재산세 <sup>2)</sup>	종토세 <sup>2)</sup>	면허세	취득세	등록세 <sup>3)</sup>	사업소세 <sup>4)</sup>
개인병원	○	×	○	○	○	○	○	○	○	○
사단법인	×	○	×	○	○	○	○	○	○	○
재단법인	×	○	×	○	○	○	○	○	○	○
의료법인 <sup>1)</sup>	×	○	×	○	×	×	×	×	△	○
사회복지법인	×	○	×	×	×	×	×	×	△	○
학교법인	×	○	×	×	×	×	×	×	△	×
공공의료법인 <sup>1)</sup>	×	○	×	×	×	×	×	×	×	×

주 : 1) 지방세법에서 의료법인은 비영리사업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지만 동법 제290조 제17호에 의하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를 면제함.

2) 비영리사업자이고 학교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의료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므로 재산세, 종토세를 납부하지 않음.

3) 특별시, 광역시 및 도청소재지 시지역에서의 부동산 등기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됨.

4) 의료법인은 사업소세 중 종업원할만 납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법인은 사업소세를 납부하고 있음. 학교법인 및 국립대병원 등은 지방세법 제209조(기타 비과세사업자)에 의하여 비과세됨.

국세 중 의료기관의 형태에 따라 차별되는 세목이 특별부가세인데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양도차익에 대하여 개인병원, 사단법인·재단법인·의료법인은 특별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학교법인·사회복지법인·공공의료법인 등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고 있다.

**나. 관련세제**

현행 의료기관과 관련되는 세목은 국세로서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특별부가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이 있고 지방세로서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취득세, 등록세, 사업소세 등이 있으며 그 밖에 관세가 이에 해당된다.

〈표 10〉은 우리나라 의료기관 형태별로 관련되는 세목을 요약한 것이다. 국세 중 의료기관의 형태에 따라 차별되는 세목이 특별부가세인데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양도차익에 대하여 개인병원은 양도소득세를, 사단법인·재단법인·의료법인은 특별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학교법인·사회복지법인·공공의료법인 등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고 있다.

한편 지방세의 경우에는 개인병원·사단법인·재단법인 등은 재산세·종합토지세·면허세·취득세·등록세 등을 납부하지만, 의료법인·학교법인·사회복지법인·공공의료법인 등은 면세되고 있다. 사업소세의 경우에는 의료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등도 납부하고 있다.

**〈표 11〉 의료기관 형태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범위**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근거	법인세법 제12조의 2(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감법 제61조(기부금의 손금산입 특례)
개인병원	해당없음
사단·재단법인	수익사업 소득의 50% 범위 내
의료법인	수익사업 소득의 50% 범위 내
사회복지법인	수익사업 소득 범위 내
학교법인	수익사업 소득 범위 내
공공의료법인 <sup>1)</sup>	수익사업 소득 범위 내

주 : 1) 국립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

의료기관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법인·학교법인·공공의료법인 등의 경우 전액 비용으로 인정되고 있어 사실상 법인세가 전액 비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사단·재단법인, 의료법인 등은 수익사업 소득의 50%만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산입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의료기관이 수익사업인 의료업에서의 수익에 대하여 재투자하는 경우에 손비인정 여부를 살펴보았다. 반대로 개인이나 법인이 의료기관에 기부금을 납부할 때의 손비인정 한도를 요약하면 <표 12>와 같다.

의료법인 및 사단·재단법인에 대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어 일정한도 내에서만 손금산입되며, 학교법인·사회복지법인·서울대학교병원 및 국립대학교병원 등은 조세감면규제법상 공공법인으로 이들에 대한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간주되어 전액 손금인정된다(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표 12> 의료기관에 기부금 납부시 손비인정 한도

의료기관	손비인정 한도액	
	법인의 경우	개인의 경우 <sup>2)</sup>
개인병원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의료법인, 사단·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sup>1)</sup>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법정기부금 손금산입액) × 7% + 자기자본(50억원을 한도) × 2%	- 개인사업소득이나 부동산 소득이 있는 개인 : 법인과 동일
학교법인, 서울대병원 및 국립대병원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근로소득자 : 소득금액의 5% 범위 내

주 : 1)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기부금의 손금산입 특례) ③항 참조  
 2) 소득세법 제52조(특별공제) ①항 참조

## 2. 일본

### 가. 의료기관 현황

일본의 의료공급 체계를 보면 전체 공급자의 95.2%가 민간법인 및 개인 의료기관인 민간공급자이다. <표 13>은 일본의 전체 의료기관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일본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의 비중이 3.2%로서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민간의료기관 중 법인 형태의 의료기관은 전체의 24.1%이고 개인의료기관이 70.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법인 형태의

의료법인 및 사단·재단법인에 대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어 일정한도 내에서만 손금산입되며, 학교법인·사회복지법인·서울대학교병원 및 국립대학교병원 등은 조세감면규제법상 공공법인으로 이들에 대한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간주되어 전액 손금인정된다.

〈표 13〉 일본의 전체 의료기관 현황<sup>1)</sup>

(단위 : 개, %)

	계	병원	일반진료소	치과진료소
총계	157,399 (100.0)	9,490	88,333	59,576
국립 <sup>2)</sup>	967 ( 0.6)	387	579	1
지자체	5,184 ( 3.2)	1,073	3,775	336
기타공적 <sup>3)</sup>	1,590 ( 1.0)	429	1,140	21
민간	38,089 (24.1)	5,724	26,127	6,238
공익법인	1,528 ( 0.9)	402	959	167
학교법인	201 ( 0.1)	95	94	12
의료법인 <sup>4)</sup>	28,427 (18.0)	4,871	17,652	5,904
회사	3,134 ( 1.9)	81	3,002	51
기타법인	4,799 ( 3.0)	275	4,420	104
개인	111,569 (70.8)	1,877	56,712	52,980

주 : 1) 1996년 9월 말 현재 전체 의료기관 기준임.

2) 후생성, 문부성, 노동복지사업단 등이 포함됨.

3) 일직심자, 제생회, 북해도사회사업협회, 후생연, 국민건강보험단체연합회와 그 밖에 사회보험단체로서 전국사회보험 협회연합회, 후생단, 선원보험회, 건강보험조합, 공제조합, 국민건강보험조합 등이 포함됨.

4) 의료법인재단, 의료법인사단, 특정의료법인 등이 포함됨.

자료 : 후생성, 『의료시설동태조사월보(개수)』, 1996. 12.

의료기관 중에서는 의료법인재단, 의료법인사단, 특정의료법인<sup>3)</sup> 등이 포함되는 의료법인이 1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3) 특정의료법인은 조세특별조치법에 규정된 법인이며 재단에 자본이 정해져 있지 않은 법인으로 그 사업이 의료서비스의 보급향상 등 공익증진에 현저하게 기여하는 동시에 공적인 운영에 관한 일정조건을 만족하는, 대장성 장관이 승인하는 법인이다. 공익성에 대한 기준으로는 ① 보험 진료액 이외의 보수의 제한, 친인척 취임의 제한 ② 특정한 규정 이외에 이익을 공유하지 않음 ③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나 지방공공단체 또는 기타 의료법인에 귀속시킴 ④ 응급진료 고시병원 등의 시설 보유 ⑤ 공익성에 반하는 사실이 없음 등이 있다.

나. 의료기관 관련세제

법인세율은 의료기관별로 의료법인(보통법인) 37.5%, 특정의료법인(비영리) 27%, 공익법인 27%가 적용되고 적십자, 사립학교 등은 비과세되고 있다.

1) 국세

의료법인의 법인세는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소득에 대하여 37.5% 세율로 과세되며 사회보험 진료 보수<sup>4)</sup>에 대해서는 비과세된다. 다만 특정의료법인의 수익사업 소득에 대하여 27% 세율이 적용된다. 의료법인의 사업세는 경감세율에 의해 과세되며 350만원 이하는 6%, 350만원 초과 시에는 8% 과세된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소득을 계산할 때, 의료업 및 치과의료업을 운영하는 개인이나 의료법인의 사회보험진료 보수가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정 비율의 경비(개산경비율)를 비용으로 계산하고 있다(조세특별조치법 제26조, 제67조). 사회보험진료 보수 수입금액별 개산경비율은 <표 14>와 같다.

<표 14> 수입금액별 개산경비율

사회보험진료수가 수입금액	개산경비율	개산경비율 계산방식
2,500만원 이하	72%	수입금액×72%
2,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70%	수입금액×70%+50
3,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62%	수입금액×62%+290
4,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57%	수입금액×57%+490
5,000만원 초과	적용하지 않음	실제금액

자료 : 대장성.

또한 주민세의 경우에는 소득할의 과세표준을 적용하는 경우, 지방세법 및 동 시행령 규정 이외의 소득세에 관한 법령에 의해 개산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의료업의 지원을 위하여 개산경비율제도 이외에 의료용 기기 등에 대한 특별상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 밖에 의료업에 대한 국세우대 조치로서 인지세의 경우 의사가 업무상 작성하게 되는 서류에는 비과세하며 지가세의 경우에도 병원, 진료소 등에 제공된 토지에는 비과세하고 있다. 소비세는 국공립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이 납부하지만 의료소비행위 중 사회보험진료비는

4) 법이 정한 진료행위(요양급여, 입원시 식사 요양비, 방문간호 요양비, 가족방문간호 요양비)로부터의 수익을 말한다.

일본에서는 의료업의 지원을 위하여 개산경비율제도 이외에 의료용 기기 등에 대한 특별상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 밖에도 의사가 업무상 작성하게 되는 서류에 대한 인지세, 병원, 진료소 등에 제공된 토지에 대한 지가세는 비과세하고 있으며 소비세는 국공립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이 납부하지만 의료소비행위 중 사회보험진료비는 비과세된다.

비과세된다.

## 2) 지방세

사업세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혜택을 받은 것에 대해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즉 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공시설을 이용함으로써 보다 나은 수익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이와 관련된 행정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조세를 부과하게 된다.

법인 또는 개인이 하는 모든 사업을 과세대상으로 하며, 전기·가스공급업, 생명보험·손해보험사업을 하는 법인에 있어서는 각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기타법인은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수입금액 과세법인의 세율은 1.5%이며 소득금액 과세법인의 세율은 <표 15>와 같다.

**<표 15> 일본의 소득금액 과세법인 세율**

(단위 : %)

연간소득	일반법인	특정의료법인
350만엔 이하	6	6
350만~700만엔 이하	9	8
700만엔 초과	12	8

주 : 사회보험진료 보수에 대해서는 비과세

자료 : 대장성.

1948년에 영업세가 사업세로 바뀌면서 그동안 비과세되었던 의료업이 일시 부과대상이 되었으나, 1952년에 공공성과 비영리성이라는 관점에서 ① 사회보험진료 보수에 관한 사업세의 비과세 ② 의료법인의 특별법인으로서의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사회보험진료 보수 이외의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세가 부과된다. 그 밖에 주민세는 소득세, 법인세와 같은 조치를 받고 있으며 구급의료용 기기 등에 대한 고정자산세는 취득 후 3년

간 6분의 1을 경감하고있다. 병원용도로 제공된 토지에는 특별토지보유세를 비과세하며 병원, 진료소 등에 대한 사업소세(목적세이며 시정촌세)<sup>5)</sup>를 비과세하고 있다.

### 3. 대만

1993년 말 대만의 의료기관수는 1만 5,062개로서 1만 4,252개의 의원과 810개의 병원이 있다. 지방 및 지방자치병원, 현과 시병원, 의과대학병원, 보훈병원 및 의원, 정부기관병원, 군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이 병원 94개, 의원 485개를 합하여 총 579개로서 전체 의료기관의 3.8%에 불과한 반면 민간의료기관은 사립의과대학병원, 재단법인, 협동병원 및 의원, 사립의원, 그 밖에 개인소유병원 등 병원 716개, 의원 1만 3,767개를 합하여 총 1만 4,483개로서 전체 의료기관의 9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의 대부분은 비영리기관이다. 병상수를 보면 전체 10만 570개이고, 이 중 37.9%가 공공부문이고 나머지 62.1%는 민간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립의료기관 및 재단법인 의료기관의 의료사업은 중앙 위생부의 감독을 받으며 연 의료수입의 5% 이상을 연구발전, 인재육성, 건강교육, 의료구제, 사회의료서비스 및 기타 사회서비스 사업에 지출해야 한다.

의료기관 설립은 위생성(National Health Dept.)에 등록 신청하고, 국세청에서 면세기관 지정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한다. 비과세 의료법인은 소득의 80%는 설립목적에 사용해야 하므로 20%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개인병원에는 소득에 대한 기준율제도가 있다.

〈표 16〉에서와 같이 개인개업의에 대해서는 20% 공제 후의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반면에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세(profit-seeking enterprise income tax)가 면제되고 있다. 대만에서는 의료법인 이외에 교육이나 문화기관, 공공복지 기관 등에 대해서 사업소득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표 16〉 대만의 의료기관별 사업소득세

	개인개업의	의료법인
과세여부	과세	사업소득세(profit-seeking enterprise income tax) 비과세
적용세율	20% 공제 후에 세금적용	-

자료 : 연세대학교 보건과학연구소, 『병원경영 개선을 위한 정부지원책의 국제비교연구』, 1996.

5) 사업소세란 도시환경의 정비 및 개선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세로서 사업소 등에서 사업을 행하는 자 또는 사업소용 건물의 건축주가 납세의무자이며 자산할과 종업원할의 합에 의해 과세된다. 자산할의 경우 사업소의 연면적 1㎡당 600엔, 종업원할의 경우 종업원 총급여의 0.25%의 세율이 적용되며, 신·증설에 따른 사업소세는 신·증설사업소 연면적 1㎡당 6천엔이다.

미국은 전국민의료보험 체계를 채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적의료보험제도로는 메디케어밖에 없고 그 밖에 부조방식으로서 메디케이드가 있다. 1995년 현재 공적의료보장의 적용을 받는 인구는 전인구의 27.8%인 총 7,500만명 정도이다.

대만의 기부금제도는 기부자에 대해 개인은 과세소득의 20%를 한도로, 법인은 과세소득의 10%를 한도로 소득공제하고 있다.

#### 4. 미국

미국은 전국민의료보험 체계를 채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적의료보험제도로는 메디케어(medicare)밖에 없고 그 밖에 부조방식으로서 메디케이드(medicaid)가 있다.

미국의 의료보장 적용인구를 보면 <표 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5년 현재 메디케어 적용인구가 약 3,800만명, 메디케이드 적용인구가 약 3,700만명으로 공적의료보장의 적용을 받는 인구는 전인구의 27.8%인 총 7,500만명 정도이다. 그 밖에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의료보장을 받는 인구는 전인구의 57.4%인 1억 5,500만명이며 공적의료보장 및 민간의료보험 등에 가입되지 않은 미보험인구도 전인구의 14.8%인 4천만명이나 된다.

공적의료보장인 메디케어의 가입자격은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sup>6)</sup> 메디케어 가입인구의 약 15%는 관리의료계획(HMO: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 Managed Care Plans 등 민간 의료보험)에도 가입하고 있다.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의료보호 프로그램이다. 메디케이드 가입인구 중에서는 약 40%인 1,480만명이 관리의료계획에 가입하고 있다. 주별로 소득기준이 다르며 65세 이상, 맹인, 무능력자, 부양자녀를 둔 가정인 경우에 메디케이드 수혜대상이 되는데 레이건 행정부 이래 메디케이드의 수혜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메디케어에 가입하고 있는 고령자는 미국 전체 고령자의 95% 이상인 3천만명 이상이 된다<sup>7)</sup>. 적용대상 인구로 보면 메디케어가 포괄적인 보험이라고 할 수 있으나 급여내용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메디케어에 가입한 고령자 중에서 3분의 1이 개인적으로 민간보험에도 가입하고 있다.

메디케어는 병원보험인 Part A와 의사진료보험인 Part B 등 2개의 보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6)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65세 이상이 되면 의료보장을 받게 된다.

7) 1992년 7월 현재 미국의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는 약 3,228만 5천명이었다. 그리고 메디케어 Part A에 가입한 65세 이상의 고령자수는 약 3,158만 5천명이었다.

〈표 17〉 미국의 의료보장 적용 현황

(단위 : 백만명, %)

	적용인구	비고
총인구	270 (100.0)	
합계	302 (111.9)	
공적보장	75 ( 27.8)	
메디케어	38 ( 14.1)	근로자, 사업주, 자영업자
메디케이드	37 ( 13.7)	65세 이상 노인, 맹인, 무능력자, 장애자 자녀 부양가정
군관련		
민간보험	187 ( 69.3)	
기업제공	155 ( 57.4)	영리보험회사에 직장에서 가입
기타 <sup>1)</sup>	32 ( 11.9)	Blue Cross와 Blue Shield 등 비영리단체, HMO, PPO 등에 지역에서 가입
미가입	40 ( 14.8)	

주 : 1) 그 밖에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주로 환자부담분을 지급하는 medi-gap, 20명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는 기업은 퇴직자가 희망할 경우 계속 가입해야 하는 단체보험, 특정병에 관한 보험, 장기요양보험 등도 포함됨.

PPO는 Preferred Provider's Organization의 약자임.

자료 : 미국 후생성 내부자료.

Part A는 강제가입 사회보험이지만 Part B는 임의가입이고 Part A에 의해서 보장되지 않는 의사의 진찰 등 의료서비스를 보충적으로 급여하고 있다. Part A의 피보험자는 피용자, 사업주, 자영업자 등 현역 근로세대이며 65세가 되어 소정의 보험료 납부월수를 채우면 수급자격을 갖게 된다. Part B는 Part A의 수급자격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있으며 가입자는 매월 보험료를 지불하게 된다. Part B는 보험료가 비교적 낮기 때문에 사실상 대부분의 고령자가 Part B에도 가입하고 있다.

미국병원협회(American Hospital Association)에 등록된 전체 의료기관수는 〈표 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6년 현재 6,291개이며 이 중 연방병원이 299개로 전체의 4.8%이고 나머지 95.2%는 주정부 또는 민간병원들이다. 비연방병원에는 정신병원, 호흡기병원, 장기병원 등 특수병원이 12.2%를, 병원단체(hospital units of institutions)와 지역병원(communitiy hospitals) 등 단기병원이 83.0%를 차지하고 있다.

의료기관에 대한 과세는 기본적으로 일반 영리법인의 경우와 다르지 않고 비영리인 자선(charitable way)으로 운영되는 의료기관과 연방과 주정부에 의해 운영되는 의료기관은 비과세

의료기관이 법인자격으로 비영리를 선택하여 비과세를 신청하면 IRS가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IRS에서 비영리 의료법인의 요건으로 제시하는 것은 자선목적, 이익의 분배 불가능, 로비활동의 금지 그리고 정치참여 금지 등이다.

〈표 18〉 미국의 의료기관 현황<sup>1)</sup>

(단위 : 개, %)

	병원수	병상수
총계	6,291 (100.0)	1,080,601 (100.0)
연방 <sup>2)</sup>	299 ( 4.8)	77,079 ( 7.1)
비연방	5,992 ( 95.2)	1,003,522( 92.9)
정신병원 등	657 ( 10.4)	110,257 ( 10.2)
호흡기병원 등	3 ( 0.0)	214 ( 0.0)
장기병원	112 ( 1.8)	18,765 ( 1.7)
단기병원	5,220 ( 83.0)	874,286 ( 80.9)
병원단체(hospital units of institutions)	26 ( 0.4)	1,550 ( 0.1)
지역병원(communitary hospitals)	5,194 ( 82.6)	872,736 ( 80.8)
민간비영리 <sup>3)</sup>	3,092 ( 49.1)	609,729 ( 56.4)
영리 <sup>4)</sup>	752 ( 12.0)	105,737 ( 9.8)
자치정부 <sup>5)</sup>	1,350 ( 21.5)	157,270 ( 14.6)

주 : 1) 1996년 7월 현재 미국병원협회 등록병원 기준임.

2) 각군 병원 및 public health service, 전역군인 등

3) church-operated, 비영리 corporation 등

4) individual, partnership, corporation 등

5) state, county, city, city-county, hospital district or authority 등

자료 : American Hospital Association, *Hospital Statistics*, 1996.

된다. 의료기관이 법인자격으로 비영리를 선택하여 비과세를 신청하면 IRS가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IRS에서 비영리 의료법인의 요건으로 제시하는 것은 자선목적, 이익의 분배 불가능, 로비활동의 금지 그리고 정치참여 금지 등이다. IRS에 의해 자선단체로 판정되면 기부금을 받을 수 있고 기부자도 기부금에 대해 면세된다.

병원의 유지, 서비스의 제공, 장비 목적을 위한 준비금(reserve funds)이 인정되며, 병원에만 적용되는 특별한 공제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연구비(reserch grants)에 대해서는 공제

되는 경우도 있다.

## V. 의료기관 관련세제의 개선방향

### 1. 수익사업의 범위

현행 의료기관 관련세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법인세법 제1조(납세의무)에 비영리 내국법인의 의료업을 수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의료수익을 일반 의료사업에 다시 재투자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적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비영리 내국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일정 범위 안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고유목적사업은 당해 비영리 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무상진료 등 자선사업을 제외한 수익사업으로 규정된 일반 의료행위를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적립할 수 없다.

현행 세제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의료사업으로부터의 수익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통하여 의료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한 가지 대안으로 순수의료 목적에 국한하여 그 비용의 일정 비율만큼만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비용의 일정 비율만을 손금산입함으로써 세제상 혜택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는 불필요한 투자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 2. 설립근거에 따른 세제상 차등

의료기관은 국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동일한 사업내용을 가지면서도 의료기관 등록시에 등록된 부처 또는 설립 당시의 사업성격 등의 차이에 의하여 세법상 지위가 크게 달라지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단체의 설립 형태에 따라 또는 등록부처에 따라 세제상 커다란 차별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적합한 이유를 찾을 수가 없으며, 따라서 의료사업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주 고유목적사업인 경우에는 단체의 형태에 차이가 있어도 동등한 세제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안일 것이다.

의료기관은 국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동일한 사업내용을 가지면서도 의료기관 등록시에 등록된 부처 또는 설립 당시의 사업성격 등의 차이에 의하여 세법상 지위가 크게 달라지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 3. 세법간 비영리법인의 범위

비영리법인의 범위가 세법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동일한 법인에 대해 서로 다른 세제가 적용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법인세법 제1조(납세의무)에 의하면 비영리 내국법인은 그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도 불구하고 수익사업인 의료업에 대하여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 2(수익사업의 범위)에 의하면 법인세법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법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과대학 등의 부속병원이 경영하는 의료업,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경영하는 의료업 등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된다. 한편 시행령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에서는 교육법에 의한 각종 학교를 경영하는 자 및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한 자 등을 비영리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세법, 지방세법 등에서 정하는 비영리법인의 범위가 서로 상이한 실정이다. 물론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모든 세목에서 동일한 대상에 대해 동일한 세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일관성이 결여된 부분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 4. 영리 및 비영리의 선택

미국, 일본, 대만의 경우 비영리·영리의 선택이 허용되며 영리법인의 경우 일반 영리기업과 유사한 세제가 적용되는 반면 비영리 의료법인의 경우 확실한 세제상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의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이지만 세법상 일본의 영리병원인 의료법인과 같은 지위에 있으면서도 분배를 하지 못하고 청산시 국가귀속이라는 이중의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외국과 같이 영리 의료법인의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영리를 선택한 의료기관과 비영리를 선택한 의료기관간에 차별적인 정책의 선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된다.

### 5. 기부금제도의 보안

1996년 말 세법개정에 의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의 지정기부금 용도를 1997년 1월 1일 지출분부터 고유목적사업비로 통일하였다. 고유목적사업이란 당해 단체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상 설립목적을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법인세법상 수익사업(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이외의 사업이다. 의료기관의 고유목적사업은 의료기관의 형태에 따라 다르지만 의료업은 수익사업으로 규정되고 있다. 따라서 사단, 재단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이 수행하는 수익사업인 의료업은 고유목적사업에서 제외되어 세법개정 이전에 누리던 지정기부금 수혜 대상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그만큼의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효과는 비영리단체의 사업내용과 고유목적사업과의 괴리에 기인하는 것으로 타비영리 분야와는 달리 의료분야에서는 심각한 문제발생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6. 병원경영 성과의 투명성 제고

타분야의 비영리법인과 마찬가지로 의료법인도 본 연구에서 제시한 추가적인 세제상의 혜택이 주어질 경우 운영의 투명성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그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결산재무제표 공표 또는 외부감사의 의무화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KDI~~

# 비크리교수의 세제개혁안 : 세제의 단순화, 누진화 그리고 그 공정한 설계



노 영 훈 /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1. 서론

지난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윌리엄 비크리(William Vickrey)교수는 역대의 어느 경제학상 수상자보다도 조세분야 연구에 학문적 공헌이 많은 학자이다. 여기에는 그럴 만한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노벨상 수상자 선정 이유에서도 발표되었지만 그는 평생 비대칭정보하에서 경제주체의 인센티브 추구행위를 주된 연구대상으로 삼았는데, 조세는 그 대표적인 소분야(sub-field)에 해당하므로 자연스럽게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이다. 또한 연구조교 및 학위논문 지도를 받는 과정에서부터 인연을 맺게 된 같은 콜럼비아대학교의 칼 슈프(Carl S. Shoup)교수와 함께 전후 일본을 비롯한 많은 나라의 조세개혁 작업에 참여하는 등 조세관련 연구용역 수행을 통해 실천적인 세제개혁 방안을 제시한 경험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조세분야 연구에 깊은 족적을 남긴 한 경제학자가 반세기 이상의 세월 동안 조세정책에 대해 주장한 내용은 우리나라에 그다지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 바람직한 조세제도에 대한 그의 생각은 1947년 발간된 박사학위 논문 *Agenda for Progressive Taxation* 에서 시작하여 여

\* 본고는 1996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윌리엄 비크리교수가 1996년 10월 8일 수상발표 3일 만에 사망하기 직전 Tax Notes 지어 특별기고 형태로 보낸 논문인 "Simplification, Progression, and a Level Playing Field"를 바탕으로 그의 세제개혁안을 정리한 것이다.

러 학술저널 및 연구보고서에서 나타나는데, 그 완결판에 해당하는것이 본고에서 요약·정리하는 논문인 "Simplification, Progression, and a Level Playing Field"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는 윌리엄 비크리교수가 미국을 주된 대상으로 제시한 세계개혁안의 중심내용을 정리한 후, 우리나라의 세계개혁 방안 수립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한 마디로 그의 세계개혁 기본방향은, 소수의 납세자만을 겨냥하여 마련된 수많은 세법규정들을 없애면서 여전히 누진적이고 보다 단순한 조세체계를 설계하자는 데 있다. 즉 그는 조세체계에 대해 충분한 사전연구를 한 후 원칙에 입각한 조세제도 개혁을 추진할 경우, 누진도를 크게 희생하지 않으면서도 실제에 있어서는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거론되고 있는 어떠한 형태의 단일비례세(flat tax) 방안보다도 훨씬 더 단순성과 중립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특정 유권자 계층에게 유리한 각종 복잡한 조항들을 없애고, 특정 경제활동을 장려하는 수단으로 소득세제를 이용하는 등의 시도를 삼가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들을 훨씬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보다 효과적이고 투명한 방법들이 항상 존재하므로, 정부는 정부예산이 얼마나 크지를 나타내지 않으려고 예산에 포함되지 않는 조세지출 등을 통해 조작하기보다는 직접적이고도 명시적으로 세계개혁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II. 소득세(income tax)

소득세를 단일비례세율의 보통세(flat-rate normal tax)와 누진부가세(progressive surtax)로 이원화한다면, 조세의 단순화와 누진성 유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추구하는 기본구조를 갖출 수 있다. 이를테면 단일비례세율의 보통세는 소득의 원천단계에서의 과표에 근거하여 부과·징수하고, 이를 보완하는 성격의(고 면세점의) 누진부가세는 소수의 고소득 납세의 무자가 거주지주의 원칙(residence principle)에 따라 제출한 신고서에 기초하여 징수한다. 이렇게 되면 결국 1934년 이전 보통세와 부가세로 구분되어 있던 미국연방세 체계로 복귀하는 것이 되며, 1972/73 회계연도 이전의 영국 소득세 체계와 많은 점에서 유사해진다. 소득을 원천지분과 귀속지분으로 명확하게 분리할 경우, 현행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제도가 갖고 있는 수많은 비정상성, 임의적 구분, 왜곡적 유인, 복잡성 등을 피할 수 있게 된다.

비크리교수는 조세체계에 대해 충분한 사전연구를 한 후 원칙에 입각한 조세제도 개혁을 추진할 경우, 누진도를 크게 희생하지 않으면서도 실제에 있어서는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거론되고 있는 어떠한 형태의 단일비례세 방안보다도 훨씬 더 단순성과 중립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1. 보통세(normal tax)

단일비례세율 구조의 보통세는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금 그리고 수취자에게 귀속된다고 추정 가능한 모든 지급에 부과되며 원천징수된다. 근로소득의 경우 피고용자가 고용주에게 신고하는 인적공제 및 부양자녀(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원천징수 조정이 이루어지므로, 대다수의 중·저소득 근로소득자들은 고용주에 대한 공제관련 신고 이외에는 별다른 소득세 신고가 필요없게 된다. 고용주에 의한 원천징수는 영국식 원천납부(pay-as-you-earn)방식처럼 일주일, 이주일, 또는 한달 간격으로 매년 누적적으로 행해질 수 있으며, 사회보장번호로 확인되는 때 피고용자 별로 허용한 공제액을 과세당국(IRS)에 보고토록 하여 당해연도에 2인 이상의 고용주가 있었던 피고용자에 대해 과도한 인적공제가 이루어졌는지를 세무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근로소득은 인적공제액 수준에 미달하지만 다른 종류의 소득은 상당한 규모에 달하여 과도하게 원천징수된 경우, 납세자는 소득세 신고를 통해 초과 원천징수된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 주된 소득원(천)이 비근로소득인 납세자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시간을 절약하여 생활비를 적게 쓸 수 있으므로 인적공제액을 보다 낮게 인정하여 과세당국이 처리해야 할 신고서 수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소액의 비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에 대해서는 환급을 불허하여, 신고서의 수를 줄일 수도 있다.

보통세의 세율은 해마다 자주 변경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이상적인데 왜냐하면 세율이 해마다 틀릴 경우에는 주어진 소득에 어떠한 세율을 적용할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정수요의 변화는, 보통세의 세율을 변화시키기보다는 인적공제액과 누진부가세의 변경을 통해 조정하는 방식이 보다 바람직하다.

## 2. 누적부과 방식의 원천징수(cumulative assessment of withholding tax)

법인 및 기타 기업들은 피용자의 인적공제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실제 소득지급액과 (이미 보통세가 원천징수된) 배당, 이자, 임대료 등의 수취에 대해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할 뿐만 아니라, 사내유보와 이윤의 발생에 대해서도 원천세를 납부한다. 이는 회계상 소득형 부가가치세와 매우 유사한 것으로, 주된 차이점은 피용자 및 일부 자영업자에 대해 인적공제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이다.

누적과표에 근거하여 원천징수세를 부과하게 되면 사업자들은 부기 관행상의 제약으로 인한 대부분의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므로 조세의 중립성, 공정성, 단순성을 제고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누적부과 방식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sup>1)</sup>. 납부세액은 이자가 발생하는 계좌의 예금으로 취급되고, 이 이자소득은 당해연도 과세소득과 함께 전년도 누적과표에 합산되어 새로운 누적과표가 형성되며 여기에 누적기간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하면 총납세액이 계산된다. 이 총납세액에서 지난해까지의 누적납세액을 공제하면 당해연도에 납부할 세액을 구할 수 있다.

청산이나 소유권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 자본이득과 손실을 포함하여 모든 소득을 계좌에 포함시키면 과세기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때 요구되는 것은 모든 수입이 소득으로 기록되거나 또는 자산의 취득원가의 축소에 적용됨으로써 마이너스 과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소득의 실현이나 보고의 연기는 일정률의 이자를 지급하고 납세액을 차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감가상각률이나 지출, 상환 그리고 기타 그와 유사한 것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필요하지 않으며 이때의 이자율은 재정정책의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낮은 경상소득은 미래의 높은 잠재 납세채무액을 의미하므로 개인의 지나친 신용확장에 제동을 거는 장치로 작동할 수 있다.

만약 해마다 보통세의 세율에 변화가 생긴다면 합병이나 분할의 시기나 기타 사항의 결정에 영향을 줄 여지는 여전히 클 것이다. 그러나 기업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왜곡효과는 현재 제안되고 있는 단일비례세보다는 작을 것이다.

## 3. 누진부가세(surtax)

납세자의 10% 이하만을 신고대상으로 국한하는 수준으로 인적공제액을 설정할 경우, 이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과세되므로 IRS가 처리해야 할 총신고서수는 60~80%까지

1) 누적부과 방식의 착안은 비크리교수가 누진소득세의 전제조건인 안정적 소득흐름을 과세표준으로 파악하기 위해 1939년 *JPE* 에 게재된 논문에서 최초로 소개한 누적소득 평균화(cumulative income averaging)의 개념에서부터 출발한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Vickrey, William S., "Averaging of Income for Income Tax Purposes," *Journal of Public Economy*, Vol. 47, 1939, pp. 379~397을 참조할 것.

누적과표에 근거하여 원천징수세를 부과하게 되면 사업자들은 부가 관행상의 제약으로 인한 대부분의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므로 조세의 중립성, 공평성, 단순성을 제고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줄일 수 있다.

보통세로 원천징수되는 소득과 납세자가 보통세로 자진신고 납부하는 소득간에 발생하는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부가세 과표 산정시 기납부 원천징수된 보통세액을 공제해 주어야 한다. 이것은 사실상 영국 소득세제하의 그로스업(grossing-up)방식에 상응하는 것이나, 행정적으로 보다 간편하고 순진한 납세자나 누진도의 급격화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보다 매력적이어서 실제 누진도를 보기보다 덜 급격하게 만드는 장점이 있다.

조세의 단순화를 위해서 부가세도 누적부과 방식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는 일정 기산일 이후에 신고된 소득누적액에 대해 누적화기간에 해당하는 세액표에 따라 부과되며 이때 세액표상에 몇 개의 과표계급이 존재하는지는 별 상관없다. 왜냐하면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과표계급이 2단계이든 50단계이든지 세액계산을 위해 필요한 시간은 마찬가지로여서 세율단계수와 복잡성과는 별 관련성이 없기 때문이다. 즉 납세자는 그의 누적기산연도에 해당하는 세액표에서 그의 누적소득액이 속하는 과표구간을 찾아 그 구간하한에 해당하는 세액과 구간 내 소득에 적용할 세율을 구할 것이므로, 단순화를 위해서는 과표계급수가 적어야 한다는 것은 사실 상위 소득계층에 대한 누진도를 억제하기 위한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어떤 특정의 원칙에 집착하여 세액표를 작성할 필요는 없으나, 납세자가 어떠한 소득평균화 기간을 선택하든간에 납세자간 세부담차별이 최소화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이를 위한 한 가지 방법은 다양한 세율표를 누적소득구간별 납세자의 과표에 적용하여 세액의 현재가치를 계산하는 것으로, 현행의 각종 단년도 세율표에 따라 다양한 소득수준에 있는 일련의 대표적 납세자가 납부하게 되는 연간 과세액의 현재가치를 계산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누적기간중 소득은 일정패턴에 따라 변하기만 하면 되지 연속적일 필요도 없고, 소득평균화기간이 짧은 납세자에게 불리하지만 않으면 어떤 불규칙성을 가질 수도 있다.

심지어 납세자의 나이별로 소득의 변화패턴이 달라지는 경우도 상정해 볼 수 있는데, 단지 이 경우 수많은 세율표가 필요하게 되는 복잡성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나이와 누적기간에 해당하는 세율표를 사용하기만 하면 된다. 과세당국은 일반 납세자들에게 적절한 세율표를 발송하는 업무를 담당해야 할 수도 있다.

효과적인 소득평균화 작업은 급격한 소득증가의 경우뿐만 아니라, 운동선수, 작가 그리고 고액의 임시소득을 누리다가 낮은 수준으로 떨어져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여태까지의 소득평균화 방식들은 대체로 그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이러한 방식은 여태까지 입법화된 몇 가지 평균화 방식들보다 훨씬 계산이 용이하여 모든 부가세 신고서식상에 요구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하다.

신고서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낮은 세율과 낮은 면세점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의 인적공제와, 예컨대 상당히 높은 15~20%의 세율을 갖는 부가세 세율구조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면세점 이상으로 얼마나 많은 과표계급과 얼마나 많은 세율차등화를 들지는 아무런 문제가 안된다.

신고서 처리를 단순화하기 위해서 매 신고서마다 납세자번호, 누적시작연도, 누적소득, 누적세액을 기입한 쿠폰을 신고서에 첨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과세당국은 쿠폰을 확인한 후에 다음해 신고서에 참고할 수 있도록 납세자에게 발송함으로써 과거 신고서를 상호대사할 필요성을 줄일 수 있고, 쿠폰에 다음해의 소득기입 및 세액산출 공간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자료복사의 필요성이나 오기 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 방식을 택할 경우 조세의 단순화를 가져오는 가장 큰 요인은, 납세자의 궁극적인 세부담이 소득신고 시기에 상관없이 결정된다는 데 있다. 기업이 납부하는 원천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개인납세자는 ① 누락 또는 중복계산만 없고 ② 증여·상속·자선단체 기부 또는 납세자의 거주인 지위변경과 같은 특수관계간 이전거래(non-arm's-length transfer)시 이전의 모든 발생이득이 세무회계 처리되지만 한다면, 자유로이 감가상각·부채상환·경비처리 또는 사업양도를 할 수 있는 것이다. 혼인상태의 변화시기에도 발생이득의 회계처리를 위해 시장평가가 필요할 것이나 조세협력비용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고, 그 결과 현행 세법전(IRC)의 3분의 2 가량이 불필요하게 될 것이다.

소득신고의 연기와 이에 따른 납세이연은 결국 상황에 따라 변경할 수 있는 이자율을 지불하고 재정으로부터 차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인 셈이 되어, 미국연방준비이사회(FRB)는 독립적인 별개의 재정정책 수단을 추가적으로 보유하게 된다. 이 제도가 그렇다고 방만한 신용팽창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인데 왜냐하면 현재의 낮은 소득신고는 미래의 높은 납세채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누적부과 방식에 의한 부가세가 도입된다면, 개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로서의 보통세 이외에는 추가로 법인소득세를 부과할 정당성이 없게 된다. 추가적인 법인소득세 부과는 구매력의 흐름에서 소득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자기자본 투자가 넘어야 하는 추가적인 장애물로서 작용한다는 점에서 경제에 이중의 치명타를 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위험성이 높은 사업과 상대적으로 안전한 투자사업간에 보다 균형화가 이루어져서 이윤을 배당하지 않고 축적하는 것을 특별히 선호하게 하거나 기피하게 할 조세유인이 거의 없게 된다. 즉 유보이윤을 늘리거나 줄일 유인도 없고, 자본이득의 실현시기를 변경할 세무이익상의 필요성도 없게 된다.

#### 4. 법인세(corporate tax)

누적부과 방식에 의한 부가세가 도입된다면, 개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로서의 보통세 이외에는 추가로 법인소득세를 부과할 정당성이 없게 된다. 추가적인 법인소득세 부과는 구매력의 흐름에서 소득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자기자본 투자가 극복해야 하는 추가적인 장애물로서 작용한다는 점에서 경제에 이중의 치명타를 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만일 법인세를 해당 개인소득 과세구간에 대한 세수중립적 대체세라고 본다면, 그것은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고 고용을 감소시켜 필연적으로 근로소득에 대한 부담이 될 것이다. 한편 국내총생산(GDP)과 고용수준은 불변이라고 가정한다면, 그것은 투자의 감소, 노동생산성의 감소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미래의 임금을 감소시킬 것이다. 결국 이상의 두 상황 중 어떤 경우에도 법인세가 미치는 궁극적인 충격은 일반인의 인식과는 달리 근로소득에 가해질 것이다.

또한 법인세는 세법을 복잡하게 만들고 자기자본을 필요로 하는 투자보다도 차입에 의한 투자를 선호하게 한다. 자기자본이 부채로 전환되면서 얻게 되는 잠재적인 세금절약의 이득으로 사회적으로 순재산가치가 별로 없는 기업들에 대한 조직재편, 인수, 합병 등을 원활하게 하지만, 다른 한편 과소자본(thin equities)을 선호하게 함으로써 도산을 유발할 수 있다.

누적부과제도가 없는 경우 기업의 사내유보 이윤에 대한 조세라는 형태로 과세할 근거를 찾을 수 있는데, 이는 개인부가세의 납부연기에 대한 이자비용만큼을 과세하는 것이다. 1930년대에 잘못 설계되어 시행된 사내유보 이윤세보다는, 이를테면 부가세 최고세율 40%에 대한 5% 이

자 수준인 연간 2%의 세율로 법인의 누적 미분배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이다. 보통세는 미분배 사내유보 이윤에 대하여 매기마다 징수되므로 부가세만이 관련된다. 그러나 어떤 주주들은 매각을 통한 자본이득 형태로 소득을 실현할 수 있는데 그들에게 적용되는 한계소득세율은 크게 차이가 나므로 이것도 결국 대략적인 상쇄장치에 불과하다. 어떤 경우에는 경영진이 자신들의 권한을 확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경제적일 정도로 이윤을 사내유보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데 이를 억제하는 유인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보다 강한 상쇄장치도 용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부가세를 누적부과하게 되면 이러한 모든 문제를 깔끔히 해결할 수 있다.

### 5. 자본이득(capital gains)

누적부과를 통해 실현할 수 있는 공정성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시 실현된 귀속자본이득까지 포함한 모든 자본이득을 다른 소득과 똑같이 취급하는 경우에만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누적부과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현된 모든 자본이득을 다른 소득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과세소득화하더라도 자본이득이 조세측면에서 보다 유리하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중요한 예로, 자산소유자의 사망시 그동안 발생한 자본이득이 비과세되어 과세베이스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자산의 세대간 이전시 발생이득을 완전히 과세한다 하더라도 발생시점부터 실현시점까지의 가치변동분에 대한 세금납부를 연기할 수 있는 이득이 여전히 존재하게 되고, 이는 납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동 기간중 무이자로 정부가 납세자에게 대출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하는 방법으로, 자산 보유기간에 따라 일정 비율로 신고자본이득을 증가시키는 일종의 부가세(surcharge)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일련의 교환·합병·배당재투자 등이 있는 후에 자산 보유기간을 결정하려면 복잡한 규정을 제정해야 하므로, 완전과세를 위한 정치적 어려움까지도 감안할 때 아마 이 방식을 추구할 가치가 없을지도 모른다. 반면 자본이득에 대한 특혜조치 폐지는 세법규정의 복잡성을 크게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자본이득에 관한 특별조항들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만 위험성이 높은 투자를 증진하는 데 총체적으로 보아 얼마나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지 또한 확실하지 않다. 더욱이 무엇을 자본이득으로 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규정은 투자의 사회적 효율성과는 별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미개발 택지에 주로 투자하는 부동산투자신탁으로부터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더라도 반드시 토지공급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또한 자본이득에 대한 세제

원천징수세로서의 역할만을 제외하고는 법인세를 폐지하면서 동시에 자본이득을 타소득과 동일한 과세기준에서 완전과세하는 것이, 투자를 장려하고 조세의 중립성과 단순화를 제고하는 데 보다 도움이 될 것이다.

혜택은 다른 한편으로는 반드시 손실공제에 대한 제한을 수반하게 되는데, 이는 납세자들이 경감과세되는 자본이득을 대상으로 자본손실을 완전 공제할 수 있도록 너무 많은 재량권을 주지 않기 위한 조치로, 결국 심각한 세수결손과 자본시장의 왜곡현상을 낳게 된다. 자본손실에 대한 제한규정은 종종 자본이득에 대한 특혜조항보다도 더 심각한 영향을 미쳐 과세당국을 마치 납세자와 동전 던지기 게임을 하는 입장에 놓이게 한다. 이러한 상황하에서는 납세자가 위험한 투자 사업에 오히려 관심을 덜 갖게 하는 효과가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누적부과 방식하에서는 대조적으로 자본손실이 조세를 경감시키는 한계세율이 자본이득에 대한 한계세율과 거의 같은 수준 일 것이다.

어쨌든 현재 시작한 창업투자사업으로부터 몇 년 후 실현되는 자본이득이 경감세율을 적용받을 것이라는 전망은 매우 불확실한 것이다. 비록 현재 시행되는 우대조치가 개인에 대한 예상 수익률을 증가시키기는 하지만, 이것은 기본적으로 납세자의 부를 증가시켜 시장기능이 작동한 후의 일이다. 왜냐하면 새로운 창업투자용 자본이 얼마나 풍부하게 이용 가능하게 될는지와 같은 전반적 시장조건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법인소득세는 시장에 앞서 영향을 미치는 조세로, 창업투자가 재정적 지원을 받기 위해 극복해야 할 사전적인 장애요인인 것이다. 원천징수세로서의 역할만을 제외하고는 법인세를 폐지하면서 동시에 자본이득을 타소득과 동일한 과세기준에서 완전과세하는 것이, 투자를 장려하고 조세의 중립성과 단순화를 제고하는 데 보다 도움이 될 것이다.

세수중립적인 차원에서 자본이득세의 경감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긍정적이라기보다는 부정적일 것이다. 자본이득세를 다른 조세로 대체하면 소비수요를 줄일 가능성이 높는데, 그것은 자본재매각에 대한 순수익은 지출이 아닌 투자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장수요의 감소는 자본이득에 대한 저세율 적용의 가능성이 제공하는 투자자극 효과보다는 투자를 위축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세율인하는 일회성 자본이득 실현을 양산하여 세수의 단기적 증대효과를 가져올 것이지만 자극효과는 기껏해야 순간에 그칠 것이다.

### III. 주택과 기타 내구소비재

자가주택 소유로부터 발생하는 귀속소득의 비과세는 소득이 현금의 지분을 의미한다는 점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주택을 임대하기보다 소유하도록 권장하는 유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자가주택 소유자가 적은 중심도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며 조세의 누진도를 손상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려는 노력은 별로 인기가 없었다. 한동안 영국은 schedule E를 가지고 있어서 점거여부와 상관없이 순임대가치에 부과하였으나 과세가 자산가치의 변동에 신속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원칙적으로 모든 소비내구재의 총가치를 계산하고 여기에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이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현재의 재산관련 과세에서 보듯이 행정적 비용이 상당하며 결과 또한 만족스럽지 못하다. 주택과 자동차의 경우 상대적으로 부과(assessment)가 용이하고 임대가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어서 조세제도에 의해 소유와 임대간의 선택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여겨진다. 임대료를 증권투자소득으로 지불하는 주택임대자는 증권을 매각하여 주택을 구입함으로써 과세소득이 감소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임대주택의 감소는 노동의 이동성을 감소시키고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 이사를 가야 하는 노동자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게 된다.

재산세 부과율은 행정구역마다 다르고 같은 행정구역 내에서도 자산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일부 주정부 차원에서는 균등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작업이 국가차원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절충안으로서 보통세에서 귀속임대소득을 공제해 주는 대신 부가세 납세자의 경우에는 재산세 과표에 균등화 조정 과표를 더해서 과세하도록 한다. 자동차나 요트의 경우에,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분을 빼 주고 여기에 이자율을 적용함으로써 귀속임대소득을 구할 수 있다.

이중과세라는 비난이 있기는 하나 부가세 과표에서 자가주택에 부과된 재산세를 공제해야 할 정당성은 별로 없다. 귀속소득 전체를 과세하려는 시도는 비록 없더라도 이러한 공제를 없애는 조치는 임대자와 소유자간의 세부담을 균등화시키는 조치 중의 하나이다.

주택저당융자(mortgage)에 대한 이자는 별개의 문제이다. 귀속소득이 소유자의 지분에 대해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주택가격 전체에 대해 부과되는 경우에는 주택저당 이자는 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택저당융자에 대한 이자비용을 공제해 주지 않는 것은 다른 공제가능한 사업용 대출과 주택융자간에 불형평성을 야기시킨다. 다소 이해가 안되는 주장이기는 하나, 이자비용 공제 폐지의 이유는 이러한 제도가 저축을 제약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부채를 갚기 위해

주 및 지방소득세를 연방소득세에서 소득공제해 주는 제도는 지역자치에 대한 부적절한 간섭으로 간주될 수도 있으나 주정부간의 경쟁시 소득세를 사용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방지하며, 조세가 더욱 역진적인 형태로 되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

2차주택저당(second mortgage)을 파는 산업의 성장을 가져온다는 데 있다.

그리고 소비자금융의 이자비용을 지불하는 납세자 단계에서 보통세를 부과하기보다는 주택자금 대출자의 수익으로 보고 과세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재산관련 과세의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형평성과 단순성 측면에서 보다 바른 개편방향으로 여겨진다.

### 1. 주 및 지방소득세 소득공제(deduction of state and local income taxes)

주 및 지방소득세 납부세액을 연방소득세에서 소득공제해 주는 제도는 사정이 다소 다르다. 주어진 연방소득세율표하에서 보면 주 및 지방정부 소득세 납부액의 연방소득세 소득공제는 주 및 지방정부의 최고소득세율의 격차가 심한 상황에서 전반적인 누진도의 감소를 의미하지만, 고소득세를 주에서는 총한계소득세율 과세소득구간이 공제한도액을 넘을 가능성 때문에 연방소득세율의 누진도는 억제될 수 있다. 공제 가능성은 이 효과를 크게 완화한다. 또한 이러한 소득공제는 연방정부가 주소소득세 수준에 따라 주에 지급하는 교부금에 해당한다. 한편으로 이것은 지역자치에 대한 부적절한 간섭으로 볼 수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주정부간 경쟁시 소득세를 사용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방지하며 보다 역진적인 형태의 조세를 사용하지 않도록 자극하는 효과도 있다. 합리적인 절충방안은 부가세 목적으로만 공제를 허용하여, 보통세하에서의 행정적 복잡성은 피하면서도 원하는 대부분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 IV. 주 및 지방세

### 1. 지방재산세

지방정부, 특히 대도시들은 주요 수입원이 재산세인데 지방정부간 경쟁으로 인하여 재산세율

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매우 큰 상황이다. 더욱이 지방정부에 따라서는 균일과세원칙을 위배하며 부패의 온상이 되는 특별조세감면을 남발하면서까지 산업 및 사업투자를 유치하여 주변 지방정부 재정을 파괴화하는 경쟁활동에 적극 가담하여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기도 한다.

경제적으로 보면 재산세는 최악의 조세와 최선의 조세가 결합된 세목이라고 할 수 있다. 최악의 조세라는 것은 부동산 중 개량물(건축물)과 제한적인 동산에 대해 과세된다는 점 때문이며, 최선의 조세라는 것은 토지 또는 부지(site)의 가액에 부과된다는 점 때문이다. 현행의 재산세를 토지의 가치(ad valorem)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토지세인 지가세(land value tax)로 전환시키기만 해도 지방 특히 도시정부의 재정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 토지세는 필지의 용도와 상관없이 표준가치(standard value)로 적절히 부과되기만 하면 사실상 왜곡효과와 초과부담이 없다.

반면, 건물세는 직접적인 건물세액 부담뿐만 아니라, 특히 고가의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현재의 건축비 지출에 추가하여 차입금 이자지급 비용 부담도 상당기간 지속되므로, 누적채무액이 증가하게 되어 건축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이러한 신규 건축활동에 대한 잠재적 부담이 너무 커서 신규건축이 전혀 없게 될 정도에 이른 지역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자체들은 특정 사업자에 대해 특별조세감면을 부여하거나 재산세 과표를 동결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조치들은 후에 법원에 의해 불균일과세에 따른 위헌판정을 받았다. 따라서 재산세의 지가세로의 전환은 이러한 문제를 비차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고, 궁극적으로 도시지역으로 경제활동을 유인함으로써 토지의 순시장가치를 증가시킬 것이다.

사실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방채는 지가세하에서 일종의 지방정부 관할구역 내 소재 토지필지들에 대한 집단저당채권(collective mortgage)이라고 볼 수 있다. 금기(今期)의 지가세를 줄이고 해당금액만큼을 공채로 발행하여 재원을 조달하게 되면 납세자의 현금보유잔고는 증가하는 반면 소유재산의 시장가치는 같은 금액만큼 감소하게 되어 순부는 변하지 않으면서 유동성은 증가하게 된다. 그 결과, 리카르도의 등가성정리(Ricardian equivalence)가 완전하게 작동하게 되어, 케인즈적 재정정책 효과는 그 효과가 별로 크지 않은 유동성 증가요인에 국한된다. 재산이 낮은 가액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면 재원조달 측면에서 보다 유리하다. 만약 공채에 대한 지급이 자가 개별납세자가 고려하는 실효이자율이나 잠재수익률보다 낮아 이자 차이분만큼 납세자가 이득을 볼 수 있다면, 공채를 통한 재원조달이 증가하여 납세자에게 보다 유리할 수 있다.

지가세는 전세계적으로 보아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의 일부지역, 요하네스버그에서 성공

현행의 재산세를 토지의 가치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토지세인 지가세로 전환시키기만 해도 지방 특히 도시정부의 재정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 토지세는 필지의 용도와 상관없이 표준가치로 적절히 부과되기만 하면 사실상 왜곡효과와 초과부담이 없다.

적으로 도입되었고, 미국의 펜실베이니아주에서 확산되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고 있다.

만약 지역 내 자본과 노동의 이동성(mobility)이 높아 이러한 생산요소들에 대한 수익률 균등화가 장기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지주들은 궁극적으로 (도시의) 효율성 증가로 인한 혜택의 대부분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토지소유자들은 이러한 장기적 이득을 충분히 이해하고 지가세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야 할 것이다. 처음에는 주차장과 같은 미개발지에는 불리하고 집중적으로 개발된 토지에는 유리한 것처럼 보이는 세부담 변경이 있을지 모르나, 결국 건물세 폐지로 인해 수익성이 높아진 만큼 미개발지에 대한 개발정도가 증가할 것이므로 장기적 측면에서의 상대적 혜택의 정도는 역전될 것이다. 낮은 수준의 임대료하에서도 개발지의 이윤은 미개발지의 이윤에 미개발 상태에서의 세부담 증가분을 더한 것보다 클 것이다. 한편, 기존의 개발지 소유자의 입장에서 보면, 건물신축으로 인한 경쟁강화로 임대료가 감소할 것이고 이는 세부담 경감을 일부 상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 2. 주정부 토지세

주정부는 일반적으로 지방정부에 비해 토지가치를 창출하거나 지지하는 활동에 덜 관련되어 있으나, 아직도 일부에서는 토지세의 과세베이스를, 토지자체의 비옥도나 부존자원에 기인하는 단위면적당 일정 자연가치 부분과 이를 초과하여 정부의 경제활동에 따라 지방정부행정서비스에의 근접도에 기인하는 도시가치(urban values) 부분으로 양분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전자는 주정부세의 과표로 사용하고 후자는 도시세(urban tax)의 과표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이다.

이러한 과세체계는 비록 장기적·경제적 측면보다는 정치적 이득 측면이 강하나 지방정부의 관할지역간 차별을 완화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코네티컷주의 웨스트포트와 뉴욕주의

마운트키스코 지역의 모든 통근자들이 뉴욕시 도심의 그랜드센트럴역에서 직장까지 건너나 택시를 타지 결코 뉴욕시 지하철을 이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들 지역의 지가가 현재의 수준으로 형성된 데에는 뉴욕시 지하철의 존재가 일부 기여했음을 주의해야 한다.

지가가 원시림 내의 목재, 원유, 가스, 광물층, 광천수 등과 같이 고갈 자연자원에 기초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방식의 접근을 필요로 한다. 만약 현재의 시장가치에 기초하여 매년 과세하게 되면 급속도의 발굴이나 채취를 우대하는 결과가 되어 이를 부추기게 될 것이다. 확실성의 세계에서는 발굴량 한 단위당 얼마씩이라는 방식의 특정 발굴세는, 적절한 이자율로 시간경과에 따라 증가하도록 조정되어 있다면 발굴시점에 관계없이 동일한 현재가치를 갖는 세 부담이 부여되도록 만들 수 있다. 그러나 발굴이 진전될수록 채굴비용이 높아지는 경우 최저수준 이하로 채굴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론적으로는 발견이나 취득시점에 (일)정액을 부과하고 채굴이 진행됨에 따라 이자를 포함하여 납부하게 하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문제는 발견이라고 하는 것이 한 시점에서의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시간이 경과하면서 이루어지는 일종의 비용을 수반하는 과정이며 종종 더 이상의 개발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때까지 지속되기도 한다는 점이다. 만약 그러한 자원을 조세수입원으로 삼고자 한다면 어느 정도의 효율성 측면의 희생은 감수해야만 한다.

어떤 형태의 조세이건간에 그 조세수입이 국가나 (UN이나 국제기관 등을 통해) 전인류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부존자원이 소재한 특정 지방정부에 귀속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기본적인 문제가 존재한다. 특히 넓은 의미의 공해상 자원(심해자원)을 세원으로 하는 조세수입의 경우 그러한 문제가 심각하다.

행정서비스가 지가에 미치는 효과와 건물세의 폐지를 감안한 적정세율의 토지과세가, 혼잡통행료 및 주차료 징수와 병행하여 시행된다면 지방정부 재정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헨리 조지 추종자들의 토지단일세에 대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같은 논리가 주정부수준에서도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여전히 다른 조세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3. 소득세(state income tax)

이론적으로는 연방세에 주정부 소득세를 부가하는 것에 반대하는 견해는 거의 없다. 다만 인구이동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어느 정도의 누진도로 부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이론적으로는 연방세에 주정부 소득세를 부가하는 것에 반대하는 견해가 거의 없으나 다만 인구이동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어느 정도의 누진도로 부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다.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는 연방세를 원천징수할 때 주별 세율을 적용하여 함께 원천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많다. 주간 통근자(interstate commuter)들과 여러 주에 직업이 있는 사람들은 원천별로 명확히 소득세(normal tax)를 정의하기가 어렵다.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는 연방세를 원천징수할 때 주별 세율을 적용하여 함께 원천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다른 방법은 거주지별로 부과된 연방보통세에 기초하여 주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것은 고용주들이 원천세를 지불하는 부담을 져야 가능하다. 반면 거주에 대한 부가세 문제는 상대적으로 소득원천에 대한 것보다 접근하기 쉽다.

보통세의 경우 소득원천을 주별로 분류하는 것은 연방세의 경우에서보다 어려운 일이다. 매사추세츠방식의 수정은 회사가동의 소규모 변화에도 소득분배의 균형을 크게 변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므로 잘못된 것이었다.

#### 4. 매상세(sales taxes), 부가가치세(VATs), 보통소득세(normal income tax)

대다수의 주들은 매상세에 의존하고 있는데 종종 부가가치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사업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보통세는 부가가치세와 매우 비슷한데 보통세의 경우 인적공제가 허용된다는 점이 다르다. 두 세목간의 유사점 때문에 매상세와 관련된 별도의 세정비용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다른 주에 통근하는 거주자가 많은 주의 경우에는 한 가지 어려움이 있다. 원천지 원칙에 충실할 경우, 그러한 주들은 세수감소 문제에 봉착한다. 거주지 원칙에 따를 경우에는 사업주가 피고용자의 거주지에 따라 분리납부해야 하므로 납세순응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

만약 통근자가 거주지에 신고하고 납세하지만 연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은 경우에 원천지 주 정부가 비거주자의 소득을 면세하지 않으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매상세로 복귀하게 되면 이중과세 문제가 눈에 덜 띄게 될 뿐이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통근자의 소득이 취득단계에서 한번 과세되고 처분단계에서 다시 과세되기 때문이다. 대부분

의 주정부 지출이 발생소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가정하에서 원천지 원칙에 의거하여 과세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몇몇 주는 기존의 소득세에 반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 때문에 보통세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다. 또는 변형된 부가가치세를 도입할 수도 있다. 어느 경우에도 플로리다처럼 퇴직자가 많은 주들은 상대적으로 매상세에 비해 그러한 조세들을 선호한다.

고소득 퇴직자에게는 부가세가 반대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 V. 결론 및 시사점

이상에서 요약·정리한 비크리교수의 조세개혁안은, 소득세법을 중심으로 미국의 세법이 간헐적으로 단순화를 향해 발전해 오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복잡·방대함을 개탄하면서 그가 제시하는 세계개편안의 장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1947년의 *Agenda for Progressive Taxation* 과 1992년의 "An Updated Agenda for Progressive Taxation" 상의 정책제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의 세계개혁안은 ① (연방)개인소득세의 이원화방안 ② 법인세 폐지 ③ 자본이득에 대한 완전과세 ④ 지방재산세의 토지세로의 개편으로 요약될 수 있고, 우리나라 세제에 대한 이들 각각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크리교수가 납세협력비용 절감 차원에서 주장하는 (연방)소득세의 이원화 방안은 우리나라에서 이미 어느 정도 시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비크리교수는 소득세 납세의무자 중 90% 정도는 단일비례세로 원천징수하는 보통세만으로 납세의무를 종결하게 하고 나머지 10% 만을 대상으로 누진적 부가세 납부를 위해 신고서를 제출케 하는 방식으로서의 개편을 제안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완납적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등으로 납세의무가 확정·정산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편의 및 세무행정 부담완화를 고려하여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확정 신고의무를 배제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표 1>은 미국과 한국의 현행 개인소득세 신고납부의무자의 범위를 대조하여 정리하고 있는데, 납세자의 종합소득이 단일종류의 소득으로 구성된 경우 종합합산의 필요성이 적으므로 신고의무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한편, 비크리교수가 제안한 과세방식으로서의 누적적 부과제도는 흐름(flow)에 대한 조세인 소득세의 부담이 신고시기 및 소득실현시기에 대해 중립적이 되도록 만들자는 발상에 기초하는 것으로서, 아직 전세계적으로도 시행 경험이 있는 나라는 없으나 향후 세정당국의 세무행정 능

〈표 1〉 한·미의 개인소득세 신고대상자 범위 비교

	내	용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퇴직소득·산립소득 또는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li> <li>-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예외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li> <li>2. 퇴직소득만 있는 거주자</li> <li>3. 자산소득만이 있는 자산합산대상배우자</li> <li>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 있는 거주자</li> <li>5.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이 있는 자산합산대상배우자</li> <li>6. 퇴직소득과 자산소득만이 있는 자산합산대상배우자</li> <li>7. 근로소득, 퇴직소득과 자산소득만이 있는 자산합산대상배우자</li> <li>8. 연말정산대상인 사업소득만 있는 자</li> <li>9. 위의 8의 소득과 퇴직소득만 있는 자</li> <li>10. 위의 8의 소득과 자산소득만 있는 자산합산대상배우자</li> <li>11. 위의 8의 소득, 자산소득과 퇴직소득만 있는 자산합산대상배우자</li> <li>12. 분리과세 이자소득, 분리과세 배당소득이나 분리과세 기타소득만 있는 자</li> <li>13. 위의 1 내지 11에 해당하는 자로서 분리과세 이자소득, 분리과세 배당소득이나 분리과세 기타 소득이 있는 자</li> <li>14. 수시부과한 경우 수시부과 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는 자</li> <li>15. 양도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로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자</li> <li>16. 2인 이상으로부터 지급받는 근로소득,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사업소득이 있는 자로서 연말 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li> <li>17. 을종 근로소득 또는 을종 퇴직소득이 있는 자로서 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 부한 자</li> </ol> </li> </ul>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고상황(filing status), 연령, 총소득의 복합기준               <table border="0" style="margin-left: 20px;"> <tr> <td style="padding-right: 20px;">단일</td> <td style="padding-right: 20px;">65세 미만</td> <td>6,550달러</td> </tr> <tr> <td></td> <td>65세 이상</td> <td>7,550달러</td> </tr> <tr> <td>· 부부합산</td> <td>65세 미만</td> <td>11,800달러</td> </tr> <tr> <td></td> <td>65세 이상(한쪽)</td> <td>12,600달러</td> </tr> <tr> <td></td> <td>65세 이상(양쪽)</td> <td>13,400달러</td> </tr> <tr> <td></td>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td> </tr> </table> </li> <li>- 아동 및 부양가족, 근로소득, 연령의 복합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수납세의무자</li> <li>· 고용주에 미신고한 행하(tips)에 대한 social security medicare tax</li> </ul> </li> </ul>		단일	65세 미만	6,550달러		65세 이상	7,550달러	· 부부합산	65세 미만	11,800달러		65세 이상(한쪽)	12,600달러		65세 이상(양쪽)	13,400달러		:	
단일	65세 미만	6,550달러																		
	65세 이상	7,550달러																		
· 부부합산	65세 미만	11,800달러																		
	65세 이상(한쪽)	12,600달러																		
	65세 이상(양쪽)	13,400달러																		
	:																			

력발전의 정도에 따라 도입을 고려해 볼 만하다.

둘째, 비크리교수는 그가 제안한 이상의 내용을 패키지로 하는 세제개혁을 하게 되면 법인이 원천징수한 보통세를 세무당국에 납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할 근거가 없어진다고 보고 법인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다만 누적부과제도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 기업이 배당보다는 사내유보 형태로 이윤을 배분하지 않음으로써 개인소득에 대한 누진부가세 부담을 줄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유인을 상쇄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의 사내유보 이윤에 대한 과세형태의 법인세는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의 이중과세 문제를 명시적으로 조정하지 않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배당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투자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이중과세 문제를 부분적으로는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자기자본보다는 차입에 의한 투자가 우대되는 유인을 억제하기 위해 시행중인 차입금지급이자 손금불산입제도와, 조세회피용 법인소득 유보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조세피난처 과세제도 그리고 일정 비상장법인에 대한 초과유보소득 과세제도는 법인세가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점을 부분적이고 단편적으로 해결하는 제도들로서 비크리교수가 제시한 패키지식 소득세제 개편이 추진된다면 법인세의 존재문제가 거론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비크리교수는 단순히 실현자본이득을 다른 종류의 소득과 동일하게 과세대우하더라도 공평성 및 효율성 측면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으며, 궁극적으로는 누적부과 방식의 채택으로 궁극적인 해결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어차피 양도소득세라는 분류과세제도를 시행하면서 종합소득세하의 타종류 소득과 별도로 과세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논의를 위한 전제조건마저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자산소유자가 사망시까지 그대로 소유하여 자본이득을 실현하지 않은 상태로 상속할 경우 자본이득이 완전히 비과세되는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부분적이거나 간주실현 방식이나 취득가액승계 방식의 도입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비크리교수는 지방재산세를 건물을 제외한 토지의 가치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지가세(land value tax)로 대체하면서, 지방정부의 수준에 따라 주정부는 토지의 자연가치에 대해 과세하고, 군 등의 기초자치단체는 지방행정서비스의 공급에 따라 인위적으로 창출된 도시가치(urban value)에 대해 과세하는 재산세 개편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의 지방재산세와는 달리 부동산을 토지와 건축물로 나누어 각각 종합토지세와 건물분 재산세로 분리과세하고 있는 상황이다. 비크리교수가 재산보유 과세대상에서 건물을 제외시킬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이유는 건물에 대한 과세가 도시 등을 중심으로 재건축

비크리교수가 제안한 과세방식으로서의 누적적 부과제도는 흐름에 대한 조세인 소득세의 부담이 신고시기 및 소득실현시기에 대해 중립적이 되도록 만들자는 발상에 기초하는 것으로서, 향후 세정당국의 세무행정 능력발전의 정도에 따라 도입을 고려해 볼 만하다.

〈표 2〉 단일비례세와 Vickrey의 소득세제간 비교

	단일비례세안	Vickrey의 소득세 이원화 방안
목 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출세 중심의 조세체계 방안 중 하나로, 조세의 단순화와 경제적 효율성 제고가 목적임.</li> <li>• 모든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단순화하고 지출에 대해 단일세율로 1회 과세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괄적 소득에 대한 종합합산 과세제도하에서 조세의 단순화와 중립성을 누진도 최소화하고 조화시키는 것이 목적임.</li> <li>• 소득의 실현 및 신고시기에 중립적인 소득세 체계 구현</li> </ul>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세를 노동소득세(individual wage tax)와 자본소득세(business tax)로 이원화</li> <li>• 자본소득 : 원천과세(기업)</li> <li>• 근로소득 : 최종 귀착지과세(개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소득세만을 단일세율 보통세(flat rate normal tax)와 누진부가세(progressive surtax)로 이원화</li> <li>• 중·저 근로소득자에 대한 원천징수 보통세</li> <li>• 고소득자에 대한 누진부가세</li> </ul>
차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소득세와 법인세를 대체함.</li> <li>- 단일비례세율</li> <li>- 경제적 효율성 강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누적부과시 법인세 폐지</li> <li>- 누진세율</li> <li>- 세정적 효율성과 조세중립성을 강조</li> </ul>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지역개발 촉진을 저해한다는 이유에서이다. 또한 필지의 용도와는 상관없이 토지의 표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할 경우 지가세 형태로 부과된 토지세는 왜곡효과 및 초과부담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이론적 근거에 바탕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토지의 가치에 대한 과세라는 측면에서는 종합토지세가 지가세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으나, 토지소유자가 전국에 갖고 있는 모든 토지를 인별합산하여 누진과세하는 방식을 채택하면서 용도별로 차등화된 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왜곡효과가 있음은 자명하다. 다만 차등과세를 통해 토지의 효율적 이

용을 강제하거나 인세(personal tax) 형태로 토지소유 집중을 억제하고자 하는 부동산 정책적 목적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토지세 이외에도 부동산시장 여건과 이를 둘러싼 각종 제도를 고려해야 하므로 양국의 상황 차이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올바른 정책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비크리교수의 세제개혁안은 1996년 미국의 대통령선거 기간중 조세의 복잡성을 개선하고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부각된 각종 단일비례세 제안들<sup>2)</sup>을 염두에 두고 그 대응으로 그의 평소이론을 환기시키기 위해 작성한 글이다. 그의 개인소득세 이원화방안과 단일 비례세안을 비교하면 <표 2>와 같다.

### <참고문헌>

- 김완석, 『소득세법론』, 서울 : 조세통람사, 1996.
- 전영준, 「Flat Tax의 개념과 경제적 효과」, 『재정포럼』, 제1권 제1호, 한국조세연구원, 1996.
- Vickrey, William S., *Agenda for Progressive Taxation*, New York: Ronald Press, 1947.
- \_\_\_\_\_, "An Updated Agenda for Progressive Tax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 \_\_\_\_\_, "Averaging of Income for Income Tax Purpos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47, 1939.
- \_\_\_\_\_, "Cumulative Averaging after Thirty Years," Richard Arnott, Kenneth Arrow, Anthony Atkinson and Jacques Dreze(eds.), *Public Econom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KDI

2) 본고에서는 Hall-Rabushka형의 「integrated flat tax」를 단일비례세의 대표적인 개념으로 삼아 비교의 대상으로 한다. 전영준, 「Flat Tax의 개념과 경제적 효과」, 『재정포럼』, 제1권 제1호 참조



# 정책토론포트

## ● 전자상거래와 조세제도

\*이 원고는 1997년 8월 2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전자상거래와 조세제도」를 주제로 열린 한국조세연구원  
개원 5주년 기념 심포지엄의 주제발표 및 토론의 요약입니다.

- 편집자 주 -

# 전자상거래와 조세제도



한국조세연구원 개원 5주년 기념 심포지엄이 8월 22일 대한상공회의소 2층 중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전자상거래와 조세제도(Electronic Commerce and Taxation)를 주제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에는 강만수 재정경제원 차관을 비롯하여 관련 전문가, 학자 등 15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각 주제별 발표 및 토론자는 다음과 같다.

### 제1주제 발표 및 토론

사회자 : 김완순 고려대 교수

발표자1 : 제프리 오웬스(J. Owens) Head, Fiscal Affairs, OECD

발표자2 : 정영헌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토론자 : 유일호 한국조세연구원 부원장

### 제2주제 발표 및 토론

사회자 : 김동건 서울대 교수

발표자 : 이안 허치슨(I. Hutchison) Principal Administrator, OECD

토론자 : 김유찬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주제발표

〈제1주제〉

### 가상공간과 조세제도



제프리 오웬스 (J. Owens)

인터넷은 기존 국가의 고유 영역으로 간주되었던 영토의 개념에 대하여 근본적인 수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인터넷상에서는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소프트웨어와 같은 디지털화가 가능한 재화의 교역도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인터넷상에서 국가가 어디까지 관여할 것인가에 관해 국제적인 합의가 도출되지 못한 실정이고 개별 국가의 정책도 현재로서는 거의 공백상태라 할 수 있다.

가상공간(cyberspace)에 조세는 존재하는가? 이러한 의문에 대하여 언론에서는 “인터넷 사용자들은 디지털 세금고지서를 받게 될 것이다”, “가상공간에 「세금쟁이」가 나타난다” 그리고 “가상공간에서 비트(bit) 단위로 세금 부과 방침”

등의 머릿기사를 게재하고 있으며 정치인들은 “인터넷에 새로운 세금의 도입 반대”, “상원의원은 세금 없는 인터넷을 원한다”라는 입장을 취하는 한편 세무당국은 “국세청장은 과세베이스의 30%가 가상공간으로 사라질 것을 걱정하고 있다”, “가상공간은 근원적인 조세천국이다”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1988년에서 1994년 사이에 인터넷 호스트의 수는 0에서 300만으로 그 수가 증가하였으며, 1995년에는 이 수치가 두 배가 되었다. 이러한 인터넷의 급속한 발전은 정보통신 부문에 있어서의 자유화 및 정부규제완화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정보통신에 대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및 인터넷 접속비용의 급속한 인하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인터넷에 대한 기술적인 측면의 이해 없이는 전자상거래에 관한 과세원칙이나 정책을 개발하기 어렵다. 인터넷의 기본적인 기술적 측면은 조세정책이나 세무행정에 있어서 중요한 정책적 함의가 있으므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인터넷의 ‘중개기관 불필요’라는 특징은 과세 포착지점(taxing points)의 설정을 어렵게 하며, 정보 암호화 기술의 발전은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되는 정보에 대한 정부의 접근을 사전에 배제할 수 있다. 또한 중앙통제력의 결여, 인터넷 사용자 추적의 어려움 등으로 나타나는 인터넷의 특성은 정부의 과세권 행사를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다.

전자상거래를 포함한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은 세제 및 세정에 부정적인 영향과 긍정적

전자상거래와 조세제도

인 영향을 동시에 미칠 것이다. 정보통신기술의 혁신적 발전은, 전통적 세무조사의 유효성이 감소되고, 개별 납세자 확인이 매우 어려워지며, 거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취득하기가 어려워지고, 거래의 중개기관이 없어짐에 따라 과세포착지점을 파악하기가 곤란해지는 등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직접예금(direct deposit)에 의한 납세협력 및 징세비용의 절감, 전자세무신고(electronic filing)에 의한 납세자의 편의성 및 경제성 제고,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 등 기타 봉급에 대한 세금(payroll tax)의 자동징수체계(automated deductions) 구축을 통한 고용주의 편의 제고, 통관절차의 능률화, 과세정보 교환의 용이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의 발전은 소비세제에 있어서 공급장소(place of supply)의 개념, 조세협약에 있어서의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의 개념, 소득의 특성 규정 및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등과 관련하여 국가간 협의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대부분의 조세협약 및 관련 세법들은 물품의 거래, 특허권(무형물)의 사용, 서비스의 제공 등과 같은 거래의 종류에 따라 세제 적용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경우 거래의 종류가 어떻게 규정되느냐에 따라 소득원천, 원천징수의 적용여부, 소득유형의 결정, 관세의 적용여부 등 여러 가지 중요한 세제상의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물품이 한 나라에 수입되면 이는 관

대부분의 조세협약 및 관련 세법들은 물품의 거래, 특허권(무형물)의 사용, 서비스의 제공 등과 같은 거래의 종류에 따라 소득원천, 원천징수의 적용여부, 소득유형의 결정, 관세의 적용여부 등 여러 가지 중요한 세제상의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

세 또는(그리고)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나 물품의 판매회사가 수입국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원천세 또는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이를 특허권 사용에 대한 로열티 지급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로열티 지급은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아니나 원천세의 과세대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지급의 경우 서비스가 외국기업에 의해서 제공되는 한 어떠한 형태의 세금도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이처럼 거래의 종류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세제상의 적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거래종류에 대한 개념설정은 매우 중요하고 국제적인 합의 도출이 필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과세방안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다음의 7가지 범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형평성 : 유사한 거래에는 동일한 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

둘째, 간편성 : 행정비용과 납세순응비용은 가능한 한 최소화되어야 한다.

셋째, 명확성 : 납세자는 자신에게 부여되는

조세의무를 사전에 명확히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효율성 : 적정량의 조세가 적시에 과세되어야 하며 잠재적 조세회피는 최소화되어야 한다.

다섯째, 경제적 왜곡의 회피 : 기업의 의사결정이 조세에 의해서 왜곡되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조세제도가 고안되어야 한다.

여섯째, 유연성과 동태성 : 기술과 상업의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조세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일곱째, 인터넷 과세베이스 배분의 공정성 : 내국세법 및 국제조세 원칙은 과세베이스의 공평한 배분을 보장하여야 한다.

## 전자상거래와 조세제도



정영현

정보통신 부문의 혁신적인 기술발전은 세계경

제의 급격한 환경 변화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해 조세정책과 세무행정에 있어서 새로운 조정이 요구되고 있다. 만약 현재의 조세제도 및 세무행정이 정보통신혁명이라는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지 못하고 기존의 가치 틀 및 기술에 머무른다면 앞으로 엄청난 혼란이 초래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규모는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향후 30년 이내에 민간소비지출의 30%를 점유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미국의 Forest Research가 발표한 최근 자료에 의하면 1997년 현재 전세계의 전자상거래 규모는 1,138억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오는 2000년에는 6,579억달러에 이를 것이라 한다.

세계화(globalization)의 진전과 첨단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정보화시대의 도래는 인터넷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조세부과에 대한 정부의 영향을 약화시키고 있다. Tanzi박사는 세계화의 진전이 첫째, 국경을 초월한 기업의 입지 선택권의 확대 둘째, 다국적 기업의 국적개념의 모호성 셋째, 노동력과 자본의 국가간 이동의 자유화 등으로 인한 세수누출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세계화·정보화의 진전은 조세체계에 다음과 같은 변화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각국은 기업의 자국 유치를 위해서 경쟁적으로 유리한 조세여건을 제공하며 조세경쟁(tax competition)을 하게 되어 궁극적으로 법인세의 하향 평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이

## 전자상거래와 조세제도

동이 자유로운 세원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이동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세원에 대해서는 비교적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자본 및 전문직 노동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일반직 노동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부담의 불공평성이 심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세부담의 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득에서 소비 및 재산으로 조세기반의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부가가치세 및 판매세와 같은 간접세의 국가간 격차가 축소되고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어 유통과정의 축소 및 세원포착의 어려움 등으로 세수의 상당부분이 누출될 전망이다.

세계화와 정보화로 요약되는 현재의 경제환경 변화는 정부의 조세관리 능력을 상당부분 무기력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적절한 조세정책과 세무행정체제를 수립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은 바로 정부정책이 전자상거래를 위축하고 나아가 인터넷의 발전을 저해하여 종국적으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가로막아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은 조세의 '중립성 원칙'이라 할 수 있다. 중립성이라 함은 기존의 전통적 상거래든 전자상거래든 동일한 세원에 대해서는 동일한 조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화의 진전과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는 필연적으로 조세수입의 누출을 야기할 것이다. 이는 법인세율 및 소비세율의 전세계적인 하향 평준화, 관세장벽의 점진적 와해, 세원포착의 어려움

대부분의 국가가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기본원칙에는 동의하는 입장이나, 무관세화, 내국세문제, 지적재산권 보호, 내용물 관련 규제 등에 대해서는 자국 이익확보 차원에서 견해 차이가 상당하므로 국제적 합의까지는 다소의 진통이 있을 것이다.

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예상되는 세수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며 '중립성'의 확보 차원에서도 전자상거래에 대한 적절한 과세방법, 특히 기술적인 방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지금이라도 국제청은 세무 전문가 및 정보통신 전문가를 중심으로 '전자상거래 대책반'을 구성하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은 1997년 7월 1일 「지구촌 전자상거래 기본구상」을 통하여 인터넷을 무관세지대로 하고 기존의 판매세 외에 추가적인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 등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일련의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유럽연합(EU)은 1997년 7월 8일 전자상거래에 대해서 정부규제를 최소화하고 새로운 조세나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본선언」을 채택하였다. 선진국의 이러한 추세를 볼 때 우리나라도 전자상거래에 대한 조세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미국의 주도과 다른 국가들의 대응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인터넷 전자상거래에 대한 논의는 향후 신(新)무역라운드로 부상될 전망이다. 대부분

의 국가가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기본원칙에는 동의하는 입장이나, 무관세화, 내국세문제, 지적재산권 보호, 내용물 관련 규제 등 주요 이슈에 대해서는 자국 이익확보 차원에서 견해 차이가 상당하므로 향후 국제적 합의까지는 다소의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견된다.

국제적인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확대를 위해서는 국가간 합의를 이루는 것 외에 아직도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기술개발 노력과 국제적 논의의 진전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는 피할 수 없는 새로운 경제활동의 장으로서 21세기 경제대변혁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전자상거래가 제기하는 새로운 도전에 국가경제적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한 당면과제라 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에 대한 우리나라의 조세관련 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인터넷을 무관세지대로 하자는 선진국들의 동향에 대하여 비용편익분석을 통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며 다차간협상에 대비해야 한다.

둘째, 전자상거래에 대한 내국세 부과를 위해서는 가상과세관청의 기초구조(architecture) 및 세법 적용을 위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의 개발이 시급하다.

셋째, 전자상거래에 대한 기존의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는 계속적으로 부과되어야 한다.

넷째, 상업용 홈페이지를 개설할 때 사업자등록을 의무화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해야 한다.

다섯째, 전자화폐를 통한 탈세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전자화폐 발행인에 대한 거래기록 보존 및 신고의무를 적절히 설계해야 한다.

여섯째, 전자상거래 관련 조세정책 과제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에 조세전문가 및 정보통신 전문가로 구성되는 '전자상거래 대책반'을 설치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 〈제2주제〉

### 전자상거래 증가에 따른 부가가치세제도의 변화



이안 허치슨 (I. Hutchison)

국가간 전자상거래의 증가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분야에서 가장 큰 관심사 중의 하나로 대두된 것이 전자통신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의 공급지주의/고정사업장주의 원칙(the place of supply/place of fixed establishment

## 전자상거래와 조세제도

principle)의 실행방향과 이로 인한 이중과세나 과세누락 문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무역과 조세경쟁에 미치는 영향이다.

부가가치세 등은 소비지출에 대한 과세이며 기본적으로 소비가 발생하는 곳의 과세당국이 과세권을 가지는 것이 타당하다. 이 때문에 부가가치세 등은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상품이동에 중립적이다. 그러나 현재의 부가가치세제도가 전자상거래와 같은 새로운 거래형태의 증가현상에 비추어 볼 때 문제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가간의 부가가치세 조정에 관하여 가장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EU의 견해(The 6th VAT Directive of EU)에 의하면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 공급지주의/고정사업장주의 원칙에 따라 고객이 거주하거나 고정된 설비가 갖춰진 곳이 공급지이며 이곳의 과세당국이 과세권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이러한 서비스가 비과세의무자에게 제공되는 경우는 서비스공급자가 고정설비를 갖추고 사업을 수행하는 곳을 공급지로 보고 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서비스가 제공되고 대가가 지불될 때 서비스공급자는 서비스가 소비되는 나라에 아무런 고정설비를 갖추지 않고 이 모든 행위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의 소비지국과세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는 EU국가간에 그리고 EU국가들과 같은 부가가치세제도를 시행하는 국가간에 발생할 수 있으며 이 외에 캐나다와 같이 EU국가들과 다른 일반소비세(GST)를 가지는 나라와

부가가치세 시행국가들 사이에서는 이중과세나 과세누락현상이 발생하여 비효율을 야기할 수 있다.

오늘날 CD, 비디오와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같은 재화와 서비스는 디지털화되어 전세계 어디든지 소비자에게 온라인으로 보낼 수 있게 되어 가고 있다.

다음 표는 캐나다와 EU 사이에서 부가가치세 과세시 이중과세나 과세누락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온라인(on-line) 서비스와 오프라인(off-line)을 통한 서비스, 재화의 거래의 경우로 구분하여 나타낸 것으로 각각의 거래마다 소비자를 개인, 기업 그리고 면세자로 분류하여 총 9가지로 세분하였다.

①, ②, ③을 살펴보면 CD와 서적 또는 기계의 부분품과 같은 재화의 공급은 소비자의 성격에

	오프라인		온라인
	재화	용역	내용물
개인	① 캐나다→유럽: VAT과세 유럽→캐나다: GST과세	④ 캐나다→유럽: 과세누락 유럽→캐나다: VAT, GST 이중과세	⑦ 캐나다→유럽: 과세누락 유럽→캐나다: VAT, GST 이중과세
기업	② 캐나다→유럽: VAT과세 유럽→캐나다: GST과세	⑤ 캐나다→유럽: VAT과세 유럽→캐나다: 과세누락	⑧ 캐나다→유럽: 과세누락 유럽→캐나다: VAT과세
면세자	③ 캐나다→유럽: VAT과세 유럽→캐나다: GST과세	⑥ 캐나다→유럽: VAT과세 유럽→캐나다: GST과세	⑨ 캐나다→유럽: 과세누락 유럽→캐나다: VAT, GST 이중과세

상관없이 이중과세와 과세누락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④는 개인수요자에게 공급되는 경우로, 예를 들어 화장술에 대한 자문서비스 등은 캐나다가 일반소비세제하에서 소비지주의 원칙에 의해 과세하는 반면, 유럽은 부가가치세제하에서 공급지주의 원칙에 의해 과세하기 때문에 서비스가 캐나다에서 유럽으로 공급되는 경우는 비과세되며 반대의 흐름에서는 이중과세된다.

⑤와 ⑥에서 기업에 대해 공급되는 광고서비스 등은 유럽의 부가가치세제하에서 소비지국에서 과세되며 캐나다의 일반소비세제하에서는 구매자가 수입된 서비스에 대해 환급이 가능하다면 비과세되고 수출되는 서비스의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⑦, ⑧, ⑨는 온라인 서비스의 경우로, 번역서비스의 구매를 예로 들 수 있는데 오프라인 서비스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나 그것이 과세시 차이를 초래하지는 않는다. 유럽의 부가가치세제하에서는 공급자가 있는 곳에서 과세되며 캐나다의 세제하에서도 동일하다.

다시 정리하면 개인이 수요자인 경우의 오프라인 서비스와 온라인 서비스 그리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는 수요자인 경우의 온라인 서비스는 재화나 서비스가 캐나다에서 유럽으로 이동할 때 과세누락 현상이 발생하나 유럽에서 캐나다로 이동할 때는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세수의 왜곡을 발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현상 중 하나가 전자통신 분야에서의 소위 회신제도(call-back system)의 증가이다. EU 내

앞으로는 공급지주의 원칙이나 고정사업장주의 원칙 등의 부가가치세의 시행원칙들을

부가가치세의 소비지국과세 원칙의 성격을 보다 잘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꾸어 나가야 하며 또 상품과 서비스 그리고 공급지주의 원칙이나 고정사업장주의 원칙에 대한 보다 일관된 정의가 필요하다.

에 고정사업장 없이도 비EU 전자통신 서비스 공급자가 EU소비자에게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문제가 생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EU회원국들은 공급지주의 원칙의 기준을 소비자의 거주지로 변화시켜야 한다. 또 납세의무자가 적법한 과세당국에 납세의무를 신고하도록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그 방법으로 상품을 공급하는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등록을 하고 납세대리인을 두도록 하여 신고납부제도를 적용하도록 한다.

결론적으로 이중과세와 과세누락 및 과세왜곡 문제는 개인수요자와 기업 또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할 수 없는 수요자의 상품과 서비스의 구매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공급지주의 원칙이나 고정사업장주의 원칙 등의 부가가치세의 시행원칙들을 부가가치세의 소비지국과세 원칙의 성격을 보다 잘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꾸어 나가야 하며 또 상품과 서비스 그리고 공급지주의 원칙이나 고정사업장주의 원칙에 대한 보다 일관된 정의가 필요하다.

전자상거래와 조세제도

토론요지

〈제1주제〉



유 일 호

앞에서 발표된 두 논문 모두 전체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고 매우 유용한 논문이라고 판단된다. 이 분야는 모두에게 새로운 분야이며 저자들에게도 예외는 아니므로 발표 논문에 구체적인 정책방안이 제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그것이 이 논문들의 결점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 두 논문은 새로운 분야에 대해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후속되는 토론을 유도하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와 관련해서는 인터넷의 기술적 측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만 조세정책 방향도 제시할 수가 있다고 사료되는데 이러한 점에서 다소 논평의 어려움이 있으나 근본적으로 두 논문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에 동의한다.

우선 오웬스박사의 논문에 대해 간단히 논평하

고자 한다. 오웬스박사는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초래될 세제·세무행정상의 여건변화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측면, 긍정적인 측면, 국제협약 측면 등으로 나누어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전자상거래는 세수누출, 탈세뿐만 아니라 국가간에 새롭게 제기하는 문제가 많으므로 앞으로 해결하여야 할 사안들이 많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여건변화 및 영향이라는 외부로부터 주어진 조건에 대응하여 각국 정부 및 경제주체가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방향 7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대원칙으로서 이들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새로운 제안이라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제시되어 온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인터넷 조세에 특화된 방향제시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오웬스박사가 밝힌 문제점들에 대해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진전될 것을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관세와 관련하여 전자상거래의 무관세화 등을 포함하는 미국과 EU의 제안들에 대해 오웬스박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조세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 전자상거래에 대한 무관세화의 추진은 전통적 상거래와 비교할 때 오히려 형평성을 위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다음으로 정영헌박사의 논문에 대해 논평하고자 한다. 정영헌박사 역시 전자상거래가 조세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잘 설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당면한 문제점을 적절히 제시하고 있다. 대체적인 시각은 오웬스박사와 일치하는 것

으로 보인다. 우선 물품, 서비스, 특허권 등의 정의에 대한 변화를 설명하고 있는데 대체로 동의한다. 또한 세수누출에 초점을 두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역시 국가간 협의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세수누출과 관련하여 긍정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비트세(bit tax)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기술적 측면을 보완하여 해결하는 방법에는 개인적으로 동의한다. 기타 제시된 방향에 대해서도 대체로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다.

〈제2주제〉



김 유 찬

우선 논문의 방향이 EU와 캐나다와의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래에서의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 지적하고자 한다. 논문의 제목에서 전자상거래 시대의 부가가치세제도 분야의 과제라는 일반적 방향을 제

전자상거래를 통한 상품거래가 기존의 선진국 상품공급자의 대리점이나 무역대리인을 통한 수출을 대체하는 경우, 이들로부터 확보할 수 있는 수입 국가들의 수입부가가치세는 크게 감소하는 반면, 선진국들 수입부가가치세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시하였으므로 전자상거래 증가로 인한 부가가치세제도상의 이슈와 이의 적절한 해결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발표 논문은 EU와 캐나다간 거래의 형태를 3가지로 나누고 각 거래형태별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수요자의 성격을 분류하여 현행 제도상 이중과세나 과세누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래의 경우를 지적하는 데 그치고 있다. 따지고 보면 캐나다와 EU 사이의 이중과세나 과세누락문제는 전자상거래의 증가현상과 상관없이 기존의 거래양식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허치슨씨에게 추가적인 설명을 요청하고 싶은 부분은, 캐나다와 EU와 같은 특정국가군 사이에서가 아니라, 동일한 부가가치세제도가 시행되는 국가들 사이에서 공동으로 발생하는 전자상거래 증가로 인해 나타나는 부가가치세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어떤 대응이 가능하며 어떤 방법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것이다.

또한 국제적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에서 부가가치세의 소비지국과 국제원칙을 유지하는 것은 국제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중립성 확

## 전자상거래와 조세제도

보라는 점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나 이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에 대한 언급이 너무 원론적이다.

가능한 대안은 첫째, 개인이 수요자인 경우에 상품공급자의 거주지국에서 과세하는 제도(EU 등)를 개선하여 이 경우에도 상품수요자의 거주지국에서 과세하는 것이고 둘째, 상품공급자의 기준을 확대 해석하여 상품공급자가 수요국가에 고정설비를 갖추거나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 외에 전자상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적인 가능성을 제공하는 여하한 것이라도 상품공급자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다.

첫번째 방법은 개인인 최종 소비자가 소비지국에서 이에 대한 신고를 하도록 강제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즉 과세회피가 발생하기 쉽다는 단점이 있고, 두번째 방법도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 포착점을 찾아낼 수 있는 기술적인 진보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다.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상품, 서비스, 공급지주의 원칙 및 고정설비주의 원칙 등의 개념이 일관되게 정의되고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이러한 개념이 어떤 방향으로 정의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는 아직 납득이 가지 않는다. 부가가치세의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상품수요자의 거주지국이 아니라 상품공급자의 거주지국에서 과세하도록 하고 상품의 이동에 대한 자료정리가 끝난 뒤 국가간에 국제정산기구를 통하여 정산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개별 국가에 대해 자국민이 소비한 상품과 서비스에 비례한 부가가치세 세수가 배분되도록 하는 방법이 가능할 것이다. 다른 방

전자상거래를 통한 상품거래가 기존의 선진국 상품공급자의 대리점이나 무역대리인을 통한 수출을 대체하는 경우, 이들로부터 확보할 수 있는 수입 국가들의 수입부가가치세는 크게 감소하는 반면, 선진국들은 수입부가가치세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법은 상품수요자의 거주지국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하되 국가간 전자상거래의 내용을 세무당국이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두 가지 해결책 모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국제적 합의 및 기술적 진보를 전제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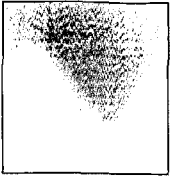
위의 두 가지 방법을 통한 해결책이 강구되지 않고 증가하는 전자상거래가 과세되지 않는 추세가 계속된다면 국가간에 심각한 부가가치세 배분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상품거래가 기존의 선진국 상품공급자의 대리점이나 무역대리인을 통한 수출을 대체하는 경우, 이들로부터 확보할 수 있는 수입 국가들의 수입부가가치세는 크게 감소하는 반면, 선진국들은 인터넷을 통한 상품 및 서비스 수입규모가 적으므로 수입부가가치세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장기적인 해결책으로는 위에서 언급한 대로 국제정산기구를 통한 방법이나 세무행정기구가 computer access를 통해 과세지점을 포착하는 방법이 있다.

마찬가지로 전자정보거래에 대한 과세, 즉 비트세도 미국과 EU 등의 국가들이 주 공급자가 될 것이므로 이 또한 세수배분의 형평성 차원에

서 문제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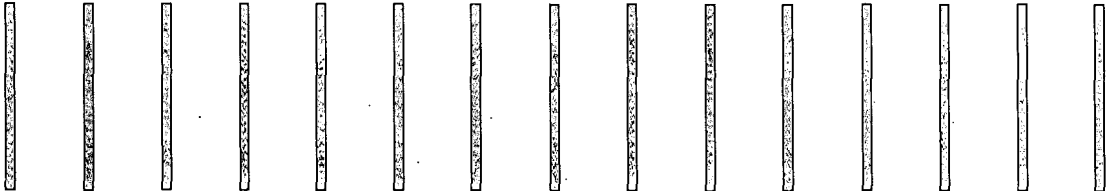
세계 무역상품구조에서 서비스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특히 선진국의 경우 그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전자상거래 방식을 택하기 쉬운 서비스상품에 대한 무관세·부가가치세 비과세 추세는 세수분배면에서 명백히 미국 등 선진국에 이롭고 우리나라와 같은 제조업 상품 위주의 수출구조를 가지는 나라에는 불리하다.

문제는 비트세에 의하여 우리가 필요한 정보나 서비스 단가가 높아져 제조업의 생산원가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한 정보자료가 모두 기업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정보도 아니고 개인이 소비하는 오락성 서비스도 많으며 또 현행 세법상 외국으로 지급하는 사용료소득(royalty) 등에 대하여 과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기업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정보라 하더라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세수배분의 형평성 차원에서는 비트세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우리가 추진할 정책방향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KIP



# 정책흐름

1. 1997 세법 개정(안)
2. 1997 관세법 개정(안)



# 1997 세법 개정(안)

※이 자료는 재정경제원 세제실 조세정책과에서 8월 26일에 발표한 「1997 세법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 1. 기본 방향

- 그동안 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세제를 꾸준히 개선해 왔으나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세제개편이 필요한 실정임.
- 그러나 최근 경기부진의 지속으로 세입전망이 불투명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조세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금년도 세제개편은
- 우리 기업의 취약한 재무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구조 조정을 통하여 기업 체질을 강화함으로써 선진국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유도하는 등의 시급한 단기 개선과제 위주로 추진
-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 관세법 3개 세법 개정안을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등의 개정도 함께 추진

### ○ 주요 개정내용

-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과 구조조정을 촉진
- 금융부채 상환목적의 부동산 양도시 특별부가세 100% 면제, 기업 구조조정시 양도세 감면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 합병차익 과세이연제도 도입으로 합병시 세제상의 애로를 해소하고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완전 조정
- 과다차입금 지급이자 및 채무보증으로 인한 대손금 손비부인제도를 신설하고 접대비·기부금 손비 인정제도를 개선
- 사업자의 과표양성화 유도 및 변칙증여 방지를 위한 세제상의 보완 등
- 신용카드·POS 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 변칙증여에 대한 과세제도 보완
- 근본적인 세제개혁은 '열린 시장경제로 가기 위한 21개 국가과제' 중 '세제개혁과 세정의 합리화'에 포함된 과제를 대상으로
- 조세제도가 경제운영에 걸림돌이 되지 않으면서 시장경제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하고

○ 적용 시기

- 1998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되,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실징후기업이 지구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것을 포함

나.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양도세 감면방법 개선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간 통합, 법인 전환, 업종전환, 대도시내 공장 지방 이전, 수도권내 법인본사 지방 이전, 10년 이상 경영목장 이전, 5년 이상 가동공장 이전, 5년 이상 사용한 농어민지원시설의 이전시</li> <li>- 다음 방법 중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합 · 법인전환 당시 양도세를 50% 감면받는 방법</li> <li>• 100% 면제를 받고 나중에 과세하는 과세이연 방법</li> </ul> </li> <li>-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년 내 사업을 폐지하거나 자산을 처분할 경우 감면세액을 전액 추징함</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0% 세액감면제도는 폐지하고</li> <li>• 양도세 과세이연방법으로 단일화</li> <li>- 사후관리제도는 폐지</li> </ul>

○ 개정 이유

- 기업구조조정 당시에는 양도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전액 과세이연함으로써 기업의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단순화하면서, 사후관리제도를 폐지하여 기업의 불편을 해소

○ 적용 시기

- 1998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다. 기업구조조정시 양도세 등 과세이연 업종 확대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간 통합시 양도세 감면 및 취득세 · 등록세 면제</li> <li>- 대상 : 「합병장려업종」으로 정한 업종간 통합에 한정</li> <li>* 합병장려업종 : 모직물 직조업 · 신발제조업 · 자동차부품제조업 등 147개 업종(통상산업부 고시업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간 통합시 양도세 등 과세이연 적용대상 업종을 확대</li> <li>- 다음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li> <li>• 부동산업, 부동산 임대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기타 오락서비스업</li> </ul>

○ 개정 이유

- 현재는 정부에서 지원업종을 제조업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 통합은 모든 업종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이므로 대상업종은 전업종으로 확대하되, 규제가 필요한 업종만을 제외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 적용 시기

- 1998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라. 양도세 감면대상 법인전환의 범위 확대

○ 개정 이유

- 법인전환 후의 업종이 지원대상 업종이면 제한 없이 감면하도록 하여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



○ 적용 시기

- 1998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현재 시·도지사가 매년 수립하는 구조개선 지원 계획은 형식적인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없음.

현행	개정안
<p>○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양도세 감면</p> <p>- 개인이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예 : 제조 → 제조, 광업 → 광업)하는 경우에만 적용</p> <p>* 대상업종 : 제조업, 광업, 건설업, 어업, 운수업, 도·소매업, 지식서비스산업</p>	<p>- 대상사업 범위 내에서는 제한없이 감면허용(예 : 제조 → 건설업, 제조업 → 지식서비스산업)</p>

○ 적용 시기

- 1998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바. 합병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제도 도입

현행	개정안
<p>○ 합병이 자산을 시가로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p> <p>- 자산평가로 인한 합병차익(자본이득)은 합병시점에서 과세</p>	<p>○ 자산의 평가증으로 인한 합병차익에 대하여 과세이연</p> <p>- 합병시점에는 비과세하고, 매각 또는 감가상각 시점에서 과세</p> <p>• 대상자산 : 부동산</p> <p>• 과세이연 방법 : 합병차익을 압축기장충당금 또는 일시상각충당금으로 설정</p>

마. 양도세 감면대상 중소기업 사업전환요건 완화

현행	개정안
<p>○ 5년 이상 동일사업을 계속한 중소기업이 제조업, 물류산업, 지식서비스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사업용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감면</p> <p>-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수립하는 「중소기업 구조개선 지원계획」에 따라 사업전환하는 경우에만 적용</p>	<p>- 「중소기업 구조개선 지원계획」 수립여부에 관계없이 감면 허용</p>

○ 개정 이유

- 자산의 시가 평가로 인한 합병차익에 대하여 합병시점에서 과세하지 않고 자산을 실제 매각하거나 감가상각하는 시점에서 과세되도록 과세이연함으로써

• 자산의 시가평가에 의한 합병을 용이하게 하여 합병의 활성화와 합병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을 실질적으로 지원

○ 적용 시기

- 199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 개정 이유

- 중소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

사.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완전조정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배당금의 19% 상당액(gross-up 비율)을</li> <li>-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li> <li>- 동일한 금액을 종합소득세액에서 공제(배당소득세액 공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ross-up 비율을 ①, ② 중에서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함.</li> <li>① 현행과 같은 19%</li> <li>② 배당을 지급한 법인의 「실제 법인세 부담률」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에 의해 산출한 비율 실제 법인세 부담률/1-실제 법인세 부담률</li> </ul>

○ 개정 이유

- 현행 gross-up 비율(19%)은
- 법인세율(1억원 이하 : 16%, 1억원 초과분 : 28%) 중 낮은 세율 16%를 기준으로 책정 ( $16\% / (1-16\%) = 19\%$ )되어 있어 이중부담의 조정이 불완전
- gross-up 비율을 실제 법인세 부담률을 기준으로 조정함으로써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를 완전히 조정할 수 있게 함.

○ 적용 시기

- 199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유도를 위한 세제상 제한

가. 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에 대한 손비인정 제한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원칙적으로 손비로 인정하되, 다음의 경우 관련 지급이자를 손비로 인정하지 않음</li> <li>- 대상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업무용자산을 취득·보유하는 법인</li> <li>•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보유하는 법인</li> <li>•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다음 자산을 보유하는 법인</li> <li>• 다른 법인의 주식</li> <li>• 농지, 임야 등 특정 부동산</li> </ul> </li> <li>- 대상차입금 : 이자와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금융기관의 경우 수신자금, 정책금융, 외화차입금은 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0년부터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기준배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차입금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를 일정조건하에 손비 부인하는 제도 신설</li> <li>- 대상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장법인</li> <li>• 코스닥 등록법인</li> <li>•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 계열법인</li> <li>• 금융기관 포함</li> </ul> </li> <li>- 기준 차입금 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배로 하되 매 2년마다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li> <li>• 1단계 : 5배, 2단계 : 4배, 3단계 : 3배, 4단계 : 2배</li> <li>• 여신전문금융업·건설업 등 업종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li> <li>• 자기자본 계산방법 : 자기자본(자산-부채)과 납입자본금 중 큰 금액</li> </ul> </li> <li>- 대상차입금 : 현행과 동일</li> <li>- 다음의 경우에는 기준배수 초과시에도 손비부인 대상에서 제외</li> </ul>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전연도에 비하여 기준 초과 차입금 규모가 20% 이상 감소한 경우</li> <li>• 수입금액 대비 지급이자 비율이 3% 이하인 경우</li> <li>• 과세소득 대비 지급이자 비율이 40% 이하인 경우</li> </ul>

○ 개정 이유

- 최근 일부 대기업의 부도사태에서 보듯이 대규모 기업집단 및 상장법인 등이 부실화되는 경우 국가·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 우리 기업이 스스로 지나친 차입을 축소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기업체질을 강화할 수 있는 경영환경을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정상적인 수준을 넘어선 기형적이고 파행적인 일부 차입경영에 대하여는 제한적으로 불이익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 다만, 현재 기업경영 여건이 어려운 상황인 점을 감안하여 기업이 새로운 제도에 적응해 나가고 자구노력에 필요한 유예기간을 인정하여
- 동 제도를 2000년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 기준 차입금 배수를 초과하더라도 특정연도의 재무구조개선 실적이 우수하거나 수익성이 높은 기업은 적용예외를 인정

○ 적용 시기

- 200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나. 접대비제도의 개선

1) 접대비 손비인정 한도의 축소

〈일반법인〉

현행	개정안
<p>○ 접대비는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 (①+②+③)을 한도로 손비인정</p> <p>① 기초금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기업 : 2,400만원</li> <li>- 중소기업 : 2,400만원</li> </ul> <p>② 자기자본 기준(50억원 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기업 : 1%</li> <li>- 중소기업 : 2%</li> </ul> <p>③ 매출액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0억원 이하분 : 0.3%</li> <li>- 100~500억원 이하분 : 0.2%</li> <li>- 500억원 초과분 : 0.1%</li> </ul>	<p>○ 접대비 손비인정 한도를 2000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p> <p>① 기초금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기업 : 1998~2000년 기간동안 1,200만원</li> <li>- 중소기업 : 1998~2000년 기간동안 1,800만원</li> </ul> <p>② 자기자본 기준(50억원 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기업 : 1998~2000년 기간동안 0%</li> <li>- 중소기업 : 1998년 1%, 1999년 0%, 2000년 0%</li> </ul> <p>③ 매출액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0억원 이하분 : 1998년 0.3%, 1999년 0.3%, 2000년 0.2%</li> <li>- 100~500억원 이하분 : 1998년 0.2%, 1999년 0.15%, 2000년 0.1%</li> <li>- 500억원 초과분 : 1998년 0.06%, 1999년 0.04%, 2000년 0.03%</li> </ul>

○ 개정 이유

- 기업의 소비성 경비지출을 억제하여 건전한 접대문화의 발전과 과소비 풍조를 예방하면서 재무구

조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유도

○ 적용 시기

- 199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공공법인>

현행	개정안
○ 일반법인과 동일한 한도를 적용 (①+②+③)	○ 일반법인의 접대비 한도의 70%를 적용 - 대상 : 조감법상의 공공법인

○ 개정 이유

- 독과점적 지위에 있는 공공법인의 경우 민간기업과는 달리 접대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을 감안하여 민간기업보다 30% 축소

○ 적용 시기

- 199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2) 1인당 접대비 지출한도 설정

○ 개정 이유

- 과도한 접대 관행을 개선하고 과소비 억제를 유도

○ 적용 시기

- 199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현행	개정안
<신설>	○ 접대 1회에 1인당 5만원 초과분에 대하여는 손비 부인  ○ 접대인원수 및 접대금액을 기록하여 보관하도록 함

3) 유흥업종 지출 접대비의 손비부인

현행	개정안
<신설>	○ 유흥업소 및 증기탕 등 일정장소에서 지출한 접대비를 손비 부인

○ 개정 이유

- 접대관행을 과소비에서 소박한 접대로 바꾸어 나가도록 유도

○ 적용 시기

- 199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4) 기밀비 한도 축소

○ 개정 이유

- 사적 경비로 이용할 소지가 큰 기밀비의 손비인정 한도를 축소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및 접대비의 건전한 사용을 유도

○ 적용 시기

- 199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접대비 중 기밀비에 대해서는 증빙 없이 일정하고 내 손비인정</li> <li>- 기초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접대비 한도 : 2,400만원</li> </ul> </li> <li>- 자기자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접대비 한도 : 1%(중소기업 2%)</li> <li>• 기밀비한도 : 1%</li> </ul> </li> <li>- 매출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접대비 한도</li> <li>100억원 이하분 : 0.3%</li> <li>100~500억원 : 0.2%</li> <li>500억원 초과분 : 0.1%</li> </ul> </li> <li>• 기밀비 한도</li> <li>0.035%(중소기업 0.05%)</li> <li>* 기밀비 한도는 접대비 한도의 30% 수준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밀비 한도를 200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li> <li>- 접대비 한도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적용</li> <li>• 1998년 : 20%, 1999년 : 10%, 2000년 : 0%</li> </ul>

5) 신용카드 사용의무비율 상향조정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접대비 중 신용카드 사용의 무 비율</li> <li>- 납세지(본점) 또는 사용지역 별로 다음의 비율 이상 사용</li> <li>• 서울시 : 75%</li> <li>• 광역시 : 60%</li> <li>• 시지역 : 50%</li> <li>• 군지역 : 4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카드 사용의무비율 상향조정</li> <li>• 서울시 : 80%</li> <li>• 광역시 : 70%</li> <li>• 시지역 : 60%</li> <li>• 군지역 : 50%</li> </ul>

○ 개정 이유

- 최근 신용카드 이용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1997년중에 신용카드 가맹점 공동관리망 구축이 추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 신용카드의 사용의무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접대비 지출의 투명성을 제고

○ 적용 시기

- 199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다. 기부금 손비인정 한도 조정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이 지출한 기부금은 일 정단체에 대하여 일정한도 내에서 손비 인정</li> <li>- 대상단체 : 사회복지·문화·예술·종교단체 등 공익 성 비영리 단체</li> <li>- 손비인정 한도 : 자기자본 (50억원 한도)의 2%와 소득금액 7%의 합계액 &lt;신설&gt;</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부금의 손비인정 한도를 축소하고 그 대신 한도초과액에 대하여 일정기간 이월 공제 허용</li> <li>- 대상단체 : 현행과 같음</li> <li>- 손비인정 한도 : 소득금액의 5%(자기자본 기준은 폐지)</li> <li>- 한도초과액은 3년간 이월공제 허용</li> </ul>

○ 개정 이유

- 기업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없는 준조세적 성격의 지출 축소를 유도

- 기부금은 소득금액과의 연계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자기자본 기준은 폐지하고, 소득금액 기준은 외국에 비해 다소 높으므로 이를 축소 조정

- 한도초과액은 일정기간 이월공제를 허용하여 기업의 기부금 지출에 신축성을 부여

○ 적용 시기

- 199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라. 채무보증으로 인한 대손의 손비부인

현행	개정안
<p>○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하는 구상채권에 대하여</p> <p>- 대손충당금(한도 : 채권잔액의 1%)을 손비 인정</p> <p>- 대손 발생시 대손금에 대하여 손비인정</p>	<p>○ 보증채무의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권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손비부인하고 대손 발생시 대손금에 대하여 손비부인</p> <p>- 대상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장법인</li> <li>• 코스닥 등록법인</li> <li>• 공정거래법상 30대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법인</li> </ul> <p>- 대상 채무보증 : 공정거래법상 허용되는 채무보증을 제외한 모든 채무보증</p> <p>* 공정거래법상 허용 보증 : 산업합리화 관련보증, 해외건설 관련 계약이행보증, 수출입제작금융, 기술개발금융, 국내 금융기관 해외지점 여신 등에 관련한 보증</p>

○ 개정 이유

- 채무보증에 의한 과도한 차입을 억제함으로써 재무구조 건실화를 유도하고 부실기업의 원활한 퇴출 등 기업구조 조정을 촉진

○ 적용 시기

- 199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채무보증하는 분부터

. 적용

3. 사업자의 과표양성화 유도 등 세제상 보완

가. 신용카드·POS 사업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

현행	개정안
<p>(신설)</p>	<p>○ 신용카드 거래비율이 높은 사업자·POS 도입 사업자 등에 대하여 과세표준 양성화에 따른 세액증기분의 일정액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p> <p>- 대상 사업자 : 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카드 거래금액이 전체 거래금액의 50%를 초과하는 사업자</li> <li>• POS를 본부·VAN 사업자와 연결하여 운영하는 사업자</li> <li>• 공공기관(담배인삼공사 등)으로부터의 매출이 50%를 초과하는 사업자</li> </ul>

○ 개정 이유

- 거래자료가 객관적으로 노출되는 POS 도입사업자 등에 대한 세부담 경감을 통하여

- 사업자가 큰 부담을 느끼지 아니하고 과표 양성화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세제면에서 지원

- 적용 시기
- 1998년 1월 1일 이후 개시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나. 공공법인의 범위 조정**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 특례세율을 적용하여 우대</li> <li>- 정부투자기관 : 35개</li> <li>- 공단 : 24개</li> <li>- 공공조합 : 동·수·축협 등 14개</li> <li>- 공공기금 : 신용보증기금 등 6개</li> <li>- 연구단체 : KAIST 등 36개</li> <li>- 기타 : 증권거래소 등 43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법인에서 다음 법인을 제외</li> <li>- 한국전기통신공사</li> <li>- 한국담배인삼공사</li> </ul>

- 개정 이유
- 설립근거가 되는 특별법이 폐지되면서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을 공공법인에서 제외함으로써 공정한 경쟁과 경영 합리화를 유도

- 적용 시기
- 199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다. 어민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1)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 개정 이유
- 어민들의 협업적 어업경영을 위한 조직인 영어조합법인과 영농조합법인 수준으로 지원

\* 1,200만원은 소득세가 비파세되는 농가부업소득과 동일한 수준

- 적용 시기
- 1998년 1월 1일 이후 개시 과세연도분, 양도분, 공급분부터 적용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민들의 협업적 조직인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li> <li>- 농지소득 : 전액 면제</li> <li>- 기타소득 : 조합원수x1,200만원 면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민들의 협업적 조직인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li> <li>- 법인세 : 조합원수x1,200만원 면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에 대한 배당소득 감면</li> <li>- 배당 : 농지소득분+기타 소득분(1,200만원)은 면제, 초과분은 5% 분리과세(주민세 면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합원 배당 : 1인당 1,200만원까지 면제, 초과분은 5% 분리과세(주민세 면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농조합법인에 농지 현물 출자시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업인이 영어조합법인에 어장, 양식시설, 종묘시설 등을 현물 출자하는 경우에도 면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농조합법인의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영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어조합법인이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경영 및 어로·양식 작업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면제</li> </ul>

**2) 양어용 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확대 등**

- 개정 이유
- 현재 내수면어업용 사료 중 일부는 농·축협을 통

- 하여 공급되고 있으므로 수협을 통하여 공급되는 것과 동일하게 영세율을 적용하고
- 기자재 수입에 있어 농·어민간 과세형평 도모
- 적용 시기
- 1998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 수입분부터 적용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안어업용 또는 내수면 어업용으로 공급되는 다음의 양어용 사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li> <li>- 어민에게 공급되는 것</li> <li>- 어민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수협(어촌계 포함)에 공급되는 것</li> <li>○ 농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민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농협·축협(중앙회를 포함)에 공급되는 것도 영세율 적용</li> <li>○ 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 면제</li> </ul>

라. 변칙증여에 대한 과세제도 보완

1) 신종사채에 대한 과세확대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수관계자로부터 전환사채를 취득하는 경우</li> <li>- 주식이액과 전환가격의 차액에 대하여 과세</li> <li>* 신주인수권 부사채 및 교환사채에 대한 과세규정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환사채 및 이와 유사한 새로운 형태의 사채인 신주인수권부사채(BW)·교환사채(EB)의</li> <li>- 최초인수 및 취득시 얻는 이익에 대하여도 과세대상에 추가</li> </ul>

주 : 신종사채에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 부사채, 교환사채가 포함됨.

- 개정 이유
- 신종사채를 이용한 변칙증여의 규제를 위하여 최초로 인수하는 자가 얻는 이익(인수일의 주식이액-주식취득가액)도 과세토록 하고
- 증여의제 대상 신종사채의 범위에 신주인수권 부사채와 교환사채를 추가함.

- 적용 시기
- 공포 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2)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을 이용한 이익에 대한 과세확대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자가 얻는 이익에 대해 과세</li> <li>- 증자 후 1주당 가액과 신주인수가액의 차액</li> <li>* 실권주주에 대한 과세규정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주주가 아닌 제3자가 신주인수권을 직접 배정받은 경우, 그 이익에 대해서도 증여세 과세대상에 추가됨을 명확히 함</li> <li>○ 실권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를 고가로 인수하는 경우 실권주주가 얻는 이익에 대한 과세제도 신설</li> </ul>

- 개정 이유
- 신주인수권을 이용한 변칙증여를 규제하기 위하여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을 직접 배정받아 얻는 이익(증자 후 1주당 가액-신주인수가액)도 과세토록 하고
- 실권주를 실권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고가로

인수함으로써 실권주주의 주식가치가 상승하여 실질적인 이익을 분여받은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

○ 적용 시기

- 공포 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3) 결손법인을 이용한 이익에 대한 과세제도 보완

현행	개정안
○ 결손법인 지배주주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을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증여의제 과세	○ 결손법인에게 부동산 이외에 주식을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도 과세대상에 추가
- 결손법인 지배주주의 주식이 치 상승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	- 결손법인으로부터 부동산 및 주식을 고가로 매입하는 경우의 이익에 대한 과세제도 신설
* 결손법인 자산의 고가매입에 대한 과세제도 없음	

○ 개정 이유

- 결손법인을 이용한 변칙증여를 방지하기 위하여 증여의제 과세대상을 확대함.

○ 적용 시기

- 공포 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III. 향후 세제개혁 추진방안

○ 향후 세제개혁은

- 조세제도가 경제운영에 걸림돌이 되지 않으면서 시장경제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하고
- 재정수입의 안정적 확보기반을 확충해 나가면서
- 세부담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제도의 간소화를 구현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

\* 열린 시장경제로 가기 위한 21개 국가과제 중 「세제개혁과 세정의 합리화」에 포함된 세제개혁 과제를 구체화하여 실천가능한 방안을 마련

○ 향후 세제개혁 방안의 추진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심도 있는 연구 및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필요

○ 8월 25일 세제발전심의회위원회 개최시에는 금년 세법개정안 심의 외에 4개 전문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 향후 세제개혁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는 등 동 위원회를 세제개혁 작업에 적극 참여시키는 방안을 추진

1. 추진 일정

○ 협의

- 당정협의(8월 25일, 월요일)

- 세제발전심의위원회(8월 25일, 월요일)
- 관세심의위원회(8월 26일, 화요일)
- 보도(8월 26일 조건, 관세법 개정안은 8월 26일 석간)

- 정부안 확정
- 국무회의(9월 23일, 화요일)

- 국회제출(10월 2일, 수요일)

## 2. 전문 분과위원회 구성 및 연구과제

- 총괄, 소득과세, 재산과세, 소비과세 4개 분과위원회로 구성
- 각 분과위원회는 8명 내외로 구성
- 세제실 담당과장이 간사로 참여하여 연구결과를 정책에 반영

### 가. 총괄 분과위원회

- 위원회 구성
- 학계, 연구단체, 경제단체, 언론계 등 분야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 간사 : 조세정책과장 기본법규과장

- 연구과제(예시)
- 조세체계의 간소화
  - 유사세목 및 부가세의 본세 통합
  - 목적세 제도의 정비
- 안정적인 세입 확보
  - 비과세·감면 축소 등 과세기반의 확대

- 조세감면제도의 축소·정비
  - 특정산업·특정직종에 대한 감면 폐지
  - 일몰법(日沒法)제도의 도입
  - WTO 금지보조금 정비
  - 조세지원과 재정(예산)지원간의 연계
- 조세범처벌제도의 개선·보완 등

### 나. 소득과세 분과위원회

- 위원회 구성
- 학계, 연구단체, 경제단체, 언론계 등 분야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 간사 : 소득세과장, 법인세과장
- 연구과제(예시)
- 종합소득세제의 발전
  -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의 보완·발전
- 과표양성화 유도 등
  -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방안 및 합리적인 소득추계방법 개발
- 기업과세제도의 개편

### 다. 재산과세 분과위원회

- 위원회 구성
- 학계, 연구단체, 경제단체, 언론계 등 분야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내무부 세제과장
- 간사 : 재산세과장
- 연구과제(예시)
- 토지세제의 합리적 개선
  - 보유과세의 강화와 이전과세의 완화

- 토지 관련 부담금의 조세체계의로의 편입
- 상속·증여세제의 보완
- 사전상속 및 변칙증여 방지

#### 라. 소비과세 분과위원회

- 위원회 구성
- 학계, 연구단체, 경제단체, 언론계 등 분야별 세제 발전심의위원회 위원
- 간사 : 소비세제과장

#### ○ 연구과제(예시)

- 소규모 사업자 부가가치세 제도 개선
- 간이과세제도와 과세특례제도의 통합
- 특별소비세제의 개선
- 과세범위 및 세율 조정
- 유류에 대한 과세체계 정비

#### 마. 추진 일정

- 금년도 세법 개정안 심의를 위한 세제발전심의위원회 개최시(8월 25일) 분과위원회 구성
- 1998년 3월까지 : 연구보고서(안) 작성
- 1998년 5월까지 : 공청회 개최 등 여론수렴
- 1998년 6월 이후 : 단기과제에 대하여 세법 개정 추진

# 1997 관세법 개정(안)

※이 자료는 재정경제원 관세제도과와 산업관세과에서 8월 26일에 발표한 「1997 관세법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 I. 기본 방향

1997 관세법 개정은 관세율의 조정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

- 현행 균등관세율체계를 유지하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여 일부 관세율을 조정
- 현행 관세율체계를 운용해 오는 과정에서 제기된 보완요구를 반영
  - 일부 기초원자재 및 중간재의 관세율 인하
  - 의류·신발 등 일부 품목의 관세율 인상
  - 탄력관세 장기적용 품목의 기본세율 조정
- 현행 관세율표의 정비
  - 연차별 예시제 형태의 관세율표를 단일세율로 수정
  - HS(품목분류) 협약 수정내용을 관세율표에 반영
- 규제완화 등 수요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일부 관세

제도를 보완

- 관세제도는 1993년, 1995년 및 1996년에 대폭 개정하여 큰 개정 수요는 없으나 제도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사항을 개선하여 수출입 기업의 편의를 도모

## II. 관세율 조정

### 1. 관세율 조정방향

- 현행 균등관세율 체계를 유지하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여 일부 관세율을 조정
- 국내에서 생산되지 아니하여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기초 원자재와 산업활동에 긴요한 일부 중간재의 관세율을 인하하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
  - 다만, 에너지절약 및 자원절약형 산업구조 유도를 위해 세율 인하가 곤란한 품목은 제외
-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류·신발 등 일부산업의 관세율을 양허세율 범위 내에서 주

요 경쟁국 수준으로 인상하여 원만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WTO체제하에서의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 매년 반복적으로 탄력관세가 적용되는 일부 품목의 관세율을 현행 탄력관세율 수준을 감안하여 조정하고 제품보다 원료의 관세율이 높은 역관세 품목의 세율을 시정하는 등 세율체계를 정비

긴요한 86개 중간재·부품에 대해서는 세율을 인하하되, 부품·소재 국산화계획 등 우리의 자본재 산업 육성전략을 감안하여 조정

- 현행 8% 세율품목 → 5%,  
현행 5% 세율품목 → 3%

## 2. 관세율 조정(안)

### 가. 257개 품목의 세율조정

	세율인하	세율인상	주요품목
기초원자재 및 중간재 세율인하	152	-	천연고무, 양모, 메탄올 등
공정여건 조성 및 구조조정 보완	-	69	의류, 신발
탄력관세의 정비	30	6	원목, 철 반제품 등
합 계	182	75	

	품목수	세율		주요품목
		현행	조정	
기초원자재	66			
비경쟁	48	2	11	천연고무, 양모·원면, 고철, 산화니켈 등
경쟁	18	3	2	원피, 우지, 팜유, 미정제 연피 등
중간재	86	5~8	3~5	메탄올, 니켈 피, 항공기용 엔진(5→3) 나프틸아민, 스텐레스강, 시계무브먼트(8→5)
계	152			

### 나. 원자재 및 중간재의 세율인하로 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 기초원자재 : 66품목
  - 천연고무·양모 등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48개 '비경쟁 기초원자재'는 장기적으로 무세화를 지향하되 세수여건 등을 감안 1%로 세율 인하
  - 원피·팜유 등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18개 '경쟁 기초원자재'는 2%로 세율 인하
- 중간재 : 86품목
  - 국내생산이 어려워 수입의존도가 높고 산업활동에

### 다. 공정경쟁여건 조성 및 구조조정 보완을 위한 관세율 인상

- 구조조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쟁력 취약산업으로서 주요 경쟁국보다 관세율이 낮아 불리한 경쟁여건에 있는 품목 : 직물·의류, 신발
- 주요 경쟁국의 관세율 수준, 최종연도 양허세율 등을 감안, 10%, 13%, 16% 세 가지 수준으로 세율 조정

(단위 : 개, %)

	품목수	주요 품목 세율조정
의류	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직물, 합성직물, 편직물(8→10)</li> <li>• 가죽의류, 편·직물제 의류(8→13)</li> <li>• 모피의류(8→13)</li> </ul>
신발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죽신발(8→13)</li> <li>• 고무신발(8→13)</li> <li>• 직물제 신발(8→13)</li> </ul>
합계	69	

### 라. 탄력관세의 정비 등

-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를 3년 이상 장기간 적용중인 품목은 현행 탄력관세율 수준을 감안하여 기본세율로 변경
- 제품보다 원료의 관세율이 높은 역관세 시정

(단위 : 개, %)

	품목수	주요 품목 세율조정
할당관세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주정(30→10)</li> <li>• 원목(2→1)</li> <li>• 합금철, 빌레트, 슬랩, 조동, 알미늄괴 등(3~8→2~5)</li> </ul>
조정관세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볼베어링, 건전지(8→13)</li> <li>• 우산류(8→13)</li> </ul>
역관세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산화바나듐(8→3)</li> </ul>
계	36	

## 3. 현행 「관세율표」의 정비

### 가. 정비 배경

- 현행 관세법 별표인 「관세율표」는 1989년 개정 이후 일부 무세화 품목(선박, 컨테이너 등)의 세

율변경을 제외하고는 현 체계를 유지

- 관세율인하예시제에 따라 품목별로 연도별 예시제 형태로 세율을 기재
- 그동안 WCO(세계관세기구)의 HS(품목분류) 협약 수정내용의 국내 수용 등으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과거의 표를 그대로 유지

### 나. 정비방안

- 연차별 세율로 표시되어 있는 관세율표를 단일세율로 정비
- 재정경제원 장관 고시에 의해 운용되고 있는 HS(품목분류) 협약·수정내용을 관세율표 원문에 반영

## III. 관세제도 개선

### 1. 개정 이유

- 규제완화 등을 통하여 수요자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 2. 주요 개정내용

#### 가. 관세감면 대상의 합리적 조정

- 개정 이유
- 국내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첨단산업에 대한 관세지원이 필요(1996년 관세감면액 : 63억원)

- 농업기계제조용 부분품에 대한 감면은 특정산업에 대한 지원으로서 WTO 보조금협정에 위배(1996년 관세감면액 : 13억원)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첨단산업용품 및 방위산업용품에 대한 감면제도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한 시적으로 운용</li> <li>- 감면율을 연차 인하여 1997년에는 20% 적용중</li> <li>○ 농업기계제조용 부분품에 대하여 65% 감면(조감법 제112조 제1항 제2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첨단산업용품에 한해서 감면제도를 3년 연장 시행</li> <li>- 감면율 30% 적용</li> </ul> <p style="text-align: center;">〈삭제〉</p>

- 수출자유지역 입주업체에 대한 생산지원 및 외국인 투자유치를 지원

- 현재, 수출자유지역에서 수입되는 물품은 총리령에서 원료과세 대상물품으로 정한 것이더라도 제품전체에 대해 과세함.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세구역에서 제조된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투입된 외국원료에 대해서만 과세(원료과세)</li> <li>- 다만, 총리령으로 정한 물품에 한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자유지역에서 제조된 물품도 포함</li> </ul>

**나. 규제완화 등 수요자의 편의 증진**

- 수출신고 수리물품의 보세구역 반입의무 폐지(제66조)
  - 개정 이유
  - 현재는 수출물품을 의무적으로 보세구역에 반입토록 하고 있으나 보세구역 반입없이 바로 선적가능하게 하여 수출통관 절차를 간소화함.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자는 수출신고 수리물품을 30일 내에 선(기)적지 보세구역에 반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자는 수출신고 수리물품을 30일 내에 선(기)적</li> </ul>

**3) 심사청구 적격의 확대 등(제38조 및 제41조)**

- 개정 이유
- 납세자 등의 권리증진을 위하여 국세기본법과 같이 심사청구를 당사자뿐 아니라 이해관계인에게도 허용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권리·이익을 침해당한 자만 심사청구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 등 이해관계인도 심사청구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사청구 내용의 보정기간 10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 기간을 20일로 확대</li> </ul>

- 원료과세 대상에 수출자유지역에서 제조된 물품을 포함(제102조)
  - 개정 이유

**4) 품목분류 변경시 유예기간 설정(제7조의 2)**

- 개정 이유
- 품목분류 변경에 따른 수입자의 예기치 못한 품목분류상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하여 20일간의 유예

기간을 설정

현행	개정안
○ 품목분류 사전회시제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 그 변경일 이전에 물품을 선적한 때에는 변경 전 품목분류 적용 가능	- 그 변경일부터 20일이 경과하기 이전에 물품을 선(기)적한 때에는 변경 전 품목분류 적용 가능

5) 船(機)용품의 이적을 허용(제51조)

- 개정 이유
- 항구에 하역한 후 다시 적재하는 데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선박(항공기)에서 다른 선박(항공기)로 바로 이적 허용

현행	개정안
○ 선(기)용품을 적재·하선(기)하고자 할 때에는 세관장의 허가 필요	○ 선(기) 용품을 적재·하선(기) 또는 이적하고자 할 때에는 세관장의 허가 필요

다. 기타 현행 제도의 일부 보완

1) 입출항 보고를 허위로 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제188조 제2항)

현행	개정안
〈신설〉	○ 입출항 보고를 허위로 한 자 : 2천만원 이하 벌금

- 개정 이유
- 입출항 보고를 허위로 한 경우의 처벌규정이 없음을 보완

- 불법행위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허위로 입출항 보고를 하는 사례가 있음.

예) 출항목적지가 홍콩임에도 싱가포르로 고의 기재하여 우리 세관으로부터 동 정보를 받은 싱가포르 세관의 단속을 회피

2) 매각대금 총당우선 순위 규정(제125조)

- 개정 이유
- 매각비용은 매각을 위해 실제 소요된 비용이므로 우선 총당하는 것이 합리적

현행	개정안
○ 매각대금 중 관세·제세 및 그 물품매각에 관한 비용에 총당하고 남은 금액을 화주에게 교부(제 125호)	○ 매각대금 중 그 물품매각에 관한 비용·관세 및 제세(諸稅)순으로 총당하고 남은 금액을 화주에게 교부

<참고> 품목별 기본관세율 조정현황

1. 기초원자재 · 중간재 세율인하

(단위 : 개, %)

산업별	번호	품명	세목수	기본관세율	
				현행(실행)	조정
가공식품 및 종자용 수산물	1	종자용 글	1	20	5
	2	양식용 김	1	50	10
	3	커피 두	2	3	2
	4	코코아 두	1	3	2
	5	코코아 페이스트	1	8	5
	6	코코아 버터	1	8	5
	7	코코아 분말	1	8	5
	8	조당	1	5	3
화학	1	메탄올	1	5(할3)	3
	2	부탄올(노말부틸알콜)	1	8	5
	3	이소노닐알콜	1	8	5
	4	이소데실알콜	1	8	5
	5	테트라브로모	1	8	5
	6	삼염화인, 산화염화인	1	8	5
	7	인조커런덤	1	5(할2)	3
	8	공업용 소금	2	2	1
	9	글루탐산(G·A)	1	8	5
	10	윤활기유	1	8	7
	11	윤활유 첨가제	1	8	5
	12	윤활유	1	8	7
	13	항료 원료	7	8	5
	14	우지	1	3	2
	15	팜유, 팜스테아린	1	3	2
	16	아자유	1	5	3
	17	디에틸렌트리아민	1	8	5
	18	노닐페놀	1	8	5
	19	공업용 지방성 알콜	1	8	5
	20	무수암모니아	1	5(잠2, 할1)	2
	21	정제붕사	1	8	5

산업별	번호	품명	세목수	기본관세율	
				현행(실행)	조정
화학	22	천연 산화마그네슘	1	5	3
	23	나프틸 아민	1	8	5
	24	아미노 나프톨	1	8(할4)	5
	25	아세트아세트 아닐리드	1	8(할5)	5
고무·피혁	1	천연고무	4	2(할0)	1
	2	합성고무(부틸고무 등)	1	8	5
	3	원피	12	3(할1)	2
제지	1	주스팩 제조용 원지	1	8	5
	2	우유팩 제조용 원지	1	8	5
섬유	1	초산 셀룰로스	1	8	5
	2	양모	24	2(할0)	1
	3	원면	5	2(할0)	1
철강	1	희토류 금속	1	8	5
	2	해면철	2	2(잠1)	1
	3	고철	6	2(잠1, 할0)	1
	4	스텐레스강 반제품	2	5	3
	5	스텐레스강의 봉(선재)	1	8	5
	6	규소 전기장	2	8(할4)	5
	7	고속도 강	2	8	5
	8	전극봉	2	8(할4)	5
비철금속	1	동의 매트	2	2(잠1)	1
	2	산화니켈	3	2(할0)	1
	3	니켈의 괴	1	5(할3)	3
	4	니켈의 봉, 관	2	8	5
	5	미정제 연괴	1	3	2
	6	주석의 괴	1	5	3
	7	코발트와 그 제품	1	5(할2.5)	3
	8	안티모니아와 그 제품	1	5	3
기계전자	1	항공기용 엔진	8	5(할1)	3
	2	항공기용 샤프트	7	5~8	3
	3	항공기용 점화용 기기	7	5	3
	4	항공기용 자동제어기기	9	8(할3)	5
	5	시계 무브먼트	1	8	5
소계	62		152		

## 2. 구조조정 보완 및 공정경쟁 여건조성을 위한 세율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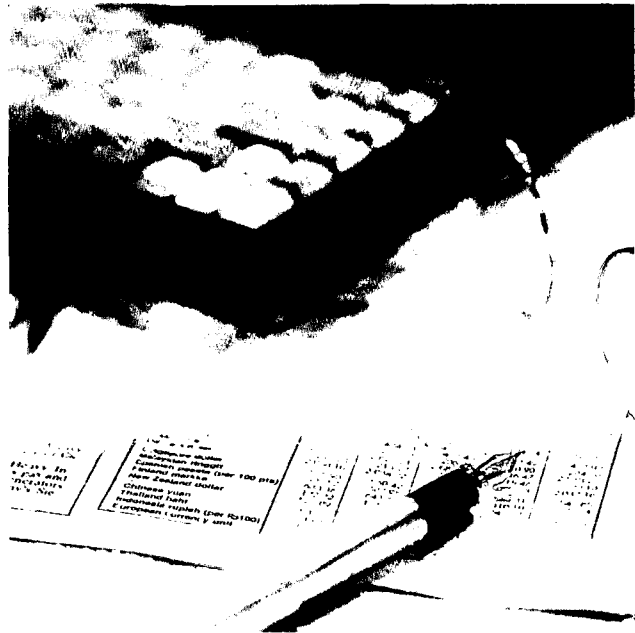
(단위 : 개, %)

산업별	번호	품명	세목수	기본관세율	
				현행(실행)	조정
직물·의류	1	건직물	1	8(조20)	13
	2	모직물	3	8(조13~17)	13
	3	면직물	5	8(조24)	10
	4	합성직물	5	8	10
	5	편직물	2	8	10
	6	도포직물	1	8	10
	7	파일직물 등	3	8	13
	8	가족의류	1	8	13
	9	모피의류	1	8(조20)	16
	10	편물제 의류	16	8(조13)	13
	11	직물제 의류	13	8(조13)	13
	12	끈, 망지 등	2	8	10
	13	양탄자류	5	8	10
	14	모포류 등	2	8	10
	15	커튼, 텐트 등	5	8	13
		계	65		
신 발	1	신발류(가족, 직물제 등)	4	8(조13)	13
소 계	16		69		

### 3. 탄력관세의 정비

(단위 : 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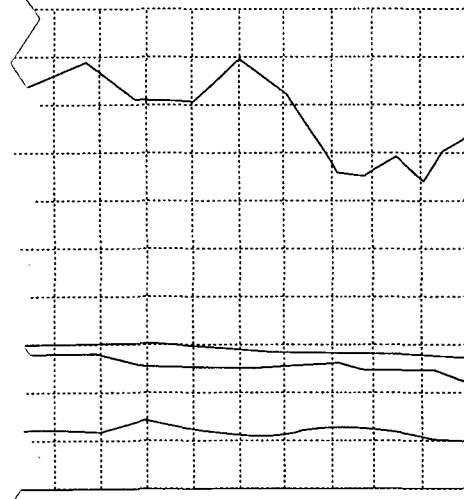
구분	번호	품명	세목수	기본관세율	
				현행(실행)	조정
할당관세 장기적용	1	조주정	1	30(할10)	10
	2	원목	12	2(할0)	1
	3	합금철	5	5(할2.5)	3
	4	철 반제품	4	5(할2)	3
	5	철강의 봉(선재)	1	8(할4)	5
	6	합금강의 반제품	2	5(할2)	3
	7	합금강의 봉(선재)	1	8(할4)	5
	8	텅스텐 산업	1	8(할3)	5
	9	조동	1	3(할1)	2
	10	알루미늄 괴	1	5(할3)	3
		계	29		
조정관세 장기적용	1	베어링	1	8(조15)	13
	2	건전지	2	8(조13)	13
	3	우산류 및 부분품	2	8(조19/17)	13
	4	정당	1	8(조50)	50
		계	6		
역관세 시정	1	오산화바나듐	1	8(할2)	3
소 계	15		36		



# 재정통계

## 상속세 관련 통계

1. 상속세 납세지수, 예산 및 징수
2. 상속세 부과
3. 재산종류별 상속재산가액
4. 상속세 국제심사 사무처리 : 이의신청
5. 상속세 국제심사 사무처리 : 심사처리
6. 상속세 세무소송
7. 상속세 감사실적



### 1. 상속세 납세자수, 예산 및 징수

(단위: 명, 백만원, %)

	납세자수	예산액(A)	징수결정액(B)	부과액	수납액(C)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비율	
								(B/A)	(C/A)
1965	590	64	53	44	49	0	4	82.7	76.3
1966	711	101	80	137	77	0	3	78.9	76.0
1967	664	78	192	280	175	0	17	246.4	224.1
1968	490	233	308	296	263	0	44	132.1	113.0
1969	455	270	399	504	370	0	28	147.6	137.1
1970	585	313	1,039	1,407	870	12	157	332.0	278.0
1971	666	407	1,233	1,586	1,036	10	188	303.0	254.6
1972	664	882	1,162	1,053	955	10	196	131.7	108.3
1973	407	957	1,376	1,268	877	2	496	143.8	91.7
1974	296	1,824	1,636	1,685	1,601	1	34	89.7	87.8
1975	241	4,200	5,083	9,613	4,234	1	848	121.0	100.8
1976	270	2,947	8,241	5,438	5,687	12	2,542	279.6	193.0
1977	300	3,308	5,118	3,981	4,917	18	183	154.7	148.6
1978	285	4,148	4,225	3,187	3,799	19	407	101.9	91.6
1979	317	9,573	7,301	1,796	6,582	52	667	76.3	68.8
1980	350	9,311	11,265	4,290	9,623	33	1,608	121.0	103.4
1981	866	11,859	18,389	22,671	11,975	24	6,390	155.1	101.0
1982	820	14,471	22,483	20,326	17,889	209	4,385	155.4	123.6
1983	1,105	16,728	21,957	21,516	18,107	116	3,733	131.3	108.2
1984	1,144	22,567	39,812	40,929	19,946	317	19,549	176.4	88.4
1985	1,110	21,564	27,078	28,225	17,821	810	8,446	125.6	82.6
1986	1,324	18,594	45,069	48,460	33,382	2,348	9,339	242.4	179.5
1987	1,140	38,696	42,970	50,558	32,724	1,506	8,740	111.0	84.6
1988	1,414	49,736	56,460	53,896	36,007	1,892	18,561	113.5	72.4
1989	1,703	39,165	53,986	87,704	39,472	2,096	12,418	137.8	100.8
1990	2,294	40,942	82,240	115,506	71,033	635	10,572	200.9	173.5
1991	2,869	97,486	143,017	230,967	104,372	31	38,614	146.7	107.1
1992	3,438	119,618	226,987	325,624	175,030	51	51,906	189.8	146.3
1993	2,291	179,485	475,923	676,050	346,337	1,215	128,371	265.2	193.0
1994	2,549	498,700	629,226	783,725	523,570	2,340	103,316	126.2	105.0
1995	3,464	632,500	772,470	880,967	605,644	19,444	147,382	122.1	95.8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 2. 상속세 부과

(단위: 명, 백만원)

부과액

	과세인원	재산가액	공제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면제및공제세액	가산세	총결정세액
1965	590	734	446	288	44	516	-	44
1966	711	1,456	690	767	154	17	-	137
1967	664	2,048	793	1,256	290	7	-	280
1968	490	2,805	1,237	1,568	424	128	-	296
1969	455	3,871	2,061	1,866	527	24	-	504
1970	585	7,040	2,565	4,475	1,724	320	-	1,407
1971	666	8,718	3,436	5,282	2,059	661	-	1,586
1972	664	8,110	4,313	3,798	1,237	184	-	1,053
1973	407	7,322	3,597	3,725	1,376	107	-	1,268
1974	296	9,036	4,775	4,262	1,820	135	-	1,685
1975	241	21,853	5,131	16,722	10,166	553	-	9,613
1976	270	26,705	15,807	10,898	5,898	460	-	5,438
1977	300	18,353	9,773	8,580	4,202	221	-	3,981
1978	285	16,877	8,352	8,525	4,039	852	-	3,187
1979	317	14,544	9,488	5,056	1,946	150	-	1,796
1980	350	27,777	17,510	10,267	4,551	262	-	4,290
1981	866	94,558	40,781	53,777	29,569	6,898	-	22,671
1982	820	92,185	47,164	45,021	21,297	971	-	20,326
1983	1,105	120,456	60,926	59,529	26,717	5,201	-	21,516
1984	1,144	180,560	82,957	97,604	45,346	4,893	476	40,929
1985	1,110	157,275	82,262	75,013	32,526	5,368	1,066	28,225
1986	1,324	231,971	117,443	114,527	51,576	4,625	1,508	48,460
1987	1,140	246,699	127,288	119,411	53,904	5,162	1,816	50,558
1988	1,414	261,368	133,496	127,872	57,356	6,428	2,968	53,896
1989	1,703	404,130	191,582	212,548	95,703	11,148	3,149	87,704
1990	2,294	655,696	329,188	326,508	129,230	20,074	6,350	115,506
1991	2,869	872,847	326,380	546,467	241,497	28,258	17,728	230,967
1992	3,438	1,510,240	671,284	838,956	334,185	37,695	29,134	325,624
1993	2,291	2,196,649	683,219	1,512,430	691,053	76,658	61,655	676,050
1994	2,549	2,680,931	884,291	1,796,640	794,154	99,366	88,937	783,725
1995	3,464	3,300,717	1,241,930	2,058,787	890,074	92,025	82,918	880,967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 3. 재산종류별 상속재산가액

(단위: 백만원)

	토지	건물	금융자산	기타상속자산	합계	증여재산가액	총계	공제금액	과세표준
1965	391	140	88	111	730	4	734	446	288
1966	732	272	194	197	1,395	61	1,456	690	767
1967	1,034	356	467	180	2,037	11	2,048	793	1,256
1968	1,522	458	358	245	2,583	222	2,805	1,237	1,568
1969	2,290	815	404	292	3,801	57	3,857	2,061	1,866
1970	3,783	885	1,594	576	6,839	202	7,040	2,565	4,475
1971	4,929	1,290	1,961	503	8,683	35	8,718	3,436	5,282
1972	4,948	1,207	964	897	8,016	95	8,110	4,313	3,798
1973	4,477	1,407	698	637	7,219	103	7,322	3,597	3,725
1974	4,849	1,464	2,038	644	8,994	35	9,029	4,767	4,262
1975	4,554	1,830	9,935	1,091	17,410	4,443	21,853	5,131	16,722
1976	14,947	3,146	6,595	1,196	25,884	821	26,705	15,807	10,898
1977	8,799	3,035	4,095	1,969	17,898	455	18,353	9,773	8,580
1978	9,485	2,743	1,714	1,502	15,443	1,434	16,877	8,352	8,525
1979	8,190	3,103	1,808	1,401	14,502	142	14,644	9,488	5,056
1980	15,424	6,276	2,868	2,645	27,213	565	27,778	17,510	10,267
1981	52,147	21,457	12,148	6,969	92,721	1,837	94,558	40,781	53,777
1982	54,117	22,145	9,526	5,685	91,472	713	92,185	47,164	45,021
1983	63,377	29,515	12,483	5,733	111,107	9,349	120,456	60,926	59,529
1984	110,931	34,813	17,718	5,714	169,176	11,384	180,560	82,957	97,604
1985	90,029	41,871	8,986	10,242	151,128	6,148	157,275	82,262	75,013
1986	134,488	59,611	15,664	16,396	226,159	5,812	231,971	117,443	114,527
1987	144,811	61,699	24,809	10,451	241,770	4,929	246,699	127,288	119,411
1988	136,918	46,355	40,995	23,331	247,599	13,769	261,368	136,496	127,872
1989	233,780	88,091	50,098	17,583	389,552	14,578	404,130	191,582	212,548
1990	420,780	111,432	60,993	32,346	625,551	30,145	655,696	329,188	326,508
1991	575,849	123,413	114,063	12,731	826,056	46,344	872,400	43,805	828,595
1992	942,171	161,454	150,477	12,073	1,266,175	123,629	1,389,804	119,644	1,270,160
1993	772,910	131,807	165,801	46,600	1,117,118	239,842	1,356,960	129,559	1,227,401
1994	929,181	145,594	195,278	15,397	1,285,450	191,289	1,476,739	224,840	1,251,899
1995	1,305,678	225,765	196,307	20,604	1,748,354	223,023	1,971,377	405,772	1,565,605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4. 상속세 국세심사 사무처리 : 이의신청

(단위: 건, 백만원)

재정경제원

	요처리건수			처리건수				감세액	이월건수
	계	전년이월	당년접수	계	각하	기각	결정		
1965	38	-	38	35	1	14	20	1	3
1966	12	3	9	12	-	6	6	0	-
1967	17	-	17	17	3	6	8	1	-
1968	16	-	16	15	2	8	5	2	1
1969	20	1	19	17	1	10	6	24	3
1970	27	2	25	34	13	11	10	26	4
1971	30	4	26	25	1	16	8	1	5
1972	48	5	43	46	5	31	10	2	2
1973	29	2	27	28	5	20	3	3	1
1974	13	1	12	13	1	7	5	4	-
1975	10	-	10	9	1	6	2	9	1
1976	13	1	12	12	-	9	3	23	1
1977	12	1	11	12	1	7	4	2	-
1978	6	-	6	6	3	1	2	3	-
1979	8	-	8	7	1	6	-	-	1
1980	7	1	6	7	-	4	3	35	-
1981	44	-	44	43	10	15	18	324	1
1982	50	1	49	43	13	16	14	180	7
1983	34	7	27	33	7	22	4	23	1
1984	47	1	46	43	13	27	3	194	4
1985	63	4	59	58	19	29	10	55	5
1986	96	5	91	92	23	61	8	193	4
1987	45	4	41	41	10	27	4	111	4
1988	37	4	33	36	12	21	3	112	1
1989	44	1	43	41	13	20	8	198	3
1990	30	3	27	27	5	16	6	252	3
1991	35	3	32	31	9	17	5	160	4
1992	108	4	104	101	22	65	14	479	7
1993	121	7	114	117	37	67	13	1,113	4
1994	112	4	108	104	8	67	29	1,864	8
1995	149	8	141	140	28	66	46	2,887	9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5. 상속세 국세심사 사무처리 : 심사청구

(단위: 건, 백만원)

	요처리건수			처리건수				감세액	이월건수
	계	전년이월	당년접수	계	각하	기각	경정		
1965	4	-	4	4	-	4	-	-	-
1966	-	-	-	-	-	-	-	-	-
1967	-	-	-	-	-	-	-	-	-
1968	4	-	4	3	1	-	2	7	-
1969	8	1	7	6	-	3	3	11	2
1970	10	2	8	10	-	6	4	12	-
1971	8	-	8	8	-	4	4	7	-
1972	17	-	17	16	-	11	5	52	1
1973	13	1	12	11	1	7	3	38	2
1974	14	2	12	11	1	7	3	2	3
1975	14	3	11	-	2	9	1	1	2
1976	16	2	14	14	-	11	3	8	2
1977	15	2	13	12	-	9	3	3	3
1978	23	3	20	21	4	9	8	100	2
1979	11	2	9	11	1	6	4	50	-
1980	7	-	7	5	1	2	2	11	2
1981	59	2	57	40	7	18	15	115	19
1982	75	19	56	71	6	42	23	276	4
1983	55	4	51	47	5	32	10	124	8
1984	65	8	57	54	11	37	6	159	11
1985	82	11	71	75	14	53	8	667	7
1986	122	7	115	107	7	93	7	81	15
1987	122	15	107	108	7	87	14	260	14
1988	108	14	94	96	5	78	13	819	12
1989	109	12	97	98	12	68	18	769	11
1990	114	11	103	104	10	71	23	1,956	10
1991	111	10	101	89	1	71	17	937	22
1992	357	22	335	328	27	247	54	2,342	29
1993	281	29	252	252	38	176	38	2,632	29
1994	370	29	341	330	17	254	59	4,963	40
1995	366	40	326	303	18	231	54	3,216	63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 6. 상속세 세무소송

(단위: 건)

지리정보계

	요처리건수			처리건수				계류건수		
	계	전년도이월	당년제기	계	국승	국패	기타	계	고등법원	대법원
1973	12	7	5	2	1	-	1	10	-	-
1974	13	10	3	5	3	1	1	8	-	-
1975	8	8	-	4	2	-	2	4	-	-
1976	7	4	3	2	2	-	-	5	-	-
1977	11	5	6	3	1	1	1	8	-	-
1978	14	8	6	5	1	3	1	9	-	-
1979	10	9	1	2	2	-	-	8	-	-
1980	11	8	3	4	3	1	-	7	-	-
1981	11	7	4	2	1	1	-	9	-	-
1982	33	9	24	9	4	4	1	24	-	-
1983	40	24	16	13	5	4	4	27	-	-
1984	49	27	22	19	6	8	5	30	-	-
1985	74	30	44	20	7	10	3	54	-	-
1986	90	54	36	32	10	10	12	58	-	-
1987	122	58	64	55	16	13	26	67	48	19
1988	125	67	58	44	8	13	23	81	53	28
1989	134	81	53	55	37	18	-	79	58	21
1990	119	79	40	43	31	12	-	76	60	16
1991	117	76	41	30	22	8	-	87	68	19
1992	154	76	78	42	30	12	-	112	86	26
1993	218	117	101	97	68	29	-	121	87	34
1994	229	121	108	79	50	29	-	150	123	27
1995	276	150	126	88	62	26	-	188	167	21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7. 상속세 감사실적

(단위: 건, 백만원)

	건수	세액
1968	6	1
1969	7	1
1970	20	48
1971	15	47
1972	23	40
1973	25	46
1974	29	102
1975	18	52
1976	31	38
1977	19	61
1978	19	89
1979	9	23
1980	8	34
1981	22	54
1982	30	155
1983	34	961
1984	33	588
1985	111	1,314
1986	71	2,711
1987	63	2,828
1988	38	1,536
1989	47	1,461
1990	46	4,883
1991	61	2,303
1992	180	10,239
1993	118	9,579
1994	94	8,392
1995	128	16,083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